

문화재 관리 행정의 기본 방향
(文化財管理行政의 基本方向)
-현 문화재 관리의 실무를 중심으로-
(現 文化財管理의 實務를 中心으로)

鄭 在 鏞

<文化財管理局 管理係長>

-目 次-

- 一. 序 言
- 二. 文化財管理行政의 基本方向
 1. 文化財 管理段階의 分類
 2. 文化財 管理行政의 機能分擔
- 三. 現況의 問題點과 改善 方案
 1. 文化財 管理 職員의 빈번한 人事異動
 2. 文化財保護法의 補強
 3. 專門職의 養成
 4. 私有 文化財의 管理
 5. 盜掘 盜難과 海外 流出 防止
 6. 科學的 保存의 講究
 7. 文化財 管理職員의 知識과 敎育
 8. 文化財 管理財源
 9. 文化財 管理機構의 一元化
- 四. 文化財 管理와 民族文化 創造
- 五. 結 論

一. 서언(序言)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은 일반행정(一般行政)과 구별(區別)되는 특수(特殊) 행정(行政)으로서 전문적(專門的) 기술(技術)과 학구적(學究的) 소양이 겸비된 연구직(研究職)의 성격(性格)을 띤 행정직(行政職)인 것이다.

그러기에 가까운 일본(日本)에서나 기타 외국(外國)의 예를 보면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을 문화재(文化財) 보호직(保護職)이라는 직종(職種)으로 직종(職種)을 분류(分類)하고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에 대한 행정(行政)을 전문직(專門職)으로써, 일생을 두고 연구(研究)와 경험(經驗)을 쌓게하여, 문화재(文化財)를 관리(管理)하는 직원(職員)은 하나의 신념(信念)으로써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組織)이 짜여

있고 또 그 신분(身分)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現在) 우리는 유구(悠久)한 민족(民族) 문화(文化) 유산(遺産)의 관리(管理)라는 지대(至大)한 명제(命題)를 놓고 새로운 문화(文化) 중흥(中興)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었지만 창조(創造)를 위한 진정한 전통의 체득과 외래문화(外來文化)의 수용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제시(提示)가 너무나 불명확(不明確)하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나라에 이러한 문화재(文化財) 관리행정(管理行政)의 전문인(專門人)이라 스스로 자부(自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을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문화재(文化財)의 분야별(分野別) 전문가(專門家)는 있다. 그러나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은 문화재(文化財) 위원(委員)이나 학자(學者)들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분들의 연구(研究) 재료(材料)와 결과(結果) 그리고 제시(提示)를 가장 효과(效果)있게 받아 드려서 어떻게 실행(實行)에 옮기는가 하는 문제(問題)가 바로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재(文化財) 일반론(一般論)을 전부 체득(體得)하고 난 후(後)에 법규적(法規的) 처리(處理)와 행정(行政) 기술(技術)로 목표(目標)를 설정(設定)하고 방침(方針)을 세워서 일관(一貫)된 시책(施策)으로 문화재(文化財) 관리관(管理觀)의 정립(定立)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화재(文化財) 관리관(管理觀)이란 한국학(韓國學)의 상식(常識)을 가진 유능(有能)한 행정가(行政家)가 적어도, 전국(全國)의 산천(山川)을 조사(調査) 출장(出張)으로 현장(現場)의 답사(踏査)를 마치는데 1년, 이를 계획(計劃)하고 실행(實行)하여 결과(結果)를 분석(分析)하는 과정(課程)이 1년, 그리고 문화재(文化財) 일반(一般)의 학술적(學術的) 개론(概論)을 파악(把握)하고 정리(整理)하는 기간(期間)이 1년으로서 최소한(最小限) 3년의 기간(期間)을 열의(熱意)와 성실(誠實)로써 행정(行政)을 체득(體得)해야 문화재(文化財) 관리행정(管理行政)을 손 댈수 있는 일반(一般) 상식(常識)을 가진 행정가(行政家)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에 시행착오(施行錯誤)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유능(有能)한 전문가(專門家)가 있고 효과적(效果的) 방법론(方法論)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관리(管理)하는 일선(一線) 기관(機關)의 행정가(行政家)가 무경험(無經驗)이나 태만에서 소홀하게 다루어 수 천년 이 땅의 선민(先民)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중(貴重)한 민족(民族) 유산(遺産)을 훼손할 때 이는 어디에 비할 길 없는 오류(誤謬)를 범(犯)하고 이 땅의 문화(文化) 유산(遺産)속에서는 다시 찾을 길 없는 애석하고 안타까운 결과(結果)를 초래한다.

우리는 문화재(文化財)를 다루는 행정(行政)의 기본목표(基本目標)가 원형(原形) 보존(保存)과 보호(保護) 및 계승(繼承)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원형(原形)의 보존(保存)이 얼마나 지난(至難)한 것인가를 또한 알아야 한다.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에 있어서 발전(發展)과 개발(開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더 원형(原形)의 보호(保護)를 효과(效果)있게 발휘(發揮)하고 가치를 찾아 높여서 계승(繼承)에 부합(符合)된 새로운 방법론(方法論)을 모색(摸索)할 수 있는가의 일일 것이다.

석굴암 보수(補修)에 있어서도, 새로운 석굴암을 만들기는 차라리 쉬워도 현존(現存)하는 석굴암을 원형(原形) 그대로 보수(補修)하는데는 얼마나 많은 연구(研究)가 필요(必要)했으며 그 의견(意見)에 서로 차이(差異)들이 있었는가를 알면 족하다.

새로운 벽화(壁畵) 한 폭(幅)을 그리기에는 어려움이 없어도 고려(高麗)의 벽화(壁畵) 한 폭(幅)을 보존(保存)함에 있어서는 세심(細心)한 배려(配慮)와 과학적(科學的) 보존(保存)의 방법(方法)들이 총(總) 동원(動員)되지 않으면 불가능(不可能)함을 알 수 있다.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에 있어서는 민족(民族) 생활사(生活史)의 조사정리(調查整理)에서 비롯되는 민족(民族) 예술(藝術)의 감흥(感興)과 순화(純化)를 체득(體得)하고, 기술적(技術的) 보존(保存)과 전승(傳承)할 인적(人的) 개발(開發)등 민족(民族) 이상(理想)의 가치관(價值觀)을 현실(現實)의 생활(生活) 속에 스며들게 하기까지, 전문가(專門家)는 산모역(產母役)을 맡고 행정가(行政家)는 그 보모(保姆)로서 기능자(技能者)를 보호육성(保護育成)하는 일은 마치 진통(陣痛)을 겪고 출산(出產)한 아가의 웃음에 자신(自身)의 아픔을 잊어 버리는 산모(產母)의 노고(勞苦)와 같이 어려운 계획(計劃)과 실천(實踐)의 노력(勞力)이 없고서는 안 될 일이다.

민속자료(民俗資料)의 조사(調查) 연구(研究) 역시 전국(全國)의 산촌(山村)을 샅샅이 헤매며 마루밑, 부엌 구석, 외양간 천장까지 눈여겨 보면서 사랑방 뒷마루에서 촌로(村老)와 이야기를 나누며 잠을 잘 수 있는, 방랑객(放浪客)의 노고(勞苦)가 없이는 또한 불가능(不可能)한 것이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指定)된 진도견(珍島犬) 하나를 순종(純種)으로 키우는데 동물학적(動物學的) 생태(生態)의 연구(研究)와 그 보호(保護)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진도(珍島)의 진도견(珍島犬)을 키우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동물(動物) 학자(學者)일 수는 없다. 그러기에 진도견(珍島犬)의 잡종(雜種), 유사종(類似種)이 얼마든지 나온다. 이것은 동물(動物)에서 뿐만이 아니라 식물(植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전문적(專門的)인 특수(特殊) 행정(行政)을 현재(現在) 일반(一般) 행정(行政)과 동일(同一)하게 취급(取扱)하고 있다는 것은 시급(時急)히 시정(是正)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전문(專門) 분야(分野)의 행정(行政)일수록 모두의 인식(認識)이 부족(不足)하고 몇 사람이 알 뿐이기에 특별(特別)한 배려(配慮) 없이 직무(職務)가 부여(附與)되고 인사(人事) 행정(行政)이 다루어 지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천년(數千年) 동안 이 나라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들이 수(數)없이 많이 산재(散在)하고 있건만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인(行政人)을 양성(養成)하는 정규(正規) 교육과정(教育課程)이 없음은 깊이 반성(反省)하고 고쳐야 할 일일 것이다. 금번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업무(業務)가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직제(職制) 개편(改編)에 따라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로 이관(移管)되고,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의 일선(一線) 기관(機關)이 교육위원회(教育委員會)에서 도(道) 문화공보실(文化公報室)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생소(生疎)한 임무(任務)를 맡게 된 지방(地方) 행정(行政) 기관(機關)의 실무(實務) 담당자(擔當者)에게도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의 교육(教育)은 시급(時急)하다. 1968년 12월에 모도(某道)의 실무자(實務者)가 몰지각(沒知覺)하여 지정(指定)된 고려(高麗) 시대(時代)의 탑(塔) 보수(補修) 공사(工事)를 실시(實施)함에 전문가(專門家)의 감독(監督)없이 행(行)하고 토목(土木) 건축(建築) 공사(工事)처럼 처리(處理)하여 수세기(數世紀) 동안에 한번 밖에 들어 볼 수 없었던 기회(機會)에 사리공(舍利孔)의 구조(構造)와 유물(遺物)을 파손(破損)시켜서 보수(補修)가 아니라 문화재(文化財) 파괴(破壞)의 행위(行爲)를 초래(招來)한 불행(不幸)한 일이 있었다. 이는 솔직히 말해서 문화재(文化財) 도굴(盜掘) 도난범(盜難犯)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을 이같이 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앎는 것

이 더 나올 것이다. 그러기에 중앙(中央)에서 아무리 훌륭한 계획(計劃)이나 지시(指示)가 있었더라도 문화재(文化財) 관리관(管理觀)의 정립(定立)이 없는 일선기관(一線機關)이 있으면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는 입으로만 그치고 말 것이다.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이란 진실(眞實)로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껴서, 손으로 행(行)하는 자각(自覺)이 필요(必要)한 행정(行政)이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의 원형(原形)의 보존(保存)과 계승(繼承)의 일반론(一般論)을 다음에 설명(說明)하여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의 방향(方向)을 모색(摸索)하고 새로운 민족(民族) 문화(文化) 창조(創造)의 터전에 기여(寄與)하고자 한다.

二.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의 기본방향(基本方向)

1.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의 단계적(段階的) 분류(分類)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를 단계적(段階的)으로 분류(分類)한다면 1) 조사(調查), 2) 수집(蒐集), 3) 연구(研究), 4) 분류정리(分類整理), 5) 보존(保存), 6) 전시(展示), 7) 보급(普及)의 단계(段階)를 밟게 되는 것인 바, 이의 시행(施行)을 위(爲)한 사업(事業)을 예시(例示)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조 사(調查)

조사(調查) 사업(事業)은 문화재(文化財) 보존(保存) 관리(管理)에 있어서 제일(第一) 근본(根本)이 되는 기초(基礎) 작업(作業)이다. 확실(確實)하고 정확(正確)한 조사(調查)가 이룩되지 않고는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의 방향(方向)이 제시(提示)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事業)의 책정(策定)도 불가능(不可能)하다.

그런데 이 조사(調查) 작업(作業)에 있어서 조사(調查)의 방법(方法), 조사원(調查員)의 구성(構成), 조사대상(調查對象) 등의 세심(細心)한 문제점(問題點)이 많이 있다.

조사방법(調查方法)이 편견에 치우쳐 모처럼 실시(實施)한 조사(調查)가 전체(全體)를 파악(把握)하는 재료(材料)로는 미비(未備)하거나, 조사원(調查員)의 구성(構成)이 비전문인(非專門人)이어서 현지(現地) 답사(踏查)에 그치는 사례가 있거나, 조사(調查) 대상(對象)의 선정(選定)이 잘못되어 귀중(貴重)한 조사재료(調查材料)가 탈락(脫落)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조사(調查) 사업(事業)은 행정(行政) 조사(調查)와 연구조사(研究調查) 사업(事業)으로 대별(大別)되고 행정(行政) 조사(調查)는 연구조사(研究調查)를 위한 사전(事前) 조사(調查)이며 통계자료(統計資料)와 행정적(行政的)으로 불가피한 기본조사(基本調查)이고, 연구(研究) 조사사업(調查事業)은 학술적(學術的) 시대적(時代的) 요구(要求)에 부응(副應)하는 연구(研究) 과제(課題)를 걸고 장기적(長期的) 연구목표(研究目標)를 설정(設定)하여 하나의 연구(研究) 보고서(報告書)를 출판(出版)하기까지의 학술적(學術的) 과제(課題)를 밝히는 사업(事業)이다.

2) 수 집(蒐集)

조사(調查)가 끝나면 다음에는 필요(必要)한 자료(資料)의 수집(蒐集)이 뒤따르는데, 특히 향토(鄉土) 종합(綜合) 조사(調查)일 경우에는 민속(民俗) 자료(資料)의 수집(蒐集)

을 병행(併行)하여 하게 된다.

문화재수집(文化財蒐集)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대상(對象)의 선정(選定), 물품(物品)의 감정(鑑定), 가격(價格)의 결정(決定), 재원(財源)의 뒷받침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文化財) 수집(蒐集) 소위원회(小委員會)가 구성(構成)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가치(價値)의 측정(測定)과 대상(對象)의 선정(選定)과 수집품(蒐集品)의 가격(價格) 사정(査定)에 이르기까지 전문적(專門的) 견식(見識)을 가진 기관(機關)의 자문(諮問)이나 협의(協議)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문화재(文化財)의 감정(鑑定) 기구(機構)의 문제(問題)이다. 현(現)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으로는 이러한 자료(資料)의 수집(蒐集)에 대(對)한 감정(鑑定) 기관(機關)이 명시(明示)되어 있지 않고 가격(價格)의 결정(決定) 기준(基準)이 명시(明示)되어 있지 않아서 구입가격(購入價格)에 소유자(所有者)의 불만과 국가 예산의 한계점(限界點)이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問題)에는 그 소유자의 이해(理解)와 개인(個人)의 민족(民族) 문화(文化) 발전(發展)에 대(對)한 협조(協調)와 아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는 연년(年年)이 민속관(民俗館) 운영을 위해 민속자료(民俗資料) 수집(蒐集)을 하고 있으며 발굴(發掘), 발견문화재(發見文化財)에 대하여 보상금(補償金)을 지급(支給)하여 국유화(國有化)하고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이 중요(重要)한 문화재(文化財)를 구입(購入)하고 있다.

3) 연구(研究)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은 연구직(研究職)과 보호관리직(保護管理職)으로 대별(大別)하고 그 사업(事業)도 분류(分類)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화재(文化財) 연구(研究) 사업(事業)은 대학(大學)과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및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의 연구실(研究室), 민속관(民俗館)등이 이를 수행(遂行)한다. 이는 문화재(文化財)를 하나의 관상물(觀賞物)이나 보옥(寶玉)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學術的) 재료(材料)로 분석(分析) 정리(整理)하며, 민족문화사(民族文化史)의 발전(發展)에 기여(寄與)토록 그 문화사적(文化史的) 가치(價値)를 찾아 내고 흐름을 규명(糾明)하고 사실(史實)을 기록(記錄)하며 혼(魂)을 부여(附與)하는 단계(段階)이다. 이와같은 연구(研究) 과정(課程)을 거침으로서 비로소 한조각의 구리, 하나의 나무 토막, 종이 한 장, 낡은 옷 한벌이 지대(至大)한 가치(價値)를 가진 문화재(文化財)로서 존재(存在)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재(文化財)의 건조물(建造物) 하나의 보수(補修)가 토목(土木) 건축(建築) 공사(工事)와 다른 소이가 여기 있다.

우리는 지붕을 해체(解體)하면서 무슨 기록(記錄)이나 상량문 한 쪽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기와 한 장, 나무 한조각을 다 실측 정리하여 건조물(建築物)의 발굴(發掘) 작업(作業)을 하고 이것을 밝혀 조사 보고서를 기록(記錄) 발간하게 되는 것이다.

옛날의 목공(木工)이 한 낙서 한줄이 기막힌 사실을 알리게 되고 먼지처럼 퇴락한 상량문 한쪽이 정사(正史)를 바꾸어 역사(歷史)의 기록(記錄)을 수정(修正)시키는 일이다.

선사(先史) 시대(時代)의 지석묘(支石墓) 연구(研究)나 거주지(居住地)의 발굴(發掘)로 상고(上古) 문화(文化)의 자취를 더듬어 찾아 볼 수 있고, 세계문화(世界文化)의 흐름의

구절을 파악(把握) 정리(整理)하게 된다.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이나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각 학술단체는 고분(古墳)이나 도요지 패총사지(寺址)를 발굴(發掘)하고 그 조사(調査) 보고서(報告書)를 간행하여 민족사(民族史)를 밝히는 작업(作業)을 하고 있다.

4) 분류 정리(分類 整理)

조사수집(調査蒐集)된 재료(材料)가 연구(研究)되고 나면 이를 분류(分類) 정리(整理)하여 문화재(文化財) 대장이나 카드에 기록보관(記錄保管)되고 통계표, 소재지(所在地), 소유자(所有者), 보관처(保管處) 목록(目錄)등의 행정적(行政的) 정리(整理)와 연구적(研究的) 기록(記錄)이 이것이다.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의 국보(國寶) 보물사적(寶物史蹟) 등 유형(有形) 무형(無形)의 문화재(文化財)가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지정(指定) 분류(分類)에 따라 지정(指定)되어 호수(號數)가 붙어 고시(告示)되는 과정도 여기에 속(屬)한다.

특히 발굴(發掘)이나 발견(發見)된 문화재(文化財)의 연구기록(研究記錄)과 사진촬영, 실측 등의 재료(材料) 정리(整理)와 유물(遺物)의 분류(分類) 정리(整理)가 실시(實施)되는바 약간의 전문적(專門的) 안목(眼目)과 기술(技術)이 필요하다.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과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 이 유물(遺物)의 정리작업(整理作業)을 연년(年年)이 계속하고 있다.

5) 보 존(保存)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에 있어서 가장 문제(問題)되는 것이 이 보존(保存)의 단계(段階)이다. 원형(原形)을 찾아 내고 선인(先人)의 숨씨를 똑같이 체득(體得)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努力)해도 변화(變化)는 있게 마련이다. 옛 사람은 탑(塔) 하나 조성하면서 그 석공(石工)은 일생(一生)의 과업(課業)으로 돌과 석공(石工)이 하나의 경지에 이르는 정신적(精神的) 신념(信念)에서 수백날, 수십년 걸려서 수 없는 시행착오(施行錯誤)를 해가면서 한 경지의 예술품(藝術品)을 조성하고 신앙의 대상(對象)으로 만든 것이다. 그림이 그렇고 건물이 그렇고, 도자기, 글씨 공예기술(工藝技術)등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모두가 그러하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의 보호(保護)는 생물학적(生物學的) 생태(生態)의 연구(研究)와 지질학(地質學)의 문제(問題), 명승(名勝)의 경관(景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반론(一般論)을 알고 처리(處理)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기에 현재(現在)의 문화재(文化財) 보존(保存) 기술(技術)과 행정(行政)의 능률(能率)이 요구(要求)된다. 그리고 전문인(專門人)의 지도(指導)가 필요(必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날 같은 석공(石工), 목공(木工), 와공(瓦工)의 필생의 희생이 있는가? 목재나 안료 등의 재료(材料)가 있는가? 이런 기술(技術)을 전문적(專門的)으로 양성(養成)하는 기관도 없지만 직업인(職業人)으로 전환된 오늘의 사회(社會)에서 원형(原形)의 보존(保存)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이제는 과학(科學)을 불러드려 문화재(文化財)의 수명(壽命)을 연장하는 작업(作業)도 해야 한다. 석조는 풍화(風化)하고, 목조(木造)는 부패(腐敗)하며 회화(繪畫)는 퇴색하고 기술자(技術者)는 사멸되고 있다. 여기에 현대(現代) 과학(科學)의 과제(課題)가 주어져서 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가 일차 보존(保存) 과학(科學)의 보고서(報告書)를 1968년에

연구(研究) 발간(發刊)한 일이 있으며 문화재(文化財) 관리행정(管理行政)에 시급(時急)히 적용(適用)하여할 문제(問題)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존과학(保存科學)의 연구(研究)를 한 전문가(專門學者)도 몇 사람 안되는 실정(實情)이다. 동식물(動植物)과 광물(鑛物)의 지정물(指定物)은 그런대로 원형(原形)의 보존(保存)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보존(保存) 기술자(技術者), 건축(建築), 석공(石工), 와공(瓦工), 화공(畫工), 물리(物理), 화학(化學), 광학(光學), 동물(動物), 식물(植物), 지질(地質), 요업(養成)기관의 설립(設立)과 보수(補修) 자재(資材) 연구소(研究所)의 설치(設置) 및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전수 교육 기관의 국가(國家) 관리(管理)가 요청되는 것이다.

현재(現在) 이 보존(保存) 사업(事業)은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 전담(全擔)하고 문화재(文化財) 第一次 보수(補修) 계획(計劃)을 완수(完遂)했으며, 第二次 보수(補修) 계획(計劃)을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중점적(重點的)으로 완료할 것이다.

우리는 목조(木造)의 중수(重修) 도래 기간을 30년으로 보고 번와를 6년으로, 단청을 20년으로 그 수명을 보는 것이다.

69년의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보존(保存)을 위해서는 전수 교육, 악보 채보, 한국 무보의 발간과 기록(記錄) 영화 제작,,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기능자(技能者)의 생계비(生計費) 보조 치료비의 제 혜택을 주고 있다.

6) 전 시(展示)

문화재(文化財)의 전시(展示)는 이상의 제 단계(段階)를 거치고 선양의 의미(意味)로 또는 학문(學文) 연구(研究)나 교육의 재료로 제공되는 것이며, 이 단계(段階)의 대표적(代表的)인 것이 박물관(博物館)의 전시(展示)이다. 여기는 과학적(科學的) 기능(技能)을 가진 시설의 완비(完備)가 문제이다. 습도, 온도, 광도, 살충, 방부, 도난등에 대(對)한 처리(處理)가 되어야 하고 도서실, 공작실, 연구실등의 시설이 필요하다.

건조물(建造物) 천연기물(天然紀物) 같은 것의 전시(展示)는 보호(保護) 시설(施設)과 조경학의 의미(意味)까지를 가지는 것이다. 이조(李朝) 왕궁(王宮)의 건조물(建造物) 전시(展示)는 그 왕궁내(王宮內)의 정원도 다 조화를 이루는 경관(景觀)의 정리(整理)로 자연(自然)의 질서가 화합되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전시(展示)에 있어서 현대(現代) 도시건설(都市建設)의 과제(課題)와 부딪치는 경우를 본다.

남대문(南大門) 주위에 높은 고층 빌딩이 마구 서서 부연난간 아슬하던 추녀의 선(線)은 웅졸한 협곡에 떨어진 초라한 지붕으로 화하고 말았다.

여기서 경관(景觀)의 보호(保護) 문제(問題), 고도(古都)의 도시(都市) 계획(計劃)과 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 전시(展示)에 고려(考慮)되어야 할 전시(展示) 효과(效果)의 보호(保護) 구역(區域)이 필요(必要)하다.

명산(名山) 고찰(古刹)의 아름다운 경관(景觀)은 문화재(文化財)의 보호물(保護物)이다. 노송(老松) 우거진 숲으로 계곡을 찾아 들어 인적(人蹟) 고요한 고찰(古刹) 우거진 일주문을 들어 설 때 대웅전이나 극락전이 석탑(石塔)을 안고 배열하여 있는 숭엄한 분위기에 스스로 함장하고마는 경지를 느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문화재(文化財) 전시(展示)는 민족(民族) 정신(精神)의 정화를 가져온다. 민족(民族)의 기상과 긍지를 지니게 하고 민족정기(民族精氣)의 높은 승화(昇華)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1968年 멕시코 올림픽에 전시(展示)한 우리나라의 미술품(美術品)은 비록 불행(不幸)한 일이 있었지만 운동 선수 이상으로 외국인에게 한국(韓國)을 심는데 공헌한 것이다.

문화재(文化財) 전시(展示)는 우리에게 민족적(民族的)인 자각을 줄 때도 있다. 즉 우리들 자신(自身)을 배우게 하는 재료(材料)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계(段階)의 사업(事業)으로 현재(現在) 건립중(建立中)인 종합박물관(綜合博物館), 민속관(民俗館) 확충(擴充), 발표공연(發表公演) 순회 전시, 유물(遺物) 대여 전시(展示), 공예품(工藝品) 전시(展示), 사진(寫眞) 전시(展示)등의 활동사업(活動事業)이 전개(展開)되고 있는 것이다.

7) 보 급(普及)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의 마지막 단계(段階)로서 보급(普及)은 국민(國民)과 학계(學界)에 완전(完全)히 정리(整理) 종결된 결과(結果)를 제시(提示)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화재(文化財)의 바른 이해(理解)와 연구(研究)를 촉구하고 새로운 창조(創造)의 터전으로 고유 문화소(文化素)의 제시(提示)가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는 책자 발간 사업, 보고서(報告書) 제출(提出), 영화 촬영, 매스콤 등의 동원(動員)이 보급(普及)의 구체적 사업(事業)이다.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로 개편된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업무(業務)에 있어서 가장 활발(活潑)하고 합리적(合理的)인 단계(段階)가 바로 이 보급(普及)이다.

2.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행정(行政)의 기능(技能) 분담(分擔)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에 현실적(現實的)으로 다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문화재과(文化財課)의 현재(現在)의 직무(職務) 분담(分擔)을 기준(基準)으로 하여 분류(分類)해본다.

이는 문화재(文化財) 보호법(保護法)의 시행(施行)을 위한 행정(行政) 행위(行爲)들이다.

1968年の 1년간 문서 접수 처리 사항중 발송 문서만 보면 민원서류에 관한 것이 229건, 지정 해제에 관한 것이 569건, 문화재(文化財)의 보수(補修)와 현상 변경에 관한 것이 371건, 관리 단체 지정, 해외(海外) 반출(搬出) 허가(許可) 등에 관한 것이 315건, 유물(遺物) 관리(管理)가 69건, 책자 발간 문서가 35건, 연구실(研究室) 조사연구(調查研究) 문서(文書)가 24건,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관계 문서가 98건, 민속자료(民俗資料)에 관한 것이 26건,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에 관한 것이 172건으로 총 2,624건의 접수 문서와 1908건의 발송 문서가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문화재과(文化財課)에서 행(行)하여 졌다. 一年의 공휴일 50여일과 토요일, 현지(現地) 조사(調查) 감독 출장(出張) 기간(期間), 국경일(國慶日)등을 제외하면 업무량(業務量)이 항시 주야로 일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다.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을 맡게된 도(道) 공보실(公報室)의 많은 문서가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문서(文書)라고 일선(一線) 기관(機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중앙(中央) 행정(行政) 기관(機關)의 한 과(課)의 업무량(業務量)으로는 상당히 많은 양이며 한 건(件)도 소홀히 다루지 못하는, 연구(研究)가 필요(必要)한 문서(文書)들이다.

이러한 업무(業務)를 현재(現在) 다음과 같이 분담반(分擔班)으로 구성(構成)하였다.
(직원도표 참조)

1) 지정 조사반. 2) 보수 관리반. 3) 보급반 4) 유물반. 5) 발간반. 6) 지적 측량반. 7) 매장 문화재반. 8) 무형 문화재반. 9) 민속자료반. 10) 명승 천연 기념물반. 11) 조사 연구실 12) 전문 위원실. 13) 서무반. 14) 민속관으로 나누었다. 이 반들의 업무 분담(分擔)을 설명(說明)하면서 문화재(文化財) 보호법(保護法)을 기준(基準)으로 먼저 문화재(文化財)의 정의(定義)를 밝히고 관리(管理) 현황(現況)을 설명(說明)하고자 한다.

1) 문화재(文化財) 보호법상(保護法上)의 문화재(文化財)

문화재(文化財) 보호법상(保護法上)의 문화재(文化財)란 건조물(建造物), 전적(田籍), 고문서(古文書), 회화(繪畫), 조각(彫刻), 공예품(工藝品) 기타의 유형(有形)의 문화적(文化的) 소산(所産)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歷史上) 또는 예술상(藝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과 이에 준(準)하는 고고(古考) 자료(資料)등의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와 연극(演劇), 음악(音樂), 무용(舞踊), 공예기술(工藝技術) 기타의 무형(無形)의 소산(所産)으로서 우리 나라의 역사상(歷史上) 또는 예술상(藝術上) 가치(價値)가 큰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와 기념물(記念物)로는 패총고분(貝塚古墳), 성지(城址), 요지(窯址), 유물포함층(遺物包含層) 기타 사적지(史蹟地)와 경승지(景勝地), 동물(動物), 식물(植物), 광물(鑛物)로서 우리 나라의 역사상(歷史上), 예술상(藝術上), 학술상(學術上) 또는 관상상(觀賞上) 가치(價値)가 큰 것, 그리고 민속자료(民俗資料)로는 의식주(衣食住), 생업(生業), 신앙(信仰), 연중(年中) 행사(行事)등에 관(關)한 풍속습관(風俗習慣)과 이에 사용(使用)되는 의복(衣服), 기구(器具), 가옥(家屋) 기타의 물건(物件)으로서 국민(國民) 생활(生活)의 추이(推移)를 이해(理解)함에 불가결(不可缺)한 것들로서 이는 지정(指定) 비지정(非指定) 문화재(文化財)의 총체를 정의(定義)한 것이다. 여기서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가 되는 것은 다음의 기준(基準)을 충족(充足)한 것들이다.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문화재과(文化財課) 직원(職員)

직 책(職責)	성 명(姓名)	담 당(擔當)
문화재과장(文化財課長)	장 인 기(張仁基)	문화재 관리(文化財 管理)
관리계장(管理係長)	정 재 훈(鄭在鏞)	유형문화재 관리(有形文化財 管理)
1. 서무반장(庶務班長)	정 종 진(丁鍾振) 손 갑(孫 甲) 김 상 섭(金相燮) 강 숙 자(姜淑子) 박 영 자(朴英子) 이 응 준(李應俊)	
2. 보수관리반장(補修管理班長)	현 재 복(玄在福) 장 경 호(張慶浩) 윤 홍 로(尹洪璠) 배 진 태(裴珍太) 이 승 묵(李勝默)	①국보, 보물, 사적 보수보호 (國寶, 寶物, 史蹟 補修保護) ② 현황 변경(現況 變更)
3. 보급반장(普及班長)	박 성 해(朴星海) 김 병 모(金秉模)	①문화재선전 및 보급 (文化財宣傳 및 普及) ②문화재해외반출 (文化財海外搬出)
4. 발간반장(發刊班長)	선 성 문(宣聖文) 한 돈 수(韓墩洙) 이 동 녕(李東寧)	간행물발간 및 배포, 교환 (刊行物發刊 및 配布, 交換)
5. 매장문화재반장(埋藏文化財班長)	유 재 형(柳在滢) 강 성 훈(姜聲勳)	①발견매장 문화재처리 (發見埋藏 文化財處理) ②매장 문화재 발굴허가 (埋藏 文化財 發掘許可)
6. 유물반장(遺物班長)	박 진 주(朴鎭柱) 조 유 전(趙由典)	5대궁 유물관리, 보존 (5大宮 遺物管理, 保存)

직 책(職責)	성 명(姓名)	담 당(擔當)
7. 지적측량반장(地籍測量班長)	김 세 현(金世鉉)	지정구역, 보호구역측량
	홍 재 원(洪在元)	(指定區域, 保護區域測量)
8. 지정조사반장(指定調查班長)	신 정 환(申正煥)	지정 및 해제, 조사
		(指定 및 解除, 調查)
9. 연구실장(研究室長)	장 인 구(姜仁求)	학술적 연구, 조사
	지 건 길(池建吉)	(學術的 研究, 調查)
	변 연 섭(卞妍燮)	
	임 희 숙(林喜淑)	
	이 영 순(李英順)	
10. 전문위원실상임전문위원 (專門委員室常任專門委員)	맹 인 재(孟仁在)	① 보수설계, 감독
	김 주 태(金周泰)	(補修設計, 監督)
	김 동 호(金東鎬)	② 해외반출 문화재감정
		(海外搬出 文化財鑑定)
직 원(職員)	김 동 현(金東賢)	③ 보수공사의 학술적 기록
	김 의 중(金義仲)	(補修工事의 學術的 記錄)
지정계장(指定係長)	장 건 상(張建祥)	무형문화재, 명승천연기념물, 민속 자료, 보호관리
		(無形文化財, 名勝天然記念物, 民俗 資料, 保護管理)
1. 무형문화재반장 (無形文化財班長)	고 상 열(高相烈)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신 현 희(申鉉喜)	
	이 양 교(李良敎)	
2. 명승, 천연기념물반장 (名勝, 天然記念物班長)	정 기 영(鄭基永)	명승,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노 정 한(盧正漢)	(名勝, 天然記念物 保護管理)
3. 민속자료반장(民俗資料班長)	김 선 배(金善培)	민속자료 보호관리
	김 병 석(金炳奭)	(民俗資料 保護管理)
4. 민 속 관(民俗館)	장 주 근(張壽根)	① 민속자료 조사, 연구
	이 중 칠(李鍾喆)	(民俗資料 調查, 研究)
	이 경 애(李慶愛)	② 민속관 운영(民俗館 運營)
	김 태 완(金泰完)	
	진 용 국(田鎔國)	

보물(寶物)의 지정(指定) 기준(基準)은 건조물(建造物)로서 목조건축물류(木造建築物類)는 당탑(堂塔), 궁전(宮殿), 성내(城內), 전묘(殿廟),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樓亭), 향교(鄉校), 관아(官衙), 객사(客舍), 민가(民家)등으로서 역사적(歷史的) 학술적(學術的) 예술적(藝術的) 기술적(技術的) 가치(價値)가 있는 것과 석조(石造) 건축물류(建

築物類)로는 석굴(石窟), 석탑(石塔), 전탑(塼塔), 부도(浮屠) 및 석종(石鐘),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교(石橋), 석계(石階),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첨성대(瞻星臺), 동우지주(幢竿支柱), 석표(石標), 석정(石井)등으로서 역사적(歷史的) 학술적(學術的) 가치(價値)가 있는 것이며 분묘(墳墓)로서 유구(遺構)나 그 부분(部分) 부속물(附屬物) 또는 건조물(建造物)의 모형(模型)등으로서 역사적(歷史的) 학술적(學術的) 예술적(藝術的) 가치(價値)가 있는 것이다.

전적류(典籍類)는 한글 한자(漢字)의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宗教) 서적(書籍)의 원본(原本), 또는 우수(優秀)한 고사본(古寫本) 등으로서 계통적(系統的)으로 정리(整理)되어 있는 중요(重要)한 것과 서적류(書籍類)로는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蹟), 고필(古筆), 묵적(墨蹟)등으로서 서예상(書藝上) 대표적(代表的)인 것이나 사료적(史料的) 가치(價値)가 있는 것이며 판본류(版本類)로서 판본(版本), 탁본(拓本), 현판(懸板), 주련(柱聯), 사적기액(事蹟記額)등으로서 한자(漢字) 고각사상(古刻史上) 대표적(代表的)인 것 들이다.

회화(繪畫) 조각(彫刻)으로서는 형태(形態) 품질(品質) 기법(技法) 제작(製作)등에 현저한 특이성(特異性)이 있거나 한국(韓國) 문화사상(文化史上) 시대적(時代的) 유물(遺物)로 제작(製作)이 우수(優秀)한 것이거나 회화(繪畫)나 조각사상(彫刻史上) 중요(重要)자료(資料)가 되거나 특수(特殊)한 작가(作家) 유파(類派)를 대표(代表)하는 것이거나 외래품(外來品)으로서 우리 나라 문화(文化)에 중요(重要)한 의의(意義)를 가진 것일 때이다.

공예품(工藝品)으로는 우리 문화사상(文化史上) 시대(時代)의 유물(遺物)로 제작(製作)이 우수(優秀)하거나 형태(形態) 품질(品質) 기법(技法) 용도(用途)가 특이(特異)하거나 외래품(外來品)으로서 우리 공예사상(工藝史上) 의의(意義)가 깊고 밀접한 관계(關係)가 있는 것이다.

고고(考古) 자료(資料)로서는 학술적(學術的) 가치(價値)가 큰 중요(重要)한 선사(先史) 시대(時代) 유물(遺物)과 고분(古墳) 사지(寺址) 유적(遺蹟)등의 출토품(出土品)으로 학술적(學術的) 가치(價値)가 높은 자료(資料)나 전세품(傳世品), 종교(宗教) 교육(教育) 학계(學界) 산업(產業) 정치(政治) 군사생활(軍事生活)등의 유적(遺蹟)의 출토품(出土品)으로 학술(學術) 자료(資料)나 제작사(製作史)의 가치(價値)가 있고 역사적(歷史的) 의의(意義)가 있는 것일 것 등이다.

이러한 유형(有形)의 문화재(文化財)가 보물(寶物)로 지정(指定)되면 이 보물(寶物) 문화재(文化財) 속에서만 국보(國寶)가 지정(指定)될 수 있는바 국보(國寶)는 보물(寶物)로 지정(指定)되었다가 국보(國寶)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指定) 기준(基準)은 보물중(寶物中)에서 역사적(歷史的) 학술적(學術的) 시대적(時代的)으로 대표적(代表的)이고 가치(價値)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제작(製作) 의장(意匠)이나 기술(技術)이 우수(優秀)하고 형태(形態) 품질(品質) 제재(製材) 용도(用途)가 현저(顯著)히 특이(特異)하며 저명(著名)한 역사적(歷史的) 인물(人物)과 관계(關係)가 깊은 것들이면 국보(國寶)의 지정(指定) 기준(基準)이 되는 것이다.

다음 사적(史蹟)의 지정(指定) 기준(基準)은 유사(有史) 이전(以前)의 유적(遺蹟)으로서 유물포함지(遺物包含地) 주거지(住居地) 지석(支石) 입석(立石) 고분석(古墳石)등과 제사(祭祀) 신앙(信仰)에 관(關)한 유적(遺蹟)으로 사지(寺址) 사우지(祠宇址) 제단(祭壇) 사고지(史庫址) 전묘지(殿廟址) 향교지(鄉校址) 기타 제사(祭祀) 신앙(信仰)에 관

(關)한 유적(遺蹟)과 정치(政治) 국방(國防)에 관(關)한 유적(遺蹟)으로 성곽(城廓) 성지(城址) 책채(柵砦) 방누(防壘壘) 진보(鎭堡) 수영지(水營址) 궤문지(關門址) 봉수대(烽燧臺) 및 유지(遺址) 고전장(古戰場) 군읍지(郡邑址) 궁전지(宮殿址) 고도(古都) 고궁(古宮)과 산업(産業) 교통(交通) 토목(土木)에 관(關)한 것으로 고도(古都) 교지(橋址) 제언(堤堰) 요지(窯址) 시장지(市場址) 식물재배지(植物栽培址) 석표(石標) 기타 산업(産業) 교통(交通) 토목(土木)에 관(關)한 유적(遺蹟)으로서 학술상(學術上) 가치(價値)가 있는 것과 교육(教育) 사회사업(社會事業)의 유적(遺蹟)으로 서원(書院) 사숙(私塾) 자선시설(慈善施設) 석각(石刻)등 학예(學藝)에 관(關)한 유적(遺蹟)이나 분묘(墳墓) 비(碑) 구택(舊宅) 원지(苑池) 정천(井泉) 수석(樹石) 전설지(傳說地)등으로서 학술상(學術上) 예술상(藝術上) 역사상(歷史上) 가치(價値)가 큰 것이다.

명승(名勝)은 저명(著名)한 건물(建物)이 있는 경승지(景勝地)나 원지(苑地) 화수(花樹) 화훼(花卉) 단풍(丹楓) 또는 조수(鳥獸) 어충류(魚虫類)의 서식지(棲息地). 이름있는 협곡(峽谷)이나 해협(海峽)과 곳(申) 급류(急流) 심연(深淵) 폭포(瀑布) 호소(湖沼) 동굴(洞窟) 해안(海岸) 하안(河岸) 도서(島嶼) 특이(特異)한 산악(山岳) 구릉(丘陵) 고원(高原) 하천(河川) 화산(火山) 온천지(溫泉地) 냉광천지(冷鑛泉地) 등의 경승(景勝)이 좋은 것은 이 지정(指定)의 기준(基準)이 된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은 특이(特異)한 동식물(動植物) 및 그 서식지(棲息地) 성장지(生長地) 특수(特殊) 지역(地域) 또는 환경(環境)에서 서식(棲息) 생성(生成)하는 특유(特有)한 동식물(動植物) 및 서식지(棲息地) 성장지(生長地) 도래지(到來地), 한국(韓國) 특유(特有)의 축양(畜養) 동물(動物) 사충(寺叢) 명목(名木) 거수(巨樹) 기형목(畸形木), 대표적(代表的)인 원시림(原始林), 고산식물지대(高山植物地帶) 또는 진귀(珍貴)한 삼림상(森林相), 진귀(珍貴)한 식물(植物)의 자생지(自生地), 저명(著名)한 동식물(動植物)의 분포(分布) 경계(境界) 유용(有用) 동식물(動植物)의 원산지(原產地), 진귀(珍貴)한 동식물(動植物)의 유물발견지(遺物發見地) 또는 학술상(學術上) 특(特)히 귀중(貴重)한 표본(標本)과 화석(化石)등이다.

암석(岩石) 또는 광물(鑛物)의 성인(成因)을 알 수 있는 상태(狀態)의 대표적(代表的)인 것, 거대(巨大)한 석회동(石灰洞) 또는 저명(著名)한 동굴(洞窟) 특이(特異)한 구조(構造)로 되어 있는 암석(岩石) 또는 저명(著名)한 지형(地形), 지운단(地雲斷) 또는 지괴(地塊) 운동(運動)에 관한 현상(現象), 학술상(學術上) 특(特)히 귀중(貴重)한 표본(標本), 온천(溫泉) 및 냉광천(冷鑛泉) 등이다.

천연(天然) 보호(保護) 구역(區域)은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이 풍부(豐富)한 대표적(代表的)인 일정(一定) 구역(區域)을 말한다.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지정(指定) 기준(基準)은 연극(演劇)에 있어서 인형극(人形劇) 가면극(假面劇), 음악(音樂)의 제례악(祭禮樂) 연례악(宴禮樂) 대취타(大吹打) 가곡(歌曲) 가사(歌詞) 시조(時調) 창악(唱樂) 산조(散調) 농악(農樂) 잡가(雜歌) 민요(民謠) 무악(巫樂) 범패(梵唄) 무용(舞踊)에 있어서 의식무(儀式舞) 정재무(呈才舞) 탈춤(탈춤) 바라춤(僧舞), 공예(工藝) 기술(技術)에 있어서 도자공예(陶磁工藝) 마미공예(馬尾工藝) 금속공예(金屬工藝) 화각공예(華角工藝) 장신공예(裝身工藝) 나전칠공예(螺鈿漆工藝) 제지공예(製紙工藝) 목공예(木工藝) 건축공예(建築工藝) 피혁공예(皮革工藝) 직물공예(織物工藝) 염색공예(染色工藝) 옥석공예(玉石工藝) 자수공예(刺繡工藝) 복식공예(服飾工藝) 악기공예(樂器工藝) 초고공예(草藁工藝)이다.

민속(民俗) 자료(資料)의 지정(指定) 기준(基準)은 한국(韓國) 민족(民族)의 기준생활

(基準生活)을 나타내는 전형적(典型的)인 것이나 의식주(衣食住)의 궁중(宮中) 귀족(貴族) 서민(庶民) 농어민(農漁民) 천인(賤人)등의 의복(衣服) 장신구(裝身具) 가구(家具) 주거(住居)등 또는 그 재료(材料)와 농기구(農器具) 어렵구(漁獵具) 공장용구(工匠用具) 방직용구(紡織用具) 작업장(作業場)등 생산(生産) 생업(生業)에 관한 것과 운반용단차(運搬用丹車) 청사(廳舍)등 교통(交通) 운수(運輸) 통신(通信)에 관한 것과 증답용구(贈答用具) 경방(警防) 형벌용구(刑罰用具)등 사회생활(社會生活)에 관한 것, 제사구(祭祀具) 법회구(法會具) 봉납구(奉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등 신앙(信仰)에 관한 것과 역류(歷類) 복점용구(卜占用具) 의료구(醫療具) 교육시설(教育施設)등 민속지식(民俗知識)에 관한 것과 의상도구(衣裳道具) 악기(樂器) 가면(假面) 인형(人形) 완구(玩具) 무대(舞臺)등이며 여기서 역사적(歷史的) 변천(變遷)과 시대적(時代的) 특색(特色)과 생활(生活) 계층(階層)의 특색(特色)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보(國寶) 보물(寶物)의 보호구역(保護區域) 지정기준(指定基準)은 목조(木造) 및 석조물(石造物)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建物)의 최장(最長) 들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은 각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20m 내지 100m이내(以內)의 구역(區域), 첨성대(瞻星臺)는 하부기단(下部基壇)에서 50m 내지 100m이내(以內)의 구역(區域), 석빙고(石氷庫)는 벽면(壁面) 상부지면(上部地面)에서 20m내지 100m이내(以內)의 구역(區域), 석굴(石窟)은 하부기단(下部基壇)에서 100m내지 500m이내(以內)의 구역(區域), 마애불(磨崖佛)은 불상(佛像)을 중심(中心)으로 반경(半徑) 30m내지 50m 사방(四方)의 구역(區域), 당간지주(幢竿支柱) 석등(石燈) 노주(露柱) 석조(石槽)등은 각물체(各物體)를 중심(中心)으로 반경(半徑) 10~20m 사방(四方)의 구역(區域), 석교(石橋)는 교대(橋臺) 및 교각(橋脚)에서 10~30m외향(外向) 이내(以內)의 구역(區域), 기타 국보(國寶) 보물(寶物)은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되는 구역(區域)을 지정(指定)한다.

사적(史蹟) 보호구역(保護區域) 지정기준(指定基準)은 성곽(城廓)등은 성벽면하부(城壁面下部) 기석(基石)을 기준(基準)으로 외향(外向) 20m~50m 내향(內向) 20~50m이내(以內)의 구역(區域), 성(城) 산성(山城) 성내전역(城內全域)을 지정(指定)하는 경우에는 벽면(壁面) 하부(下部) 기석(基石)에서 외향(外向) 20~50m이내(以內)의 구역(區域), 제방(堤防)은 성곽(城廓)에 준(準)하고 왕릉(王陵) 고분묘(古墳墓)등은 봉토하단(封土下斷)에서 10~1000m이내(以內)의 구역(區域), 사지(寺址) 사우지(祠宇址) 전묘지(殿廟址) 고궁(古宮)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境界線)에서 5m~50m이내(以內)의 구역(區域), 목조(木造) 건축물(建築物) 석조(石造) 건축물(建築物) 기타 시설(施設)등은 국보(國寶) 보물(寶物)의 보호(保護) 구역(區域)에 준(準)하고 기타 사적(史蹟)은 보호상(保護上)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되는 구역(區域)으로 지정(指定)한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보호구역(保護區域) 지정(指定) 기준(基準)은 식물(植物)은 입목(立木)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반경(半徑) 5m 이상(以上) 100m 이내(以內)의 구역(區域)과 축양(畜養) 동물(動物)에 한하며 지질(地質) 광물(鑛物)과 함께 보호(保護)에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되는 구역(區域)으로 한다.

그리고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를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설치(設置)하는 보호물(保護物)의 지정(指定)은 지상(地上) 건조물(建造物)에 있어서는 철책(鐵柵) 석책(石柵) 위장(圍牆) 기타의 시설물(施設物)로 하고 동종(銅鐘) 비석(碑石) 불상(佛像) 등은 종각(鐘閣) 불각(佛閣) 등 그 보관(保管)된 건물(建物)이나 시설물(施設物)이고 이 보호물(保護物)의 구역(區域)은 건조물(建築物)이나 시설물(施設物)의 최장(最長) 들출점에서 수

직선로 닿은 각 지점을 연하는 선에서 외향(外向) 5m~50m이내(以內)의 구역(區域) 석책(石柵) 철책(鐵柵) 기타 위장(圍牆)은 하부(下部) 기석(基石)에서 2m~20m이내(以內)의 구역(區域), 기타는 보호물(保護物)의 보호(保護)에 필요(必要)한 구역(區域)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역(區域)은 자연적(自然的) 조건(條件), 인위적(人爲的) 조건(條件) 기타 특수(特殊) 사정(事情)에 의하여 적의(適宜) 신축(伸縮)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이 문화재(文化財) 보호법상(保護法上)의 문화재(文化財)의 정의(定義)이다. 따라서 본법(本法)에서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라 함은 지정(指定)된 문화재(文化財)와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第11條의 규정(規定)에 의거(依據) 지정(指定)된 보호구역(保護區域) 보호물(保護物) 또는 보호물(保護物)의 보호구역(保護區域)의 소유자(所有者)를 포함(包含)한다(法第12條 第12項).

2) 지정(指定) 조사반(調査班)

1969年 2月 28日 현재(現在) 지정(指定)된 문화재(文化財)의 총수는 국보(國寶) 130, 보물(寶物) 500, 사적(史蹟) 166, 사적(史蹟) 및 명승(名勝) 5.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153, 민속자료(民俗資料) 12,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26, 계(計)992점이 지정(指定)되어 있다.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의 발족(發足)이래,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재지정(再指定)된 1962年 이후(以後) 1969年 2月 28日까지 269점의 문화재(文化財)가 더 조사(調査) 지정(指定)되었다.

이 지정반(指定班)의 임무(任務)는

(1) 국보(國寶) 보물(寶物) 및 사적(史蹟)등의 지정(指定) 해제(解除)에 관(關)한 사항(事項).

(2) 지정(指定) 해제(解除)를 위한 조사(調査)

(3)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 신고(申告) 처리(處理)의 민원(民願) 사항(事項) 등이다.

이 지정반(指定班)의 업무(業務)를 문화재(文化財) 보호법(保護法)에 따라 설명(說明)하면,

문화재(文化財) 보호법(保護法) 第7條 및 第9條에 의(依)하면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은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자문(諮問)을 거쳐 국보(國寶) 보물(寶物) 및 사적(史蹟)을 지정(指定)할 수 있으며,

동법(同法) 第11條에 의(依)하면 시행(施行) 규칙(規則)에 따라 지정(指定)된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의 보호(保護) 구역(區域) 또는 보호물(保護物)이나 그 보호물(保護物)의 보호(保護) 구역(區域)을 지정(指定)할 수 있고,

이러한 규정(規定)에 의하여 지정(指定)된 사항(事項)을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하고 이를 그 소유자(所有者) 또는 보유자(保有者)에게, 그것이 불명확(不明確)할 때는 그 관리자(管理者)나 점유자(占有者)에게 이를 통지(通知)하여야 한다. (第12條)

지정(指定)의 효력(效力)은 관보(官報)에 고시(告示)가 있는 날부터 발생(發生)하고, (第13條)

지정(指定)의 해제(解除)에 있어서는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가 그 가치(價値)를 상실했거나 공익상(公益上) 기타 특수(特殊)한 사유(事由)가 있을 때는 동법(同法) 第14條

에 의해서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은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자문(諮問)을 거쳐 이를 해제(解除)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그 사실(事實)을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함과 동시에(同時)에 당해(當該)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 또는 보유자(保有者)에게 통지(通知)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施行規則)에 따라 지정(指定)된 문화재(文化財)는 등급(等級)을 부치거나 구분(區分)을 할 수 있다. (第15條)

다음은 가지정(假指定)의 경우인 바 지정(指定)의 가치(價値)가 있는 귀중(貴重)한 문화재(文化財)가 그 보호(保護)에 긴급(緊急)한 필요(必要)가 있고 지정(指定)의 절차를 거치기에 시일(時日)이 걸리어 그 보존(保存)에 긴급(緊急)한 사항(事項)이 요구(要求)되는 경우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의 신청(申請)에 의하여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은 그 문화재(文化財)를 중요(重要) 문화재(文化財)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는데 이때 관보(官報)에는 고시(告示)하지 않고 그 소유자(所有者)에게 통지(通知)한 날로부터 효력(效力)이 발생(發生)하며 가지정(假指定) 문화재(文化財)는 6개월이내(個月以內)에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자문(諮問)을 거쳐 지정(指定)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지정(指定)의 효력(效力)은 자연히 상실된다. (第16條)

그러므로 서울 특별시장(特別市長), 부산시장(釜山市長), 또는 각 도도지사(道道知事)는 문화재(文化財)의 지정(指定)이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될 때에는 문화재(文化財)의 종별(種別), 명칭(名稱), 수량(數量), 소재지(所在地), 소유자(所有者)나 소재지(所在地)의 보호자(保護者), 관리자(管理者), 점유자(占有者)의 주소(住所), 성명(姓名)과 문화재(文化財)의 작자(作者), 유래(由來), 전설(傳說) 및 현황(現況) 자재(資材), 크기, 형태(形態), 구조(構造), 사진(寫眞), 도면 기타 필요(必要)한 기록(記錄)과 그 보호(保護)에 필요(必要)한 제한, 금지 사항(事項)등을 갖추어서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에게 보고(報告)하여야 하며, 이 지정신청(指定申請)된 문화재(文化財)의 조사(調査)는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 및 전문위원(專門委員)과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직원(職員)이 확인(確認) 조사(調査)하여 문화재(文化財) 위원회(委員會)의 분과별(分科別) 회의(會議)에 자문(諮問)하고 그 의결에 따라 지정(指定)되면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은 문화재(文化財)의 지정(指定) 종별(種別), 명칭(名稱), 수량(數量), 등급(等級), 소재지(所在地)와 또는 그 보호물(保護物)의 보호(保護) 구역(區域)과 소유자(所有者)의 주소(住所) 성명(姓名)을 관보(官報)에 기재(記載)하여 고시(告示)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業務)를 지정(指定) 조사반(調査班)이 맡고 있으며 연(年) 문서(文書)의 접수건수 1,000여건에 발송건수 569건 (68년도(年度))의 사무량(事務量)이 있다.

3) 보수(補修) 관리반(管理班)

문화재(文化財) 보호법(保護法)의 관리(管理) 및 보호(保護)에 관한 사항(事項)을 담당(擔當)하는 반(班)으로

- (1)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의 보수(補修)에 관(關)한 사항(事項)
- (2) 문화재(文化財)의 현상(現狀) 변경(變更) 허가(許可) 사항(事項)
- (3)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에 대(對)한 주기적(週期的)인 조사(調査) 업무(業務)등을 담당(擔當)한다.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은 문화재(文化財) 보호법(保護法) 第17條에 의해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 또는 점유자(占有者)에 대(對)하여 관리(管

리)에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의 지정(指定)을 할 수 있으며,

행정(行政) 명령(命令)으로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 또는 관리자(管理者)나 관리(管理) 단체(團體)에 대(對)하여 수리(修理) 기타 필요(必要)한 시설(施設)의 설치(設置) 또는 방해물(妨害物)을 제거(除去)하게 하는 명령(命令)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措置)를 하게 하는데 (第22條)

이 명령(命令)을 받은 소유자(所有者), 관리자(管理者)나 관리(管理) 단체(團體)가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의 수리(修理) 또는 시설(施設) 설치(設置) 기타 장애물 제거(除去)등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의 허가(許可)를 받아 조치(措置)에 착수하거나 완료(完了)한 때에는, 지정번호(指定番號), 잡별(雜別), 명칭(名稱), 수량(數量), 소재지(所在地), 또는 보관장소(保管場所), 공사명(工事名), 내용(內容), 착공일(着工日)과 준공일(竣工日), 허가(許可) 명령(命令)을 받은 연월일(年月日), 공사담당자(工事擔當者) 공사금액(工事金額), 공사(工事)일지 등의 신고(申告) 사항(事項)을 처리(處理)하며 (第24條)

국유(國有) 문화재(文化財)의 관리(管理)와 (第50條)

관리(管理) 단체(團體)가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를 관리(管理)함에 필요(必要)한 경비(經費)와, 法第22條의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의 행정명령(行政命令)의 수행(遂行)에 필요(必要)한 경비(經費)와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 관리자(管理者)의 부담 능력 없는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관리(管理) 보호(保護) 수리(修理)에 필요(必要)한 경비(經費)는 국고(國庫)에서 보조(補助)한다. (第25條 1項) 이때 보조(補助)를 받고자 하는 자(者)는 문화재(文化財)의 지정번호(指定番號), 종별(種別), 명칭(名稱), 수량(數量), 소재지(所在地), 또는 보관장소(保管場所), 소유자(所有者), 보유자(保有者), 관리자(管理者)의 주소(住所) 성명(姓名) 또는 관리단체(管理團體)의 명칭(名稱), 보조요청사유(補助要請事由), 공사관리(工事管理), 보호(保護), 또는 육성(育成)에 관(關)한 계획서(計劃書), 설계서(設計書), 시방서(示方書), 설계도(設計圖), 사진(寫眞), 소요경비(所要經費) 및 그 재원(財源) 기타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기재(記載)하여 신청(申請)한다. (시행령(施行令) 第10條)

이때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수리(修理) 기타 공사(工事)에 관(關)한 지휘(指揮) 감독권(監督權)은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있으며 (法第25條 2項), 이 보조금(補助金)은 특별(特別)한 경우를 제외(除外)하고는 서울특별시장(特別市長), 부산시장(釜山市長), 각도(各道) 도지사(道知事)를 통(通)하여 교부(交付)하고 그 지시(指示)에 따라 관리사용(管理使用)토록 시달한다. (法第25條 3項)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의 반환을 명령(命令)하는 바, 보조금(補助金)은 교부목적외의(交付目的以外)에 사용(使用)했을 때는 보조금(補助金)의 유용액 전부(全部)를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허가(許可)한 사항(事項)을 위배하여 허가취소(許可取消)의 경우에 그 정상에 따라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를 (法第22條), 보조금(補助金)의 보조목적(補助目的) 달성(達成)의 가망이 없을 때에도 그 전액(全額) 또는 일부(一部)를, 사기 기타 부정(不正)의 방법(方法)으로 보조금(補助金)을 받았을 때는 보조금(補助金) 전액(全額)을 보조금(補助金)에 의하여 수리(修理) 기타 공사(工事)를 시행(施行)한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를 유상(有償)으로 양도하였을 때에는 보조금(補助金)에 의한 수리(修理)등이 실시(實施)된 후(後) 경과(經過)로 인(因)하여 감가된 금액(金額)의 합계액(合計額)에서 보조금(補助金)에 의한 수리(修理)등이 실시(實施)된

후(後) 그 문화재(文化財)의 수리(修理)등을 위(爲)하여 본인(本人)이 부담(負擔)한 금액(金額)을 공제한 금액(金額)을 반환(返還)하여야 한다. (法第26條 및 동법(同法) 시행령(施行令) 第11條)

여기서 행정명령(行政命令)에 의하여 국고(國庫)가 부담(負擔)한 행위(行爲)도 또한 같다. (法第22條 2項의 경우(境遇))

이 반환금(返還金)의 잔여유효보조액(殘餘有效補助額) 산출(算出)은 보조(補助)에 의(依)하여 수리(修理)등을 실시(實施)한 문화재(文化財) 또는 그 부분(部分)에 대하여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개별적(個別的)으로 내용년수(耐用年數)를 정(定)하고 보조금(補助金)을 앞의 설명(說明)과 같이 결정(結定)된 내용년수(耐用年數)로 제(除)하여 보조금(補助金)의 연평균(年平均) 유효액(有效額)을 산출(算出)하며 이같이 산출(算出)된 보조금(補助金)의 연 평균(年平均) 유효액(有效額)에 그 보조(補助)에 의한 수리(修理)등이 완료(完了)된 때로부터 그 문화재(文化財)를 양도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내용년수(耐用年數)에서 공제한 연수(年數) (1년미만은 이를 절사(切捨)한다)를 승하여 잔여유효 보조액을 결정(決定)한다. 다만 국고보조(國庫補助) 또는 국고(國庫)부담에 의하여 수리(修理)등이 실시(實施)된 후(後) 당해 문화재가 소유자(所有者) 등에 귀착될 수 없는 사유(事由)로 인하여 현저하게 가치가 상실되었을 경우 또는 당해 문화재를 국가(國家)에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一部)를 면제할 수 있는 (시행령(施行令) 第11條 3項) 보조금(補助金) 교부(交付)와 반환의 업무를 분장하며,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관리자(管理者) 보유자(保有者) 관리단체(管理團體)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명령을 하고 (法第22條 1項1號)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수리(修理) 기타 필요(必要)한 시설(施設)의 설치(設置) 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명령을 했을 때 (第22條 1項3號)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명령을 하여 (법(法) 第22條 1項4號) 손실을 받은 자는 국가(國家)가 그 손실(損失)을 보상(補償)하여야 하는바, 이 손실(損失)을 받은 자(者)는 문화재(文化財)의 지정(指定)번호 종별(種別) 명칭(名稱) 수량(數量) 소유지(所有地) 또는 보관장소(保管場所)와 그 사유(事由)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2월내(月內)에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신청(申請)하고 이를 받은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그 사실(事實)을 조사(調查)하고 손실(損失)의 원인이 그 소유자(所有者) 보유자(保有者) 또는 관리자(管理者)나 관리단체(管理團體)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이 확인(確認)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자문(諮問)을 거쳐 그 보상액(補償額)을 결정(決定)하여야 하는 것이다. (法第27條 및 시행령(施行令)12條) 이때에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손실보상액(損失補償額)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보상액통지(補償額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月內)에 법원(法院)에 출소(出訴)할 수 있다. (法第27條 2項)

끝으로 지방공공단체는 그 소유자(所有者) 또는 관리(管理)에 속(屬)하는 지정문화재외(指定文化財外)의 그 관리구역내(管理區域內)에 있는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에 대(對)하여 그 관리(管理) 보호(保護) 또는 수리(修理)등에 대(對)하여 그 관리(管理) 보호(保護) 또는 수리(修理)등에 필요(必要)한 경비(經費)를 부담 또는 보조(補助)할 수 있다. (法第28條)

이상(以上)의 여러 사항(事項)은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도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와 같은 대상으로 보호(保護) 관리(管理)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文化財)의 보수(補修)에 있어서 특별(特別)한 기술(技術)과 경험과 지식(知識)이 필요하므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시행령(施行令) 第28條에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화재(文化財) 보수(補修) 관리(管理)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양성하게 하였으며 이를 부령 第164號로 다음 표와 같이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기술자(技術者)와 기능자(技能者)를 등록케하고 보수업자(補修業者)를 등록시켜 문화재(文化財) 보수(補修) 환경정비 실측 설계 촬영등에 필요한 자격을 심사 확인하여 문화재 보수에 전문성과 신중성을 기하고 있다. (87-1, 87-2 표삽입)

국가(國家)가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를 수리(修理) 기타 조치(措置)를 할 때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사전(事前)에 그 소유자(所有者) 또는 관리자(管理者)에 대(對)하여 당해(當該) 문화재(文化財)의 지정번호, 명칭, 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의 내용, 착수 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記載)한 통지서(通知書)를 교부(交付)해야 한다. (시행령(施行令) 第8條)

이러한 사항(事項)에 근거(根據)하여, 지정(指定)된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를 801점 중(中)에서 보수(補修)가 필요(必要)한 문화재(文化財)를, 석조(石造)보다 목조(木造)를 우선(優先)하고, 시급(時急)한 정도와 중요도(重要度)에 따라 사업순위(事業順位)를 책정(策定)하여, 문화재보수(文化財補修) 第1次 5개년(個年) 계획기간(計劃期間)에 다음 표(表) 1에서와 같이 408점(點)의 문화재(文化財)를 3억8천5백만의 재원(財源)으로 보수 완료(補修完了)하고 1969년부터 1973년까지 5개년(個年)에 第2次 보수계획(補修計劃)을 수립하여, 69년의 사업(事業)을 표(表)2에서와 같이 선정(選定)하여 보수(補修)에 필요(必要)한 모든 행정지원(行政支援)과 공사목표지침(工事目標指針)과 보조금(補助金)을 책정하였다.

문화재관계기술자명단(文化財關係技術者名單)

※○고용가능자

認定 番號	종 류 (種 類)	유 별 (類 別)	성 명 (姓 名)	업체고용여부	認定 番號	종 류 (種 類)	유 별 (類 別)	성 명 (姓 名)	업체고용여부
1	보 수 (補 修)	을류 (乙類)	양 철 수 (楊 澈 洙)	가옥건설 (家屋建設)	18	보 수 (補 修)	을류 (乙類)	임 덕 창 (林 德 昌)	○
2	"	"	정 복 영 (鄭 復 永)	장한건설 (長韓建設)	19	"	"	김 관 풍 (金 寬 豐)	○
3	"	"	임 종 대 (林 鐘 大)	칠성건설 (七星建設)	20	"	"	최 석 낙 (崔 石 洛)	○
4	"	"	윤 봉 기 (尹 鳳 基)	신 양 사 (信 陽 社)	21	"	"	강 봉 진 (姜 奉 辰)	○
5	"	"	유 해 종 (柳 海 宗)	우보건설 (宇寶建設)	22	"	"	조 상 균 (趙 相 均)	○
6	"	"	조 원 재 (趙 元 載)	동양건설 (東洋建設)	23	단 청 (丹 靑)	"	김 을 룡 (金 乙 龍)	○
7	"	"	이 선 영 (李 鮮 影)	고 건 사 (古 建 社)	24	"	"	이 세 환 (李 世 煥)	○
8	실 측 설 계 (實 測 設 計)	"	최 용 완 (崔 容 完)	○	25	"	"	한 석 성 (韓 奭 成)	○
9	"	"	홍 성 철 (洪 性 哲)	○	26	"	"	신 언 수 (申 彦 守)	○
10	"	"	강 봉 진 (姜 奉 辰)	○	27	실 측 설 계 (實 測 設 計)	"	김 동 현 (金 東 賢)	○
11	보 수 (補 修)	"	장 경 호 (張 慶 浩)	○	28	"	"	장 기 인 (張 起 仁)	○
12	"	"	박 병 기 (朴 炳 琦)	○	29	"	"	허 진 (許 鎭)	○
13	"	"	김 정 석 (金 楨 石)	칠성건설 (七星建設)	30	"	"	안 상 열 (安 相 烈)	○
14	"	"	윤 남 순 (尹 南 淳)	○	31	"	"	김 의 중 (金 義 中)	○
15	"	"	이 삼 주 (李 三 洲)	철도페인트 (鐵道)	32	보 수 (補 修)	"	김 주 태 (金 周 泰)	○
16	"	"	정 재 국 (鄭 在 國)	○	33	"	"	김 동 현 (金 東 賢)	○
17	보 수 (補 修)	"	이 래 우 (李 來 禹)						

기능자등록현황(技能者登錄現況)

종별 (種別)	류별		성명 (姓名)	비고 (備考)	종별 (種別)	류별		성명 (姓名)	비고 (備考)	종별 (種別)	류별		성명 (姓名)	비고 (備考)
목공 (木工)	정공 (正工)	정	정영진 (鄭榮鎭)		목공 (木工)	조(助)	가 (假)	정대기 (鄭大基)		도잡 이공 (工)	정 (正)	정	김용교 (金容敎)	
"	"	"	고택용 (高澤鎔)		"	"	"	박덕균 (朴德均)		"	"	"	김창순 (金昌順)	
"	"	"	이대수 (李兌洙)		"	"	"	김명성 (金明成)		"	"	가 (假)	이칠성 (李七星)	
"	"	"	황룡연 (黃龍淵)		"	"	"	방근수 (方根洙)		"	조 (助)	정	이용□ (李鎔□)	
"	"	"	김문용 (金文容)		"	"	"	손덕흥 (孫德興)		"	"	가 (假)	백기현 (白奇鉉)	
"	"	"	이광규 (李光奎)		"	"	"	신응수 (申應秀)		"	"	"	강용득 (姜龍得)	
"	"	가 (假)	이창수 (李蒼秀)		"	"	"	권천식 (權天植)		"	"	"	윤정태 (尹定泰)	
"	"	"	김정수 (金正洙)		"	"	"	정규옥 (丁奎玉)		"	"	"	이병선 (李炳善)	
"	"	"	장원집 (張元集)		"	"	"	고낙곤 (高洛坤)		"	"	"	이완식 (李完植)	
"	"	"	최수명 (崔壽命)		"	"	"	신범영 (申範永)		"	"	"	김윤식 (金允植)	
"	"	"	박기섭 (朴麒燮)	사망 (死亡)	"	"	"	이상영 (李相□)		미장공 (工)	정 (正)	정	김영기 (金永基)	
"	"	"	김중희 (金重熙)		"	"	"	정근조 (鄭根朝)		"	"	"	최인식 (崔仁植)	
"	"	"	박광석 (朴光錫)		"	"	"	권오봉 (權五鳳)		"	"	가 (假)	정봉운 (鄭奉云)	
"	조(助)	정 (正)	송창규 (宋昌圭)		와공 (瓦工)	정 (正)	정	기선길 (奇善吉)		"	조 (助)	"	이기백 (李基百)	
"	"	"	정만진 (丁萬鎭)		"	"	"	오산건 (吳相建)		화공	정 (正)	정	김성수 (金聖洙)	
"	"	"	정옥진 (丁玉鎭)		"	"	"	박상갑 (朴相甲)		"	"	"	김상수 (金相洙)	
"	"	"	김우식 (金祐植)		"	"	"	이용남 (李龍男)		"	"	가 (假)	신상균 (申尙均)	
"	"	"	김수영 (金洙榮)		"	"	"	이인세 (李仁世)		"	"	정 (正)	김현규 (金顯奎)	
"	"	"	송문규 (宋文圭)		"	조 (助)	"	송이성 (宋二成)		"	"	"	신언식 (申彦植)	
"	"	가 (假)	태희복 (泰熙福)		"	"	"	박종학 (朴鐘學)		"	"	"	이기석 (李奇石)	
이(李)	"	"	이규선 (李圭善)		"	"	"	유학수 (柳學水)		"	"	가 (假)	이두성 (李斗成)	
"	"	"	양수영 (梁壽榮)		"	"	"	김남규 (金南圭)		"	"	"	박용□ (朴龍□)	
"	"	"	유상호 (俞相鎬)		"	"	"	이술일 (李術一)		"	"	"	마경주 (馬慶周)	
"	"	"	김상룡 (金相龍)		"	"	"	김천석 (金千石)		"	"	"	최원선 (崔元善)	
"	"	"	박노운 (朴魯雲)		"	"	"	민천경 (閔千慶)		"	"	"	유병기 (柳丙基)	
"	"	"	노영기 (盧永基)		"	"	"	안봉산 (安奉山)		"	"	"	최원해 (崔元海)	
"	"	"	방근세 (方根世)		"	"	"	윤희옥 (尹熙玉)		조각공	석조 각	가 (假)		

"	"	"	방찬희 (方贊熙)	"	"	"	강대형 (姜大亨)	"	"	"	
"	"	"	백운기 (白雲起)	"	"	"	이종섭 (李鐘燮)	"	"	"	

<表 1> 유형문화재 보수 실적 집계표(천연기념물 포함) (단위 : 천원)

연도별 금 액 시 도	1964	1965	1966	1967	1968	계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서울	(1) 432,0	(1) 2,433,8	(3) 1,288,5	(5) 5,399,0	-	(10) 9,493,3
부산	-	-	(1) 35,0	(2) 1,779,5	-	(3) 1,814,5
경기	(5) 14,078,1	(8) 8,171,2	(10) 4,403,4	(6) 1,982,0	(5) 7,841,0	(34) 36,475,7
강원	(4) 1,156,3	(3) 470,0	(13) 3,792,7	(5) 1,410,0	(2) 855,0	(27) 7,684,0
충북	(3) 105,0	(6) 2,677,3	(17) 8,356,8	(5) 7,924,3	(3) 11,882,3	(34) 30,945,7
충남	(8) 2,211,5	(7) 2,835,0	(11) 30,167,5	(16) 47,254,3	(4) 67,516,5	(46) 149,984,8
전북	(5) 200,3	(9) 2,839,0	(43) 11,947,8	(14) 2,967,5	(2) 425,0	(73) 18,379,6
전남	(16) 6,968,2	(8) 2,910,0	(22) 10,255,9	(11) 8,787,0	(4) 6,426,0	(61) 35,347,1
경북	(12) 3,031,0	(8) 2,599,5	(16) 14,736,5	(10) 11,594,6	(4) 2,439,0	(50) 34,400,6
경남	(12) 21,140,1	(5) 6,984,0	(22) 14,826,0	(9) 8,428,5	(9) 5,979,0	(57) 57,357,6
제주	(2) 90,0	(2) 154,0	(4) 499,0	(3) 390,0	(2) 2,050	(13) 3,183,0
계	(68) 49,412,5	(57) 32,073,8	(162) 100,309,1	(86) 97,856,7	(35) 105,413,8	(408) 385,065,9

<表 2> 문화재보수 제2차 5개년 계획 (단위 : 1,000천원)

연도별 종류 금액	1969		16970		1971		1972		1973		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국보	6	16,500,0	3	17,000,0	19	37,000,0	5	165,000,0	4	5,300,0	28	92,300,0
보물	5	40,300,0	7	40,500,0	5	36,500,0	21	44,000,0	38	44,000,0	76	205,300,0
사적	4	7,420,0	6	44,000,0	4	35,500,0	10	36,000,0	24	53,200,0	48	176,120,0
사적 및 명승												
전각능	12	24,697,0									12	24,697,0
계	27	88,917,0	16	101,500,0	19	109,000,0	36	96,500,0	66	102,500,0	164	498,417,0

이러한 문화재(文化財)의 보수(補修)를 위한 조사상(調査上) 필요(必要)에서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 관리자(管理者) 관리단체(管理團體)로부터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현상(現狀) 또는 관리(管理), 수리(修理) 기타 환경보전상황(環境保全狀況)에 관(關)하여 보고(報告) 받으며 (法第37條)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할 때에는 그 소속(所屬) 공무원(公務員)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현상(現狀)에 관(關)하여 주기조사(週期調査)할 수 있다. 이 조사(調査)의 착수전(着手前)에 그 취지(趣旨)를 소유자(所有者) 관리자(管理者) 관리단체(管理團體)에 통지(通知)하여야 하고 긴급(緊急)한 경우에는 사후(事後)에 통지(通知)할 수 있다. 이 조사(調査)에 임하는 관계자(關係者)는 필요(必要)한 물건(物件)의 제공(提供) 기타의 협조(協助)를 요구(要求)하거나, 측량(測量) 발굴(發掘) 장애물(障害物)의 제거(除去) 기타 조사상(調査上) 필요(必要)한 행위(行爲)를 할 수 있으며 단(但) 일출전(日出前) 또는 일몰후(日沒後)에는 소유자(所有者) 관리자(管理者) 관리단체(管理團體)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이 조사(調査)로부터 손실(損失)을 받은 자(者)에게는 보상금(補償金)을 지급(支給)하며 (法第38號)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국유(國有)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소유(所有) 또는 관리(管理)에 속(屬)할 때는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당해(當該) 기관장(機關長)에게 조사(調査) 요청(要請)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나 관리단체(管理團體)가 조사(調査)할 시(時)에도 먼저 설명(說明)한 것과 같이, 취지(趣旨)를 통지(通知)하고 조사시(調査時)에 생기는 손실(損失)에 대(對)하여 보상(補償)하여야 하며, 조사원(調査員)은 신분(身分)을 증명(證明)하는 증표(證票)를 휴대(携帶)하고 관계자(關係者)의 요구(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提示)하여야 한다. (法第 40條)

이러한 법규(法規)에 근거(根據)하여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의 누수(漏水), 부패(腐敗), 환경(環境) 기타 건축물(建築物) 시설물(施設物)의 풍화(風化) 등의 점검(點檢)을 하여 보수(補修)의 설계실측(設計實測) 배치도(配置圖) 사진(寫眞) 등을 비치(備置)하고 과학적(科學的) 보존관리(保存管理)의 적용(適用)을 실시(實施)하여야 하는바, 이 반(班)의 보수(補修) 현상변경(現狀變更) 등의 문서(文書)는 68년에 371건(件)의 발송문서가 있었으며 현재(現在) 5인(人)의 직원(職員)이 담당(擔當)하고 있다.

4) 보급반(普及班)

보급반(普及班)의 업무분담(業務分擔)은

- (1) 관리자(管理者) 및 관리단체(管理團體) 지정(指定)에 관(關)한 사항(事項)
- (2) 문화재(文化財) 해외반출(海外搬出)에 관(關)한 사항(事項)
- (3) 문화재관리상(文化財管理上)의 허가사항(許可事項)
- (4) 문화재(文化財)의 선양(宣揚)과 보급(普及)에 관(關)한 사항(事項)

이상(以上)의 제(諸) 업무수행(業務遂行)을 위한 법규(法規)의 근거(根據)는 다음과 같다.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 보존자(保存者) 관리자(管理者)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 기타 행정기관(行政機關)의 명령(命令)과 지시(指示)에 따라 당해(當該) 문화재(文化財)를 선량(善良)한 관리자(管理者)의 주의(注意)로서 보호(保護) 관리(管理)해야 할 의무(義務)가 있으며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는 자기(自己)를 대신(代身)할 관리자(管理者)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이 선임자(選任者)는 앞서와 같이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 기타 기관(機關)의 명령(命令)과 지시(指示)를 받아야 한다. (法第 18條)

그리고 개인(個人)에게 관리자(管理者)를 선정(選定)하는 것이 불합리(不合理的)하다고 인정(認定)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를 지정(指定)하여 당해(當該)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를 관리(管理)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먼저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와 지정(指定)코자하는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의 의견(意見)을 들어야 하고, 관리단체(管理團體)로 지정(指定)을 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趣旨)를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함과 동시에(同時)에 고시(告示)의 효력(效力)은 고시(告示)한 날로부터이며 당해(當該)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 또는 관리자(管理者)와 당해(當該)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에 이를 통지(通知)하여야 한다. 이때 소유자(所有者)나 관리자(管理者)는 정당(正當)한 사유(事由)없이 지정(指定)된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관리단체(管理團體))의 관리행정(管理行政)을 방해(妨害)할 수 없고, 지정(指定)된 관리단체(管理團體)는 필요(必要)한 경비(經費)를 부담(負擔)하고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관리(管理) 보호(保護)에 관(關)한 지시(指示)를 받는다. (法第19條)

그리고 허가사항(許可事項)에 있어서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指定)된 동물(動物) 또는 식물(植物)을 그 도래(渡來) 또는 생장(生長)하는 구역이외(區域以外)로 반출(搬出)할 때나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를 국외(國外)로 반출(搬出)하거나 연고관계(緣故關係)있는 사찰 서원 향교 교회등의 경내(境內)나 사지(寺址) 궁지(宮址) 원(苑) 기타 사적지(史蹟地) 또는 유적지(遺蹟地)에 소재(所在)하거나 보관(保管)되어 있는 경우의 그 구역내(區域內)나 박물관(博物館) 과학관(科學館) 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類似)한 시설(施設)에 보관(保管)되어 있는 경우의 그 경내(境內)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보(國寶) 보물(寶物)을 촬영 또는 모조(模造)하거나 이를 승인하거나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를 녹음 촬영하거나, 악보, 대본 등을 제작하거나 승인하거나, 지정문화재의 현상(現狀)을 변경(變更)하거나 또는 그 보존(保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許可)된 조건이나 내용(內容)을 변경(變更)하거나 할 때는 소유자(所有者) 보유자(保有者) 관리자(管理者) 관리단체(管理團體)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허가(許可)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정(指定)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의 국외반출(國外搬出)이나 수

출(輸出)인 경우도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허가(許可)를 얻어야 하고 장관(長官)은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되면 허가(許可)에 조건(條件)을 붙이거나 지시(指示)를 할 수 있고,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를 국외(國外)로 반출(搬出)할 때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각의(閣議)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法第20條)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국내반출(國內搬出)의 허가(許可)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文化財)의 지정(指定)번호와 명칭, 종별, 수량, 도래지(渡來地), 성장지(生長地), 보관장소(保管場所), 연고관계(緣故關係), 반출사유(搬出事由), 반출연월일(搬出年月日), 반출방법(搬出方法), 소요경비(所要經費) 및 그 재원(財源) 다시 반입(搬入)할 경우에 이에 관(關)한 사항(事項) 기타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기재(記載)하여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신청(申請)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국외수출(國外輸出) 또는 반출(搬出)이나, 비 지정(非指定)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의 국외(國外) 수출(輸出) 또는 반출(搬出)의 경우에는 문화재(文化財)의 지정(指定)번호, 종별(種別), 명칭(名稱), 수량(數量), 보관장소(保管場所), 그 사유(事由), 수출처(輸出處), 그 예정연월일(豫定年月日), 수출(輸出) 또는 반출(搬出) 당사(當者)의 주소(住所), 성명(姓名), 수출(輸出)이나 반출중(搬出中)의 문화재(文化財) 보관방법(保管方法), 촬영물, 모사물(模寫物), 모조물(模造物) 또는 사진(寫眞), 보험방법(保險方法), 다시 수입(輸入) 또는 반입(搬入)할 경우에는 이에 관(關)한 사항처(事項處) 반출(搬出) 기타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기재(記載)하여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신청(申請)하여야 한다.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촬영, 모사(模寫), 모조(模造), 악보 또는 대본(臺本)의 제작(製作), 녹음, 촬영등에 관(關)한 허가(許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文化財)의 지정(指定)번호, 종별(種別), 명칭(名稱), 소재지(所在地), 보관장소(保管場所), 필요(必要)로 하는 사유(事由), 그 기술(技術) 담당자(擔當者)의 주소(住所), 성명(姓名), 작업(作業)을 하고자 하는 부문(部門)의 수량(數量), 실시예정기일(實施豫定期日), 방법(方法), 소요(所要) 경비(經費)와 재원(財源) 기타 사항(事項)을 갖추어 신청(申請)하고,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현상(現狀) 변경허가(變更許可)를 얻고자 할 때에는 지정(指定)번호, 종별(種別), 소재지(所在地) 또는 보관장소(保管場所), 변경사유(變更事由)와 부분(部分), 설계서(設計書), 시방서(示方書), 설계도(設計圖), 현상사진(現狀寫眞) 기타 물건(物件)의 소유증명서(所有證明書), 관리(管理團體)나 관리자(管理者)의 경우이면 소유자(所有者)의 동의서(同意書), 관리단체(管理團體)나 관리자(管理者)의 경우이면 소유자(所有者)의 동의서(同意書), 공사담당자(工事擔當者)의 주소(住所), 성명(姓名), 착공 및 준공예정일, 소요(所要) 경비(經費) 및 재원(財源) 기타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기재(記載)하여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제출(提出)하여야 하며, 허가(許可)의 내용(內容)이나 조건(條件)의 변경(變更)을 허가(許可)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文化財)의 지정(指定)번호, 종별(種別), 명칭(名稱), 수량(數量), 소재지(所在地) 또는 보관장소(保管場所), 변경(變更)하고자 하는 사유(事由), 그 부분(部分)과 방법(方法), 변경(變更) 부분(部分)의 사진(寫眞), 도면(圖面) 기타 참고 사항(事項)을 기재(記載)하여 허가(許可)를 신청(申請)하여야 한다. (시행령(施行令) 第6條) 이상(以上)은 문화재보호법상(文化財保護法上)의 허가(許可) 사항(事項)이고 다음 신고사항(申告事項)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관리자(管理者), 소유자(所有者), 보유자(保有者)나 관리단체(管理團體)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신고(申告)하여야 하는 바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관리자(管理者)는 선임(選任) 또는 변경(變更)하였을 때는 지정(指定)번호, 종별(種別), 명칭(名稱), 수

량(數量), 소재지(所在地) 또는 보관장소(保管場所), 신구(新舊) 관리자(管理者)의 주소(住所), 성명(姓名), 변경(變更) 연월일(年月日), 기타 사항(事項)을 기재(記載)하여 신고(申告)하고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관리자(管理者)가 아니고, 소유자(所有者)에 변동(變動)이 있을 때에는 문화재(文化財)의 지정(指定) 번호, 종별(種別), 명칭(名稱), 소재지(所在地), 보관장소(保管場所), 보호(保護) 구역(區域) 보호물(保護物)의 소유자변동(所有者變動)일 때에는 보호(保護) 구역(區域) 및 그 보호물(保護物)의 소재지(所在地) 구역(區域), 신구(新舊) 소유자(所有者)의 주소(住所) 성명(姓名), 소유자(所有者) 변동(變動) 원인(原因), 변동(變動) 연월일(年月日), 기타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기재(記載)하여 신고(申告)하여야 한다.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 보유자(保有者) 또는 관리자(管理者)의 성명(姓名)이나 주소(住所)에 변동(變動)이 있었을 때나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보호(保護) 구역(區域)의 지명(地名), 지번(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등에 변경(變更)이 있을 경우나,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보관장소(保管場所)를 변경(變更)하였을 때는 지정번호(指定番號), 종별(種別), 명칭(名稱), 수량(數量), 소재지(所在地), 보관장소(保管場所), 변경(變更) 또는 변경사항(變更事項), 변동사유(變動事由), 변경(變更)한 연월일(年月日), 보관장소(保管場所) 변경(變更)의 경우는 필요(必要)한 사진(寫眞)과 도면(圖面)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提出) 신고(申告)하여야 하고,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멸실 또는 도난,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정(指定)번호 종별(種別), 명칭(名稱), 수량(數量), 소재지(所在地) 또는 보관장소(保管場所), 멸실, 도난 또는 훼손의 원인, 경위 및 현황(現況), 멸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年月日), 멸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내용, 사진(寫眞), 도면(圖面) 기타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신고(申告)한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指定)된 동물(動物) 또는 식물(植物)을 그 도래(渡來) 또는 생장(生長)하는 구역(區域) 이외(以外)로 반출(搬出)한 것이나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나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를 국외(國外)로 수출(輸出) 또는 반출(搬出)하거나 그 연고(緣故) 관계(關係)와 보관장소(保管場所)에서 허가(許可)를 받고 반출(搬出)되었다가 다시 반입(搬入) 또는 수입(輸入)했을 때에는 지정번호(指定番號), 종별(種別), 명칭(名稱), 수량(數量), 수출연월일(輸出年月日) 수입(輸入)의 경우에는 수입자(輸入者)의 주소(住所) 성명(姓名), 보관장소(保管場所), 수입(輸入) 연월일(年月日) 당초 허가(許可)된 때의 연월일(年月日), 문화재(文化財)의 현황(現況) 기타 필요(必要)한 사항(事項)과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촬영 모사 모조등을 하거나 녹음, 촬영 또는 악보 대본(臺本) 등의 제작(製作)을 완료(完了)하였을 시(時)는 지정(指定)번호, 종별(種別), 명칭(名稱), 수량(數量), 소재지(所在地) 또는 보관장소(保管場所), 촬영등의 허가(許可) 연월일(年月日), 작성자 및 수량(數量) 실시기간(實施期間), 기술자(技術者) 담당자(擔當者)의 보고서(報告書) 기타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갖추어 신고(申告)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를 사고 팔 때에는 지정(指定)번호, 명칭(名稱), 수량(數量), 소재지(所在地), 보관장소(保管場所) 매도에 필요한 사유(事由), 매매자(賣買者)의 주소(住所), 성명(姓名) 매도 예정가격, 사진(寫眞) 기타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기재(記載) 신고(申告)하여야 한다.

다음은 문화재(文化財)의 공개(公開) 사항(事項)으로서 지정문화재중(指定文化財中) 건조물(建造物) 또는 토지(土地) 기타 고착물(固着物)에 부착된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와 사적(史蹟), 명승(名勝) 또는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指定)된 것은 다음의 경

우를 제외(除外)하고는 그 소유자(所有者) 또는 관리자(管理者)나 관리단체(管理團體)는 이를 공개(公開)하여야 하는 (法第30條 31條 32條 33條) 이의 공개(公開) 규정(規定)은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當該) 문화재(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 관리자(管理者) 관리단체(管理團體)가 정(定)하되 공개(公開) 시간(時間), 비공개일(非公開日), 관람료, 금지규정 또는 제한(際限) 사항(事項) 기타 관람자의 주의(注意) 사항(事項)등에 관(關)하여 규정(規定)하여야 하고 소유자(所有者), 관리자(管理者)나 관리단체(管理團體)가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종교예식이나 사무(事務) 집행상(執行上) 또는 공사(工事) 집행상(執行上) 비공개(非公開)의 승인을 받았을 때나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의 장관(長官)이 명령(命令)을 발했을 때는 당해(當該) 문화재(文化財)의 지정번호, 종별(種別), 명칭(名稱), 소재지(所在地), 공개제한중지(公開際限中止) 또는 불능(不能)의 사유(事由), 범위, 기간(期間)등을 관보(官報)에 게재하고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행(行)한다.(시행령(施行令) 第13條)

이러한 비공개(非公開) 사항(事項)이란 관리자(管理者), 관리단체(管理團體)는 종교의 예식(禮式)이나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에 관(關)한 사무(事務) 집행상(執行上) 또는 공사(工事) 실시상(實施上) 필요(必要)하거나 이러한 것을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승인을 받았거나, 장관(長官)이 훼손 방지상(防止上)의 필요(必要)로 그 공개(公開)를 제한(際限) 또는 중지(中止)를 명(命)하였을 때이다.(法第31條1項)

동산(動産)에 속(屬)한 문화재(文化財)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所有者) 또는 관리단체(管理團體)는 이를 공개(公開)하여야 한다.(法第 32條)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으로부터 1年 이내(以內)의 기간(期間)을 정(定)하여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기타의 장소(場所)에 공개(公開)를 위하여 출품(出品)할 것을 명령(命令)받았을 때와 (단(但) 그 기간(期間)을 삼년(三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외(方法外)로 3개월(個月) 이내(以內)의 기간(期間)을 정(定)하여 공개(公開) 조처의 명령(命令)을 받았을 때에는 공개(公開)하여야 하는 바(法第32條) 이는 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의 확인(確認)과 선양(宣揚)과 보급(普及)의 의미(意味)와 학술(學術) 자료(資料)로서의 지시(指示)가 그 목적(目的)이다.

그러나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 관리자(管理者) 또는 관리단체(管理團體)가 공개(公開) 명령(命令)을 받고 이에 응(應)할 수 없는 사유(事由)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시행령(施行令) 第14條)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 관리자(管理者) 관리(管理)단체(團體)로부터 동문화재(同文化財)의 출품(出品)을 받았을 때에는 국립박물관장(國立博物館長) 또는 기타의 시설(施設)의 장(長)은 출품자(出品者)에게 인수증을 교대(交代)하여야 하며 출품(出品)된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를 반환할 때에는 인수증과 교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事項)은 국립박물관장(國立博物館長) 기타 시설(施設)의 장(長)이 장관(長官)에게 보고(報告)하여야 하고 이 외에 3월이내(月以內)의 기간(期間)을 정(定)하여 공개(公開)조처의 명령(命令)을 받았을 때에는 공개사항(公開事項)을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정(定)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關係) 기관(機關)에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공개(公開) 또는 출품(出品)의 허가(許可)를 받고자 할 때는 문화재(文化財) 지정(指定)번호, 종별(種別), 명칭(名稱), 수량(數量), 보관장소(保管場所), 공개(公

開)나 출품(出品)의 사유(事由), 장소(場所), 주최자(主催者)의 주소(住所), 성명(姓名), 공개(公開) 또는 출품(出品)의 기간(期間), 운반 방법, 안전 조치, 기타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기재(記載)하여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신청(申請)하여야 한다.(시행령(施行令) 第14條1項)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공개(公開)는 특별(特別)한 경우를 제외(除外)하고는 매년(每年) 일회이상(一回以上) 공개(公開)하여야 하므로(法第33條) 연년(年年)이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발표(發表)공연(公演)을 열게 되는 것이다. 이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를 공개(公開)하는 자는 공개(公開) 사항(事項)을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정(定)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이 공개(公開) 비용(費用)은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명령(命令)에 의한 경우에는 경비(經費) 전액(全額)을 국고(國庫)에서 부담하고 신청(申請)에 의하거나 명령(命令) 이외(以外)의 방법(方法)으로 공개(公開)하는 경우에는 경비(經費)의 전부(全部)나 그 일부(一部)를 국고(國庫)에서 보조(補助)하여야 한다.(法第34條)

그리고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공개(公開) 명령(命令)에 의하여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를 출품(出品)하였을 때에는 국고(國庫)에서 급여금(給與金)을 지급(支給)하는데 이때 급여금(給與金)을 받고자 하는 자(者)가 문화재(文化財)의 지정(指定)번호, 종별(種別), 명칭(名稱) 수량(數量), 보관장소(保管場所), 출품장소(出品場所), 출품기간(出品期間) 및 그 사유(事由) 등을 갖추어 신청(申請)하면 된다.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가 공개중(公開中)에 멸실되었거나 손실(損失)을 입었을 때에는 그 손실(損失)을 보상(補償)하여야 하며 소유자(所有者) 관리자(管理者)나 관리단체(管理團體)의 귀책(歸責) 사유(事由)가 될 때에는 보상(補償)하지 아니한다.(法第35條2項)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관리자(管理者) 보유자(保有者) 또는 관리단체(管理團體)는 그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를 공개(公開)하는 경우에는 관람자(觀覽者)로부터 관람료(觀覽料)를 징수할 수 있으며(法第36條) 이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인가(認可)를 말아야 한다. (法第36條) 관람요금의 인가(認可)를 받고자 하는 자(者)는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종별(種別), 명칭(名稱), 수량(數量), 소재지(所在地), 보관장소(保管場所), 공개구역(公開區域), 공개장소(公開場所), 공개기간(公開期間), 공개방법(公開方法), 관람료의 금액(金額), 관람료의 징수방법(法),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신청(申請)하여야 한다.

현재(現在) 전국(全國)의 많은 사찰(寺刹)의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는 30원씩의 관람료를 인가(認可)하고 있다.

이 반(班)의 문서처리(文書處理)는 접수 520건에 발송문서 315건으로 68년에 처리(處理)된 실적(實積)이며 문화재(文化財)의 공개(公開)에 있어서는 신문(新聞), 잡지(雜誌), 영화(映畵), 방송(放送), 기타를 통하여 국민(國民) 사상(思想)의 계몽(啓蒙)에 기여(寄與)하고 있으며 문화재(文化財)의 활용(活用)을 담당(擔當)하고 있다.

5) 유물반(遺物班)

(1) 유물 정리, (2) 유물 대여, 우리 나라 현보유 유물수는 20만점을 넘기고 있다.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을 위시한 경주(慶州), 공주(公州), 부여 분관과 각 대학(大學) 및 도립(道立) 민간박물관(民間博物館) 그리고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의 보유 유물(遺

物) 등이다. 이 유물의 분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로서 금속류(金屬類), 옥석류(玉石類), 토기(土器), 도자기류, 골각, 목죽초칠류(木竹草漆類), 피모지류(皮毛紙類), 서화류(書畫類), 자본류(柘本類) 견직제품(絹織製品), 식구(食具), 의상(衣裳), 기타(其他)로 구분하는 것과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내훈(內訓) 第48號로 규정된 유물 취급 규정에 미술품(美術品) 악기류, 제기류, 어보책류, 서적류, 고문서류, 전적류, 족자류, 제기류, 가구류, 석조물류, 기타(규정 제2조)로 구분하고 있다. 고고자료는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과 각 대학 박물관이 궁중 유물은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 각각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물의 관리란 6·25 동란에 의한 이동과 그간의 정리원에 대한 확보 공작실 연구실 등 유물 창고의 미비로 정리 작업이 지연되어 왔다. 문화재관리국의 유물은 유물 취급 규정 제3조에 명시된 대장(臺帳) 및 카드를 비치(備置)하기 위하여 실측, 사진 촬영, 기록 정리 등의 작업을 하고 규정 제4조의 유물 관리처의 유물(遺物)을 점검한다. 그리고 유물(遺物)의 출납을 위한 사항(규정 제5조), 유물(遺物)의 전시(展示), 진열에 관한 일(규정 제6조), 유물의 망실 훼손의 처리,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重大)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변상책임(규정 제7조) 유물의 변동보고(규정 제8조)를 받으며 학술 단체나 제함에 유물을 대여하고(규정 제9조) 등급을 분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리하며(규정 제10조) 유물도록을 발간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업무가 유물관리인 것이다.

6) 발간반(發刊班)

(1) 간행물(刊行物) 발간(發刊)

(2) 간행물(刊行物) 배부(配付) 교환(交換)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단계의 분류중 보급(普及)에 해당(該當)하는 사업반이다. 이 발간반 사업(事業)으로서는 총괄적 개관의 정리(整理) 발간재료(發刊材料) 조사편의 발간(發刊), 전문 분야별 학술연구서 발간(發刊)의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시대별(時代別) 또는 문화(文化)의 성질별(性質別)로 구분(區分)하고 그 단위 사업(事業)을 단위 활동 별로 구분(區分)하여 발간(發刊)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대관(文化財大觀)이나 문화재지(文化財誌) 같은 것은 총괄적인 것이나 개관의 역임이 되고, 수리 보고서, 발굴보고서 기타 조서보고서는 재료편의 발간 단계로 물론(勿論) 연구서(研究書)도 되지만 학술 분야의 종합연구서(綜合研究書)는 따로 최종 단계에 발간(發刊)하여야 한다. 문화재(文化財)관리 행정기관은 총괄과 재료편을 발간하고, 연구서(研究書) 발간은 학술기관이나 다른 연구기관이 맡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7) 지적(地籍) 측량반(測量班)

(1) 보호(保護) 구역(區域)의 지적(地籍) 측량(測量)

문화재(文化財)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지정(指定)되는 문화재의 보호 구역(區域) 또는 보호물(保護物)의 보호 구역(區域)을 지정할 수 있는 바(법제11조)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장관이 문화재(文化財)를 지정하고 당해(當該) 문화재를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지정된 보호구역 및 보호물(保護物)과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도 고시하고 동시에 동보호구역, 보호물과 보호물의 보호구역 토지 사유자에게도 통지(通知)하게 되어 있어(법제12조) 이 보호 구역의 분할(分割) 측량(測量)과 구역 책정을 위해서 지적(地籍) 측량반(測量班)이 있다. 이반은 전국에 지정된 문화재(文化財)의 지번(地番)과 지목(地目) 등의 정

리와 변경되는 신고 사항을 기록 정리(整理)하며 구역의 설정(設定)에 필요한 지적(地籍) 대장을 비치하고 보호구역 내에 무단 점거 변경되는 사항을 처리(處理)하며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직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法第38조 3項) 필요한 측량(測量)과 발굴 조사 측량 보고서(報告書)의 재료 기타 필요한 지역(地域)의 측량을 수행하고, 국유 지정 문화재의 재산 기록 사항(事項)을 담당한다. 전국에 산재한 많은 사적중(史蹟中) 현재는 성곽의 보호 구역 측량(測量)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바 단지 1인의 측량사와 보조인(補助人) 1인이 이를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8) 매장문화재반(埋藏文化財班)

(1)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 발굴(發掘) 허가(許可)에 관(關)한 사항(事項)

(2)발견(發見)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 신고(申告) 접수처리(接受處理) 사항(事項)

매장(埋葬) 문화재(文化財)란 땅속에 묻혀 있거나 물건(物件)에 포장된 문화재(文化財)로서 새로이 발견(發見)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문화재(文化財)를 발견(發見)했을 때에는 그 토지(土地) 또는 물건(物件)의 소유자(所有者) 관리자(管理者) 점유자(占有者)는 그 현장(現場)을 변경(變更)함이 없이 발견(發見)의 일시(日時) 장소(場所) 발견(發見) 문화재(文化財)의 종별(種別) 명칭(名稱) 수량(數量) 재료(材料) 구조(構造) 형식(形式) 크기 사진(寫眞) 유래(由來) 전설(傳說) 기타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지체 없이 신고(申告)하여야 하며 (法第42條, 시행령제(施行令第)20條) 연구(研究)의 목적(目的)으로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認定)되는 토지(土地)를 발굴(發掘)하고자 하는 때나 또는 토목공사(土木工事) 기타 연구(研究)외의 목적(目的)으로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지역(地域)을 발굴(發掘)하고자 할 때에는 발굴(發掘)하고자 하는 토지(土地)의 지번(地番)과 지목(地目)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의 주소(住所) 성명(姓名) 발굴(發掘) 또는 현장(現場) 변경(變更) 사유(事由) 이에 관(關)한 설계서(設計書) 지방서(地方書) 및 설계도(設計圖)공사 착공의 상정일과 종료일 소요(所要) 경비(經費) 및 부담자의 주소(住所) 성명(姓名) 유래(由來)또는 전설(傳說) 토지(土地) 소유자(所有者) 또는 기타 권리자(權利者)의 승낙서(承諾書) 기타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신청(申請)하고 허가(許可)를 받아야 한다. (法第43條 및 시행령제(施行令第)21條) 이때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허가(許可)함에 있어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의 지시(指示)나 필요(必要)한 경우(境遇)에 발굴(發掘)의 중지(中止) 또는 정지(停止)를 명(命)하거나 허가(許可)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발굴(發掘)에 있어서 매장문화재가 발견(發見)될 시에는 그 종별(種別) 명칭(名稱) 수량(數量) 재료(材料) 구조(構造) 형식(形式) 크기 유래(由來) 전설(傳說)등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갖추어 신고(申告)하며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의 현장(現場)을 변경(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같이 신고(申告)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法第43條 및 시행령제(施行令第)21條)

그러나 국가(國家)가 매장문화재를 발굴(發掘)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은 그 토지(土地)를 발굴(發掘)할 수 있으며 (法第44條 1項) 그 토지(土地) 소유자(所有者)나 점유자(占有者)에게 발굴(發掘)의 목적(目的) 방법(方法) 착수시기 기타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기재(記載)하여 착수 이주일 내에 통지(通知)하여야 하

고 (法第44條2項 시행령제(施行令第)22條) 그 통지(通知)를 받은 소유자(所有者)나 점유자(占有者)는 이 발굴(發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法第44條 3項)

그러나 발굴(發掘)로 인하여 생기는 개인(個人)의 손실(損失)은 국가(國家)가 보상(報償)하고 (法第27條) 이 발굴(發掘) 조사원은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의 증표를 소지하여 관계자(關係者)의 요구(要求)가 있을 시에는 이를 제시(提示) 하여야 한다. (法第40條)

또한 문화공보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매장문화재의 발견(發見) 신고(申告)가 있거나 발굴(發掘)에 의하여 문화재(文化財)가 발견(發見)된 때에는 그 문화재(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가 있을 시에는 발견자(發見者) 또는 발굴자로 하여금 이 문화재(文化財)를 소유자(所有者)에게 반환(返還)하게 하고 (法第45條) 이 경우에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國家)가 발굴(發掘)한 경우에는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이 이를 그 소유자(所有者)에게 반환(返還)하는 것이다. (法第45條 1項2號) 그러나 대부분(大部分)의 매장문화재는 소유자(所有者)가 없는 경우가 많은 바 매장문화재는 민법(民法) 第255條에 명시(明示)된 바와 같이 무주물(無主物), 유실물(遺失物), 매장물(埋藏物)과 달리 그 점유자(占有者), 습득자(拾得者), 발견자(發見者)는 법률(法律)의 정(定)하는 바(유실물법제(遺失物法第)1項 第2項 및 동법시행령(同法施行令) 第3條)에 의하여 신고(申告)한 후(後)1년이내(年以內)에 소유자(所有者)가 판명(判明)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所有權)을 취득(取得)하지 못하고 모두 국유(國有)로 하며 이때의 발견자(發見者) 습득자(拾得者) 및 매장물이 발견(發見)된 토지(土地) 기타 물건(物件)의 소유자(所有者)는 국가(國家)에 대하여 보상(報償)을 청구(請求)하고 국고(國庫)는 매장물(埋藏物)을 발견(發見)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發見)된 토지(土地)의 소유자(所有者)에게 통지(通知)하여 그 가격(價格)에 상당한 금액(金額)을 반분(半分)하여 각자(各者)에게 지급(支給)하여야 한다. 또 매장물을 발견(發見)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發見)된 토지(土地)의 소유자(所有者)가 같은 때에는 그 전액(全額)을 지급(支給)하고 여기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6月 이내(以內)에 민사소송(民事訴訟)을 제기(提起)할 수 있는 유실물법(遺失物法) 第13條의 규정(規定)을 준용하고 타인(他人)이 유실(遺失)한 물건(物件)을 습득(拾得)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所有者)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請求權)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제출(提出)하는 유실물법(遺失物法) 第1條 1項의 규정(規定)에 불구하고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은 관할경찰서장(管轄警察署長)에게 매장문화재의 발견(發見) 신고(申告)나 발굴(發掘)로 매장문화재가 발견(發見)된 사항(事項)을 통지(通知)하며 (法第45條 1項)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당해(當該) 문화재에 대하여 반환을 받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을 받을 자가 불명확(不明確)할 때에는 일정(一定)한 서식(書式)에 의하여 통지(通知) 받은 날로부터 당해(當該) 경찰서의 게시판에 일정(一定) 기간(其間)(14日) 공고(公告)한다. (유실물법(遺失物法) 시행령제(施行令第)3條)

또한 경찰서장등이 매장문화재의 처리(處理)하는 방법(方法)은 유실물(遺失物)에 의하여 매장물 또는 유실물(遺失物)로서 경찰서에 제출(提出)된 물건(物件)이 문화재(文化財)로 인정(認定)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유실물법(遺失物法)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이를 공고(公告)함과 동시에 즉시 그 사실을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에게 보고(報告)하고 소유자(所有者)가 없을 때는 그 물건(物件)을 20日 이내에 제출(提出)한다. 이 때 문화재(文化財)로 인정(認定)되는 매장물(埋藏物) 또는 유실물(遺失物)의 종류(種

類) 명칭(名稱) 수량(數量) 습득(拾得) 또는 발견(發見) 연월일(年月日) 장소(場所) 습득(拾得) 또는 발견자(發見者)의 주소(住所), 성명(姓名) 그 경위, 경찰에 제출된 연월일(年月日), 문화재(文化財)로 인정(認定)되는 사유(事由)와 그 현장(現場) 보관(保管) 사항(事項) 습득(拾得) 또는 발견(發見)된 장소(場所)의 유래(由來) 전설(傳說) 기타 사항(事項)과 그 토지(土地) 기타 물체(物體)의 소유자(所有者) 또는 점유자(占有者)의 주소(住所) 성명(姓名) 습득(拾得) 또는 발견(發見)된 장소(場所)가 유적(遺蹟)으로 인정(認定)되는 경우에는 그 상황과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 사진(寫眞), 도면(圖面) 기타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갖추어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에게 보고(報告)한다.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은 이를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 감정제시(鑑定提示)하여 그 물건(物件)이 문화재(文化財)로 인정(認定)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趣旨)를 경찰서장에 통지(通知)하고 문화재(文化財)의 가치(價値)가 없을 시에는 그 취지(趣旨)를 부쳐서 당해(當該) 경찰서장에게 반환한다. (法第46條第2項) 여기서 매장문화재일 경우에 유실물법(遺失物法)에 의하여 보증금(保證金)을 지급(支給)하는 것은 먼저 설명(說明)했지만 문화재(文化財)를 발견(發見)함에 경비(經費)를 지출(支出)한자가 있을 시는 그 경비(經費)에 상당한 금액(金額)을 보상금(補償金)중에서 경비부담자(經費負擔者)에게 분배(分配)하고 그 잔액(殘額)을 발견자(發見者), 토지(土地) 소유자(所有者)에게 균배(均排)하며 국고(國庫)에 귀속(歸屬)된 문화재(文化財)가 국가(國家)에서 직접 보존(保存)할 필요(必要)가 없다고 인정(認定)되는 경우에는 당해(當該) 문화재(文化財)의 발견자(發見者) 또는 습득자(拾得者)나 그 문화재(文化財)가 발견(發見)된 토지(土地)의 소유자(所有者)에게 그들이 지급(支給)받을 보상금(補償金)에 대신하여 그 보상금(補償金)에 상당한 범위내에서 이를 양여(讓與)할 수 있는 것이다. (法第47條) 그리고 매장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규정(規定)되지 않은 사항(事項)은 유실물법(遺失物法)을 적용(適用)하고 있다.

9) 무형문화재반(無形文化財班)

(1)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지정해제(指定解除)를 위한 조사(調查)

(2)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보호육성(保護育成) 진흥활용(振興活用) 기타에 관한 사항(事項)을 담당(擔當)하고 있다. 여기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대상(對象)이란 연극(演劇)에서 인형극(人形劇) 가면극(假面劇)과 음악(音樂)의 제례악(祭禮樂) 연례악(宴禮樂) 대취타(大吹打) 가곡(歌曲) 시조(時調) 창악(唱樂) 산조 농악(農樂) 아악(雅樂) 민요(民謠) 양악범패(兩樂梵唄)와 무속(巫俗)의 예식무(禮式舞) 정재무(呈才舞) 탈춤 바라춤 승무(僧舞) 그리고 공예기술(工藝技術)로서 도자공예(陶磁工藝) 마미공예 금속공예(金屬工藝) 화각공예(工藝) 장신공예 나전공예 제지공예(製紙工藝) 목공예(木工藝) 건축공예(建築工藝) 피혁공예(皮革工藝) 지물공예(紙物工藝) 직물공예(織物工藝) 염색공예(染色工藝) 옥석공예 자수공예 복장공예(服裝工藝) 악기공예(樂器工藝) 초고공예를 말한다. 이들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중요(重要)한 것은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第二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의 자문(諮問)을 받아 지정(指定)함에 (法第8條)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의 조사(調查) 계획(計劃)을 가입(加入) 지정(指定)의 고시(告示) 해제(解題) 가지정(假指定)등의 절차업무(節次業務)와 기능보유자의 실태파악(實態把握)에 대한 보고(報告)를 받으며 (法第38條) 시행(試行)한다. 그리고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보호

(保護) 육성(育成) 진흥(振興) 활용(活用)을 위하여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녹음(錄音) 촬영을 하거나 악보(樂譜) 대본(臺本)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승인(承認)하는 사항(事項)의 허가(許可)와 이 허가된 사항(事項)의 변경사항(變更事項) (法第20條 1項) 그리고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의 허가(許可) 사항(事項)에 대한 지시(指示)나 조건 기타의 사항(事項)을 (法第20條 3項) 처리(處理)하고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보유자(保有者)의 성명(姓名)이나 주소(住所)의 변동사항(變動事項)에 대한 신고(申告)와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녹음(錄音) 촬영(撮影) 악보(樂譜) 대본(臺本)등의 제작(製作)에 대한 허가(許可)의 이행신고 (法第24條 1項)를 접수(接手) 처리(處理)하며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보호육성에 필요(必要)한 경비(經費)의 보조와 (法第26條)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연1회(年一回) 공개(公開)하여야 하는 의무(義務)의 이행(履行)(法第33條) 그 공개(公開) 비용(費用)에 대한 보조 및 (法第34條)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이 지시(指示)한 행정명령(行政命令)에 의한 급여금(給與金)과 보상금(補償金)의 처리(處理)와 (法第35條)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공개(公開)의 관람료(觀覽料) 징수(徵收)의 인가사항(認可事項)을 처리(處理)하고 보존(保存)을 위한 전수(傳授) 교육계획(教育計劃)과 시행(施行) 그리고 보존단체에 대한 참여(參與)를 예시(例示)하고 60세(歲) 이상의 기능보유자(機能保有者)에게는 月5,000원의 생계비(生計費)를 보조(補助)하고 질병(疾病)으로 고생(苦生)할 때에는 30,000원 이내(以內)의 치료비(治療費)를 지급(支給)하고 있다.

10) 민속자료반(民俗資料班)

(1) 중요(重要) 민속자료(民俗資料)의 지정해제조사(指定解除調査)

(2) 민속자료(民俗資料)의 보호관리(保護管理) 활용(活用) 선전(宣傳)과 기타사항(其他事項)

(3) 민속관(民俗館) 진열품(陳列品) 심의회(審議會) 운영(運營)으로 분담(分擔)하고 있다. 이 민속자료(民俗資料)의 대상(對象)으로 의식주(衣食住)에 관(關)한 것으로 궁중(宮中) 귀족(貴族) 서민(庶民) 농어민(農漁民) 천인(賤人)등의 의복(衣服) 장신구(裝身具) 가구(家具) 주거(住居)등의 자료(資料)와 생산(生産) 생업(生業)에 관한 농기구(農器具) 어렵구(漁獵具) 공장용구(工場用具) 방직용구(紡織用具) 작업장(作業場)등과 교통(交通) 운수(運輸) 통신(通信)에 관한 운반용단차(運搬用丹車) 청사등과 교역(交易)에 관한 계산구 계량구 간판 점포 감찰 등과 신앙(信仰)에 관한 제기구 법증구(法僧具)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등(祠宇等)과 민속지식에 관한 역류(歷類) 복점용구(卜占用具) 의료구(醫療具) 교육시설등과 민속예능(民俗藝能) 오락 회곡에 관한 의상도구 악기(樂記) 가면(假面) 인형(人形) 완구 무대등이 그것이다.

이를 조사(調査)하여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第二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에서 지정(指定)하는 자료(資料)의 조사(調査)를 (法第10條) 위한 전국(全國)의 민속(民俗) 종합조사(綜合調査)를 실시(實施)하여 모집보호(募集保護)하고 신고서를 작성(作成)하여 중요(重要) 민속자료(民俗資料)의 보호관리(保護管理)는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의 보호관리(保護管理) 사무(事務)와 같은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의 제시사항(提示事項) 소유자(所有者) 관리자(管理者)의 의무(義務) 관리자(管理者) 관리단체(管理團體)의 지정(指定) 허가사항(許可事項) 행정명령(行政命令) 의도제한 신고사항(申告事項) 육성

보존(育成保存)을 위한 보조금(補助金)을 처리(處理)한다. 그리고 공개(公開)의 사항(事項)이나 손실보상(損失補償)이 발생했거나 국고(國庫) 귀속(歸屬)되거나 구입(購入)하는 민속자료(民俗資料)의 가격(價格)과 감정(鑑定)등의 심의(審議)를 공정(公正)히 처리(處理)하기 위하여 민속관(民俗館) 진열품(陳列品) 심의회(審議會)를 구성(構成)하고 이 소위원회(小委員會)의 자문(諮問)을 얻어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은 민속품을 구입하여 민속관의 진열품을 검토 선정(選定)하는 것이다.

11) 명승(名僧), 천연기념물반(天然記念物班)

- (1)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의 지정해제조사(指定解除調査)
- (2)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의 보호관리(保護管理)
- (3) 명승(名勝)의 지정(指定)과 보호관리(保護管理)
- (4) 천연(天然) 보호구역(保護區域)의 지정(指定)과 보호관리(保護管理)
- (5) 명승(名勝)과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및 천연(天然) 보호구역(保護區域)의 활용선전(活用宣傳)의 사항(事項)을 분담(分擔)하고 있다. 이 명승(名勝) 및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과 천연보호구역(天然保護區域)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명승(名勝)이라 함은 저명(著名)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景勝地) 또는 원지(苑地)와 화수(花樹) 화분(花奔) 단풍(丹楓) 또는 조수(鳥獸) 어류(魚類)의 서식지와 저명(著名)한 협곡(峽谷) 해협과 곳 급류 심연 폭포 초소 동굴과 저명한 해안(海岸) 하안(河岸) 도서(島嶼) 기타 경승지 및 이름있는 풍경의 전망지점 그리고 특색있는 산악 구릉 고원 하천 화산 온천지 냉광천지를 말하고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이라함은 동식물에 있어서는 한국특유(韓國特有)의 동식물(動植物)로서 저명한것과 그 서식지 생장지(生長地)와 석회암지대 사구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호소 폭포의 소온천(沼溫泉) 하구(河口) 도서등 특류지역 또는 특수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장하는 특유(特有)한 동식물(動植物) 또는 동식물군(動植物群) 및 그 서식지 생산지 또는 도래지와 진귀한 동식물(動植物)로서 그 보존(保存)이 필요(必要)한 동식물과 그 서식지 생산지(生産地)와 한국특유(韓國特有)의 축양동물(畜養動物) 학술상(學術上) 가치(價値) 있는 사총(寺叢) 명목(名木) 거수(巨樹) 기형목(畸形木)과 원시림(原始林)이나 고산식물지대(高山植物地帶)의 대표적(代表的)인 것 또는 진귀(珍貴)한 삼림상(森林上) 진귀한 식물(植物)의 자생지(自生地) 이름있는 동식물(動植物)의 분포(分布)의 경계(境界)가 되는곳 유용동식물(有用動植物)의 원산지(原產地) 진귀한 동식물(動植物)의 유물발견지(遺物發見地) 또는 학술상 특(特)히 귀중(貴重)한 표본(標本)과 화석(化石)을 말한다.

그리고 지질광물(地質鑛物)이란 암석(巖石) 또는 광물의 성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代表的)인 것이나 거대한 석회석 굴 용암동굴 해식동굴등의 이름있는 동굴 특이한 구조로 되어있는 암석(巖石) 또는 저명한 지형(地形) 지진단(地震斷) 또는 지괴운동(地塊運動)에 관한 현상이나 학술상 특히 귀중한 표본 온천 및 냉광천을 말하고 천연보존구역(天然保存區域)은 보존(保存)할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이 집중적(集中的)으로 분포(分布)되어 있는 대표적(代表的)인 일정(一定)한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해제를 위한 조사(調査)는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第二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및 동전문위원(同專門委員)과 담당직원이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調査)하고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은 이들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第3분과위원

회(分科委員會)에 부의하여 자문을 얻어 지정한다. (法第9條)

여기서 법상 사적(史蹟)을 기념물로 규정(規定)하고 있으나 이는 유형(有形)의 건조물(建造物)이나 석조물 기타 토목(土木)의 관계(關係)가 있어 건조물의 분과(分科)로 그 소관을 이관하고 있다. (法第5條3項)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의 보호관리(保護管理)란 식물(植物)이나 동물(動物)에 있어서는 그 생태(生態)를 연구(研究)하고 방충 구제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명승이나 천연보호구역(天然保護區域)의 지정조사(指定調査)에 있어서는 식물 동물 지질학의 제조사 보고서(報告書)가 나오기 분포사항 지적측량으로 필지의 분할(分割) 구성(區域) 확정(確定) 지목(地目)등의 정리(整理)가 병행하고 기록사진(記錄寫眞) 촬영경관의 조경학적 보고서(報告書)까지가 완결(完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自然)의 보호이며 인위적 파괴를 막고 동식물의 서식과 동굴 기타 광물에 있어서는 활용으로 과학적 시설물의 보존을 위한 설치와 인공적 조화등도 관광(觀光)의 재료(材料)로 원형(原型)을 보존하면서 활용(活用)하는 방법(方法)을 강구한다.

12) 민 속 관(民 俗 館)

민속자료반(民俗資料班)의 행정업무(行政業務)를 설명(說明)하였거나 이 민속자료(民俗資料)를 전문적(專門的)으로 조사(調査) 연구(研究) 전시(展示)하는 기관으로 민속관(民俗館)을 따로 설치(設置)하였다. 현재 민속자료(民俗資料)의 수집수량(蒐集數量)은(복식 489점, 음식 358점, 주거 389점, 생산101점, 신앙140점 예능 오락 109점 기타 171점) 그중 750점을 전시(展示)하고 있는데 명칭(名稱)을 한국민속관(韓國民俗官)이라 하고 우리의 생활상(生活相)을 추정(推定)하는 민속품(民俗品)을 전시(展示)하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第2분과(分科)의 상임전문위원(常任專門委員)을 두고 학술적(學術的) 연구(研究)를 담당(擔當)케 하며 다른 나라와의 민속학에 대한 교류(交流)와 민속(民俗) 종합조사(綜合調査)의 재료(材料)를 정리(整理) 보관(保管)하며 기타 특별(特別) 전시회(展示會)를 열고 있다. 69년에는 공예품(工藝品) 특별(特別) 전시회(展示會)를 열고 우리의 공예품(工藝品)이 다른나라의 수출시장(輸出市場)에 까지 진출(進出) 할 수 있는 가능성(可能性)의 재료(材料)를 산업부문(產業部門)에 제시(提示)하는 효과(效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례궁내(敬禮宮內)의 수정전에 개관하고 있으나 이를 경복궁(景福宮) 자경전에 옮겨 확장(擴張)할 계획(計劃)이며 우리나라의 유일(唯一)한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인 이 민속관(民俗館)의 기능(機能)을 확대(擴大) 강화(強化)할 것이다.

13) 연 구 실(研 究 室)

이 연구실(研究室)은 문화재(文化財)의 과학적(科學的) 보존(保存)의 주기검사(週期檢査)를 실시하고 문화재(文化財)의 연구자료(研究資料)를 정리(整理) 보관(保管)하여 연구사업(研究事業)을 총괄(總括)하고 필요(必要)한 발굴사업(發掘事業)을 시행(施行)하며 문화재(文化財)의 지정(指定) 비지정(非指定)의 카드를 정리(整理) 기록(記錄) 배치(配置)하며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에 상정(上程)되는 자문서류의 검토(檢討)와 지정신청 요구(要求)의 문화재(文化財)를 현지(現地) 답사하고 가치(價値)있는 것에 대하여 문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들의 연구검토(研究檢討)를 거쳐 지정(指定)하는 보고서(報告書)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 현재(現在) 연구실(研究室)의 기능(機能)은 목조물(木造物) 석조물(石造物) 고고역사자료(考古歷史資料) 지(紙), 직물(織物), 금속(金屬), 자기(磁器), 회화(繪畫)의 미술품류(美術品類) 발굴기술(發掘技術) 부분(部分) 요업(窯業) 화학(化學) 물리적(物理的) 생물학적(生物學的) 관리(管理) 방법(方法)을 연구(研究) 검토(檢討)하는 기능(機能)의 확대(擴大) 작업(作業)을 계획(計劃)하고 있다.

14) 전문위원실(專門委員室)

문화재(文化財)는 행정가(行家)와 전문가(專門家)가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화재위원회규정(文化財委員會規定)에 의(依)하여 사계(史界)의 전문가(專門家) 중에서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이 전문위원(專門委員)을 위촉(委囑)하고 전문위원(專門委員)도 소속분과(所屬分科) 위원장(委員長)의 명(命)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事項)의 자료수집(資料蒐集) 조사연구(調查研究)와 계획(計劃)을 입안(立案)하며 위원회(委員會)에 출석(出席)하여 발언(發言)할 수 있는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규정제(規定第)9條) 이러한 전문위원(專門委員) 중에서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은 상근(常勤)이 필요(必要)한 경우에 상임전문위원(常任專門委員)을 위촉(委囑)하여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에 전문부분(專門部分)을 담당케하고 있다. 현재(現在) 문화재해외유출방지(文化財海外流出)를 방지(防止)하기 위하여 전문위원(專門委員)들 내외국인(內外國人)의 출입구(出入口)인 공항과 항만에 배치(配置) 하여 문화재(文化財)의 감정(鑑定)을 담당(擔當)하며 세관업무(稅關業務)에 보조기능(補助機能)을 수행(遂行)하고 수리(修理) 기타(其他) 조사(調查)에 감독관(監督官) 지도위원(指導委員)등으로 일하게 한다. 이 전문위원실(專門委員室)의 업무(業務)는 미술사(美術史)의 조사연구사업(調查研究事業) 수리보고서(修理報告書)의 작성(作成) 보수공사(補修工事)의 감독(監督) 문화재(文化財)의 실측(實測) 설계(設計) 카드기록(記錄)을 담당(擔當)하고 있다.

15) 서무반(庶務班)

- (1) 이의신청(異議申請) 사항(事項)
- (2) 표창관계(表彰關係)
- (3) 벌칙관계(罰則關係)
- (4) 문화재(文化財)의 양도(讓渡) 대부(貸付) 및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 관리(管理)
- (5) 예산편성(豫算編成), 심사분석(審査分析), 통계(統計)
- (6) 문화재(文化財) 행사(行使)
- (7) 국제기구(國際機構)에 관(關)한 사항(事項)
- (8) 비상사태하(非常事態下)의 문화재(文化財) 처리(處理)
- (9) 서울 오대궁(五大宮)릉(陵)원(園)묘(墓)의 관리(管理)
- (10) 물품관리(物品管理)
- (11) 보고서(報告書) 기타(其他) 일반서무(一般庶務)에 관(關)한 사항(事項)을 분담(分擔)하였다.

이를 설명하면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이나 그 권한(權限)의 위임(委任)을

받은 자가 행(行)하는 관리단체(管理團體)의 지정(指定),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나 불허(不許) 또는 문공부장관(文公部長官)이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의 보호상(保護上)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한 행정명령(行政命令)에 불복(不伏)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할 수 있는바 처분(處分)의 대상자와 처리통지(處理通知)를 받은 자(者)는 처분이 있는 날, 또는 처분(處分)의 통지(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以內)에 기타의 자는 처분(處分)이 있는 날로부터 60日 이내(以內)에 이를 행(行)하여야 한다.

이를 접수(接受)한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은 수리(修理)한 날로부터 30日 이내(以內)에 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法第56條)

그리고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은 문화재(文化財)에 관(關)한 공로자(功勞者)의 표창(表彰)에 있어서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를 발견신고(發見申告)하여 국보(國寶) 또는 보물(寶物)로서 지정(指定)받게한 자(者)는 수시로 표창(表彰)하고 문화재(文化財)의 관리(管理)의 책임(責任)이 없는 자(者)로서 노력(勞力)이나 재력(材力)을 희생(犧牲)하여 지정(指定) 또는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의 멸실(滅失) 도난(盜難) 파손(破損)을 방지(防止)한 사람이나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保有者) 이외(以外)의 사람이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保護) 육성(育成)에 노력(勞力)이나 재원(財源)을 희생(犧牲)하여 공적(功績)이 현저한 사람 그리고 지정(指定) 또는 가지정(假指定) 문화재(文化財)의 관리(管理) 보호(保護) 및 공개(公開)의 책임과 의무(義務)에 충실(忠實)하여 타(他)의 모범(模範)이 된 사람은 정기(定期)로 이를 표창(表彰)하고 부상(副賞)을 줄수 있으며 이 정기표창(定期表彰)의 경우에는 시장(市長)이나 지사(知事)가 증빙서류(證憑書類)를 갖추어 추천할 수 있다. (法第57條 및 시행령(施行令) 第27條)

그리고 문화재를 무허가로 수출(輸出)하거나 지정문화재(文化財)를 음야 손상(損傷)하거나 사적지(史蹟地)에 일수(溢水)하거나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이 시달(施達)하는 행정명령(行政命令)에 위배(圍排)하거나 공무원(公務員)의 직무수행(職務遂行)을 거절(拒絶), 기피(忌避), 방해(妨害)하거나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의 허가(許可)없이 행(行)하는 행위(行爲)들을 처벌(處罰)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文化財)의 범법자(犯法者)는 가중처벌(加重處罰)을 할 수 있고 연대책임(連帶責任) 및 개별(個別) 처벌(處罰)을 병행(竝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벌칙(罰則) 규정(規定)의 설명(說明)은 현재 개정중의 사항이기 때문에 약술(略述)한다.

그리고 사유(私有)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바 소유자(所有者)가 매도(賣渡)하고자 할 때 국가(國家)나 박물관(博物館)이 이의 매수(買收)를 원한다면 그에게 우선적(優先的)으로 매도(賣渡)하여야 하는 것이다. (法第23條) 국유(國有)에 속하는 지정(指定) 가지정(假指定) 문화재(文化財)는 원칙적(原則的)으로 양도(讓渡)하거나 사권(私權)을 인정(認定)하지 못한다. 단 관리보존(管理保存)에 지장없는 한계내(限界內)에서 공공용(公共用) 공용(公用) 또는 공익사업(公益事業)에 사용(使用)하기 위해서는 필요(必要)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단체(公共團體)나 공익단체(公益團體)에 일정(一定)한 조건(條件)을 부쳐 그 사용(使用)을 허가(許可)하고 있다. (法第54條)

다음은 국유(國有)에 속(屬)하는 문화재(文化財)는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 (第8條)에 명시된 국유재산(國有財産)은 관리(管理)와 처분(處分)의 적정(適定)을 기하고 그제도를 정비하고 그 사무(事務)의 통일(統一)과 현황(現況)을 명료히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총괄(總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이 문화재(文化財)는 관리(管理) 총괄(總括)하게 되어있다. 다만 국유(國有)의 문화재(文化財)가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 이외(以外)의 자가 관리(管理)하고 있는 행정재산(行政財産)이나 또는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 이외(以外)의 자가 관리(管理)할 필요(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이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第9條)에 명시(明示)된 행정재산(行政財産)은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에 의하여 설치(設置)된 행정기관(行政機關)의 장(長), 국회의장(國會議長)과 대법원장(大法院長) 기타(其他) 법률(法律)에 의하여 설치(設置)되는 이에 준(準)하는 중앙기관(中央機關)의 장(長)이 그 소관(所管)에 관(關)한 재산(財産)을 관리(管理)하는 관계기관(關係機關)의 장(長)과 재무부장관(財務部長官)과 협의(協議)하여 그 관리청(管理廳)을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境遇)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은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의견(意見)을 들어야 한다. (法第50條) 그리고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의 상이(相異)한 회계간(會計間)의 이관(移管)은 무상(無償)으로 하는 바 문화재(文化財)를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이 관리(管理)하기 위하여 소속(所屬)을 달리하는 회계간(會計間)의 관리환(管理換) 보관환(保管換)을 할 때에는 국유재산(國有財産)을 관리환(管理換) 또는 동일관청(同一官廳)에 속(屬)하는 보관청(保管廳)간의 이관(移管)에 있어서 그 소속회계(所屬會計)가 다른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하고 국유재산(國有財産)의 사용(使用)을 승인(承認)할 때에도 같으며 직접 도로나 하천(河川) 항만(港灣) 수로(水路) 기타(其他) 공공용(公共用)에 사용(使用)할 때의 예외(例外)로 하는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 第14條의 규정(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무상(無償)으로 정리(整理)할 수 있다. 국유(國有)의 문화재(文化財)를 지정(指定) 해제(解除)하는 절차(節次)에 있어서도 소유자(所有者), 점유자(占有者)에 대하여 행(行)하는 통지(通知)도 관리청(管理廳)에 하여야 하며 (法第52條) 이 경우(境遇)의 관리청(管理廳)은 문화재보호법제(文化財保護法第)20條의 장관의 허가사항외(許可事項外)에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의 관리(管理)에 속(屬)하는 지정(指定) 또는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를 대부(貸付), 교환(交換) 기타(其他) 처분(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의 동의(同義)를 얻어야 하고 또한 관리청(管理廳)이 문화재보호법상(文化財保護法上)의 신고사항(申告事項) (第24條)외의 지정(指定) 또는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를 취득(取得)하였을 때나 이관(移管)을 받았거나 그 보관청(保管廳)을 변경(變更)했을 때에는 보고(報告)하여야 하는 사항(事項)을 (法第53條) 처리(處理)한다. 예산편성(豫算編成)의 자료수집(資料蒐集)과 심사분석(審査分析) 통계일람표작성(統計一覽表作成)을 위해서 기타반(其他班)의 자료제출(資料提出)과 확인검사(確認檢査)를 실시하고 문화재애호기간(文化財愛護期間)의 행사(行事)를 처리(處理)하며 세계문화재복구(世界文化財復舊)센터와 유엔의 자연자원보호위원회(自然資源保護委員會)와의 국제기구관계(國際機構關係) 그리고 국립공원(國立公園) 기타(其他) 도시계획위원회(都市計劃委員會)등과 같은 문화재보호관계(文化財保護關係)의 협의회(協議會)와 협의사항(協議蛇黃)과 전란(戰亂)에 대비(對備)한 문화재(文化財) 보관(保管) 보존(保存)의 방법(方法)을 강구(講究)하는 작업(作業)을 계획하여 지시(指示)하고 서울5대궁(大弓)의 궁원관리(宮院管理) 사항(事項)을 체크하며 과의 물품관리법상(物品管理法上)의 사항(事項)과 일반문서(一般文書)에 관(關)한 접수(接收) 발송(發送) 정리(整理) 보관(保管)의 사항(事項)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의 사항(事項)은 국유재산관리(國有財産管理)를 분장(分掌)하는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관리과(管理課)가 수행(遂行)하는 것이 타당(妥當)할 사항(事項)이기 때문에 이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과(課)의 업무분담(業務分擔)에 법적근거(法的根據)로 설명(說明)함은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행정(行政)을 담당(擔當)하고 있는 일선직원(一線職員)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이다.

좀더 예시(例示)의 문서(文書)를 들어 세세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해설(解說)을 할 기회가 다음에 있을 것으로 미루어 가장 단편적(斷片的)인 설명(說明)과 업무(業務)의 기능분담(機能分擔)을 약술하였다.

三. 현황(現況)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改善) 방안(方案)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행정(行政)의 실무(實務)를 담당(擔當)하고 그간에 느끼고 경험(經驗)한 문제(問題)들을 들어내어 다음과 같이 개선(改善)의 방안(方案)을 모색(摸索)해 본다.

1.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직원(職員)의 빈번(頻繁)한 인사이동(人事移動)

앞에서 지적(指摘)하였듯이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이란 아무리 훌륭한 법(法)과 재원(財源)과 조직(組織)과 방법론(方法論)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행정(行政)을 담당(擔當)한 행정가(行政家)가 그것을 잘 받아 실천(實踐)하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效果)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화재(文化財)관리(管理) 행정(行政)을 담당(擔當)할수 있는 사람이란 일반(一般) 행정인(行政人)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전문 분야의 이해(理解)와 상식(常識) 현황(現況)의 파악(把握)과 계획(計劃)안 실천(實踐)의 방안(方案)과 개선(改善)의 문제점(問題點)을 적시적지(適時敵地)에 이용(利用)하고 적용(適用)하는 능력(能力)이 필요(必要)하다. 문화재(文化財)의 관리(管理)란 병든 노인의 신체(身體)를 다루는 젊고 유능(有能)한 전문의사처럼 언제나 세심(細心)한 유의(有意)와 처방(處方)을 준비(準備)한 행정(行政)이 필요(必要)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보(國寶)나 보물(寶物)의 소유자(所有者), 관리자(管理者), 관리(管理團體)나 위치(位置), 현황(現況), 현상(現狀) 등을 한번도 파악(把握)하지 못한 사람이 일선관리(一線管理)를 맡아 온 일이 허다(許多)하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자연(自然)의 현상(現狀) 속에 멸실(滅失)되어 가는 귀중(貴重)한 민족(民族)의 유산(遺産)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이 현황(現況)을 파악(把握)하려면 일년(一年)은 족히 걸리는데 어쩌다 생소한 사람이 이 일을 맡아 전국(全國)의 문화재(文化財)를 열의 있게 파악(把握)하는 과정(科程)이라 하더라도 그간에 손실되는 문화재(文化財)가 없다고 누가 단정하며 이같이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행정(行政)에 공백(空白)을 주는 것이 가장 무서운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의 위기이다. 문화재(文化財)란 한번 돌아가신 아버지는 이 세상(世上)에 다시 뵈울수 없는 영별(靈別)의 인연(因緣)과 같이 한번 없어진다면 민족문화사(民族文化史)의 어디를 들추어 보아도 그것은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견해(見解)나 자신 없는 방안(方案)이 저지르는 결과(結果)는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다음에 오는 전문인(專門人)이 그것을 맡아 착실(着實)이나 할 것을 변형(變形)하고 그르치게 있게 되면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무지의 소산인가.

진정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란 사명감 없이도 안되고 경험(經驗)과 지식(知識) 없이도 안 되는 특수(特殊)한 행정(行政)인데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의 직원(職員)의 근무(勤務) 연한(年限)이나 빈번(頻繁)한 인사(人事) 이동(移動)은 다음 표(表)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인사행정(人事行政)이 얼마나 이러한 문제(問題)를 특별히 고려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여기만이 아니라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하는 모든 일선기관(一線機關)에 준용(準用)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區 別(구별) 職 級(직급)	人員數 (인원수)	勤 務 年 限(근무연한)						
		10年	5年	4年	3年	2年	1年	1年未滿
3 甲	1	-	-	-	-	-	1	-
3 乙	2	1	-	-	-	-	-	1
4 甲	7	1	2	-	1	2	1	-
4乙	6	-	1	-	-	1	-	4
其他 (5級, 機能職, 雇傭職) (기타(5급, 기능직, 고용직))	13	-	1	2	2	1	-	7
計(계)	29	2	4	2	3	4	2	12

이러한 문제(問題)의 해결(解決)을 위해서는 문화재(文化財) 보호직(保護職)의 직종(職種) 신설(新設)을 건의(建議)한다. 이 문화재(文化財) 보호직(保護職)이란 학예직(學藝職)과는 다른 것이다. 학예직(學藝職)이란 전문분야(專門分野)의 협소(狹小性) 때문에 문화재(文化財管理)의 행정(行政)을 수행(遂行)하는데는 적합(適合)하지 못하다. 문화재(文化財管理) 행정(行政)은 연구직(研究職)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문화재(文化財管理)에 있어서는 능력(能力)이 있는 자가 열의(熱意) 있게 3년이 경과하여야 문화재(文化財) 관리행정(管理行政)의 자기(自己)관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제문제(諸問題)가 인사(人事) 행정(行政)에 반영(反映)되어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를 담당(擔當)한 자의 장기(長期) 근무(勤務)를 보장(保障)하고 조장(助長)시켜서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에 공백(空白)이 생기지 않게 하고 민족(民族) 문화(文化) 유산(遺産)의 관리(管理)에 대한 특별(特別)한 보장(保障)을 고려하는 중이다.

2.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보강(補強)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은 현실적(現實的)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문화재(文化財)의 수출(輸出)을 금지(禁止)하는 문제(問題)이다. 현재(現在)의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문화재(文化財)의 수출(輸出)을 명시(明示)하고 있으나 한번도 문화재(文化財) 수출(輸出)을 허가(許可)한 일이 없다. 이것은 문화재(文化財)가 일상의 생산품(生産品)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商品)이 아니며 상품(商品)이 아닌 물건이 수출(輸出)될 수 없고 어느 민족(民族)이나 자기 고유(固有) 문화유산(文化遺産)을 팔아서 외화(外貨)의 획득(獲得)을 하는 예(例)는 없다. 그러기에 중국(中國)이나 기타(其他)

국가(國家)는 이 문화재(文化財) 수출(輸出)을 법(法)으로 일체금지(一體禁止)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민족유산(民族遺産)을 해외(海外)로 빼돌려 외자획득(外資獲得)을 한다로 내세우는 상인배(商人輩)를 본다. 민족유산(民族遺産)은 한가지 밖에 없는 것이기에 A의 순청자의 화병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면 이와 똑같은 종류(種類)는 하나도 없다고 알면 옳다. 그러기에 문화재(文化財)는 상품(商品)일 수 없고 우리 민족(民族)의 혼(魂)의 고향 같은 문화재(文化財)를 수출(輸出)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오늘 우리가 가난하여 이러한 보배를 팔고 내일 부유(富裕)한 국가가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사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둘째는 문화재(文化財)를 판매업(販賣業)으로 하는 골동품상(商)의 등록제(登錄制)이다. 우리는 외국인(外國人)이나 국내인(國內人)이 공항(空港)이나 출입국(出入國) 관리소에서 문화재(文化財)의 반출(搬出) 도중에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을 몰랐거나 또는 범법(犯法)했거나 간에 불미한 일들을 본다. 국내에서 거래(去來)되는 문화재(文化財)가 어찌서 국외(國外)에 나가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항의(抗議)하고 또한 해외(海外) 반출(搬出)의 허가(許可)를 요청(要請)해도 불허(不許)됨으로 선의의 피해(被害)를 입는 경우도 있다. 또한 문화재(文化財)가 현실(現實)의 생산품(生產品)이 아닌 이상 그것의 출처(出處)는 도굴(盜掘)이나 도난(盜難)의 경우도 많다. 이러한 도굴(盜掘)이나 도난품(盜難品)의 시장(市場)이 어디냐고 한다면 이러한 골동품상(骨董品商)일수도 있는 것이다. 이 골동품상의 문화재보호법상(文化財保護法上) 등록제(登錄制)를 실시하고 문화재(文化財) 관리청(管理廳)인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장관(長官)이 이를 여장하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면 외국인(外國人)에 거래(去來)할 수 있는 문화재(文化財)의 감정(鑑定)을 실시(實施)하여 등록(登錄)하고 그 한계(限界)를 지어서 외국인(外國人)이 사서 반출(搬出)될 수 있는 것이 명확(明確)히 명시(明示)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굴(盜掘) 도난품(盜難品)의 출처(出處)와 민간(民間) 소유(所有)의 문화재(文化財)가 파악(把握)될 수 있으며 사유(私有)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행정(行政)의 단계적(段階的) 파악(把握)과 정리(整理)가 이룩될 것이다.

셋째는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벌칙(罰則) 강화(強化)이다.

현재(現在)의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벌칙(罰則)은 특(特)히 벌금형(罰金刑)이 많은 1963年 2月 9日 공포(公布) 당시의 화폐가치(貨幣價值)로 계산(計算)되고 있어서 그간의 화폐(貨幣) 개혁(改革)과 화폐가치(貨幣價值)의 저락으로 현재(現在)의 벌칙(罰則)은 너무 경미한 규정(規定)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벌칙(罰則)의 강화(強化)와 매장 문화재(埋藏文化財)의 민법상(民法上) 유실물(遺失物)의 소유권(所有權) 취득(取得) 공고(公告) 기간이 1年이 너무 길어서 이를 6個月로 단축(短縮)하는 문제(問題)와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시행령(施行令)에 명시(明示)하고 있는 지방(地方)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지방 문화재(文化財)를 지정(指定)하여 보호(保護) 관리(管理)하는 지방(地方) 자치(自治) 단체(團體)의 조례의 근거(根據)를 법(法)에 명시(明示)하고 1969年 1月 20日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규정(規定)의 개정(改正)에 따르는 민족(民族) 사상(思想) 관계(關係)의 연구근거(研究根據)를 두어야 한다.

3. 전문직(專門職)의 양성(養成)

문화재(文化財) 관계(關係) 사업(事業) 대상(對象)이 있다면 담당(擔當)할 기술(技術)

이나 연구능력(研究能力)이 있는가, 공사(工事) 기간(其間)이나 조사연구(調查研究) 기간(其間)이 얼마이면 되는가, 이 사업(事業)을 담당(擔當)하는 주체(主體)의 연구자(研究者)가 누구인가, 끝으로 재원(財源)이 있는가 이상의 제(諸) 조건(條件) 하나만 잘못되어도 그 사업(事業)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結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행정(行政)하는 사람이 사업(事業) 대상(對象)의 청사진(靑寫眞)만들고 문화재(文化財) 관계(關係) 사업(事業)을 중단(續斷)하는 경우(境遇)가 있다. 재원(財源)만 가지고 일이 일시에 된다고 생각하는 물지각한 일이 있다면 자못 무서운 일이다. 몇가지 예(例)를 들어 보자, 선사(先史) 시대(時代) 유적(遺跡)을 발굴(發掘) 한다면 우리 나라의 선사(先史) 유적(遺跡) 발굴기술자(發掘技術者)가 몇사람 뿐이다. 적어도 연구(研究) 과제(課題)를 걸고 국가(國家)가 시행(施行)하여 민족사(民族史)를 밝히는 작업(作業)이라면 고고학과(考古學科)의 학생훈련(學生訓練)이나 하는 발전(發展)을 하여서는 귀중(貴重)한 연구(研究) 재료(材料)일 유적(遺蹟)만 망가뜨리고 토기(土器)나 석기(石器) 몇조각 얻어내는 보물(寶物)찾기가 되어 학술적(學術的) 정론(定論)이 하나로 서지 않고 만다. 고고학(考古學)을 전공(專攻)했거나 사학(史學)만 전공(專攻)하였다고 발굴(發掘)을 할 수는 없다. 이것은 토목기술(土木技術)과 건축기술(建築技術) 기타(其他) 공학적(工學的) 기술(技術)을 습득(拾得)하고 고고학(考古學)의 체계(體系)를 세밀(細密)히 분석(分析)한 후 우리는 찾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규명(糾明)하는 작업(作業)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하는 것이다. 문화재보수(文化財補修)도 그렇다. 한국건축(韓國建築)의 용어(用語)하나 모르는 현대건축(現代建築) 기사들이 기와(起臥)를 건어내고 목부의 썩은 자재(資材)나 대치(代置)하는 것이 문화재(文化財) 보수(保守)가 아니다. 기와(起臥)의 뒷면 한 장의 도요지를 밝히고 석가래 한쪽이나 적심 밑에서 귀중(貴重)한 사료를 찾아내는 발굴(發掘)의 기술(技術)이 있어야 한다. 해인사(海印寺) 장경판고의 지붕 밑에서 광해군(光海君)의 옷이 발견(發見)되어 중요(重要)한 문화재(文化財)로 지정(指定)되었거니와, 잘못 건드리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물건이 되어 있는 상량문(上樑門)의 기록(記錄) 세병관(洗兵館)의 지붕에서 이순신장군(李舜臣將軍)과 세병관(洗兵館)과의 관계(關係) 기록(記錄)을 다시 고쳐야 하는 상량문(上樑門)이 나왔다. 이렇게 집의 애매한 역사(歷史)를 모두 밝히며 우리나라 건축사(建築史)의 의문점을 풀어내는 것은 보수(補修) 공사(工事) 시의 작업과정(作業過程)에서 구조(構造)나 역학(力學)의 문제(問題) 부재(不在)의 처리(處理)등 시대(時代)의 건축(建築) 기술(技術)을 우리는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아무나 손대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돈만 있으면 일시에 보수(補修)가 가능(可能)한 것이 아니다. 탑(塔) 하나 고치다가 나오는 사료(史料)에서 우리는 세계사(世界史)에 얼마나 주목(注目)하는 사료를 제시(提示)하고 있는가, 어떤 사리공을 잘못 건드리면 모래처럼 부서지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처리(處理)와 기록(記錄)을 할 수 있는 자(者)가 아니면 건축(建築)이나 탑(塔)이나 보수(補修)해서는 안된다. 작은 부재 하나를 하루종일 드러다 보고 사진(寫眞)을 찍고 실측을 하고 앉아서 연구서(研究書)를 작성(作成)해야 하며 우리의 건축사(建築史)를 명료히 알고 밝혀야 할 과제(課題)가 무엇인가를 목표(目標)하여 그것을 찾아 규명하는 작업(作業)을 담당(擔當)하는 자(者)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現在)의 이러한 기술진(技術陣)이 얼마인가, 어떤 상태(狀態)에 있는가, 얼마의 보수(補修)를 국가(國家)는 1년에 할수 있는가 등등의 계획(計劃)과 재원(財源)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소이가 바로 이것이다. 문화재(文化財)란 유구한 세월(歲月)을 통(通)하여 겹겹히 계승, 창조한 도도한

보물(寶物)들이기에 아무리 현명(賢明)한 시책(施策)으로라도 하루 아침에 정리(整理) 못하는 애로가 여기 있다. 졸속을 저지르면 진실로 민족(民族)의 이름으로 규탄(糾彈) 받을 과오를 저지른다.

69년의 문화재(文化財) 보수(補修) 15건(件)이 있다. 현재(現在)의 정부(政府)의 기능(技能)이 얼마의 작업(作業)을 할 수 있는가를 다시 검토(檢討)하고 그것을 책정(策定)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문가(專門家)를 양성(養成)한 일이 없었다. 학계(學界)에나 또는 자기 자신의 노력(勞力)으로 훈련(訓練)된 전문가(專門家)가 문화재(文化財) 전문위원(專門委員), 박물관(博物館)과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직원(職員) 기타(其他)로 10여명(餘名)이 있다. 미술사(美術史)를 연구(研究)하는 사업(事業)을 보더라도 이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며, 1년의 기간(其間)에 조사(調査) 능력자(能力者) 및 사람으로 일한다면 얼마를 할 수 있는가의 한계(限界)가 있다. 그러기에 현재(現在) 시급(時急)한 문화재(文化財) 보수(補修) 기술자(技術者)나 문화재(文化財) 보호(保護) 과학(科學) 기술자(技術者), 전문(專門) 분야별(分野別) 학예직(學藝職) 발굴(發掘) 기술자(技術者),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행정가(行政家)의 양성(養成)을 시급(時急)히 해야한다. 이것이 진실로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를 새롭게 하는 근본(根本)의 토대(土臺)가 되고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업무(業武)의 능력(能力)을 배양(培養)하는 작업(作業)이다. 능력(能力) 없이 하는 일은 무모(無謀)하고 실천(實踐)없는 계획(計劃)은 공허하다.

4. 사유(私有) 문화재(文化財)의 관리(管理)

현재(現在) 우리나라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의 소유권(所有權)을 분류(分類)하면 약(約) 50%가 사유(私有) 문화재(文化財)이다. 이 사유(私有) 문화재(文化財)중 약(約) 80%가 불교문화재(佛敎文化材)이다. (별표참조)이를 분류(分類)함에 있어 국보(國寶), 보물(寶物)은 다음면 표와같이 소유권(所有權)이 동산(動産), 부동산(不動産)으로 명확(明確)히 분류(分類)될 수 있으나 사적은 대부분이 국유이나 지적도상(上)의 지목(地目), 지번(地番)을 분류(分類)하면 사유(私有) 토지(土地)가 혼합(混合)되어 있고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이나 천연보호구역(天然保護區域)도 이러하며 무형(無形) 문화재(文化財)는 사람의 기능(機能)이기 때문에 국유(國有)는 없고 민속자료(民俗資料)는 1점(點)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유(私有)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重要)한 개념(概念)은 지정(指定)된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는 모두 국가(國家)의 것으로 소유자(所有者) 자신이 잘못 인식(認識)하고 있으며 그것의 보호(保護) 관리(管理)도 국가(國家)에 전적(全的)으로 의존(依存)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國家)가 보조금(補助金)으로 이를 보수(補修), 관리(管理), 계승하는 것은 소유자(所有者)의 재원(財源)의 능력(能力)이 없을 때에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개념(概念)은 하나도 없고 무엇이든 지정(指定)만 되면 국가(國家)의 보조(補助)만 기다리는 병폐(病弊)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관리(管理)에 대한 전문적(專門的) 식견(識見)이나 기술(技術), 책임감(責任感)과 사명 의식이 없고 제삼자(第三者)의 입장(立場) 같은 타성으로 되어 버렸다. 나는 아직 불교(佛敎) 총무원(總務院)이 지정(指定)된 중요(重要)한 불교(佛敎)문화재(文化財)를 보수(補修)하겠다고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당국(當局)과 협조(協調) 요청(要請)한 일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많은 문화재(文化財)를 가지고 있는 불교(佛敎) 총무원(總務院)에 문화재(文化財)를 스스로 보존(保存) 관리(管理)하는

전문기관(專門機關)이나 관리(管理) 스님을 둔 것을 알지 못하며, 문화재(文化財) 보호법(保護法)을 모르는 국보(國寶) 사찰(寺刹)의 주지스님은 얼마든지 있다. 얼마나 많은 지정(指定)의 구역(區域) 내에 요사체를 제멋대로 짓고 안목없이 지정(指定)된 문화재(文化財)를 조악하게 개조, 변경(變更)한 일이 있었는가를 알면 된다. 국보(國寶)로 지정(指定)된 사찰(寺刹) 건물(建物)의 벽(壁)에 수없이 그려진 낙서(落書)를 우리는 얼마든지 본다. 그것이 국가(國家)가 보조(補助)하고 관리(管理)할 사항(事項)이며 이러한 능력(能力)마저 스님에게 없는 것인가. 문화재(文化財) 보호법(保護法)에도 그렇지만 사유(私有)의 문화재(文化財)는 그 소유자(所有者)가 제일 먼저 사명(使命) 있게 관리(管理)하고 보존(保存)해야 할 의무(義務)가 있다. 그리기에 불교(佛敎) 총무원(總務院) 같은 곳에는 불교문화재(佛敎文化財)를 신앙적(信仰的) 대상(對象)뿐 아니고 과학적(科學的), 학술적(學術的) 연구(研究)의 보존(保存) 관리(管理) 기관(機關)이 있어 국가(國家)와 협조(協調)하여 자기의 문화재(文化財)를 자기가 제일 먼저 가꾸어 가기를 바란다.

計	國									實				種	別			
	京	畿	道	江	南	全	南	江	原	京	畿	道	私			有	私	有
19													60, 61, 91, 92, 93, 94, 96, 97, 98, 113, 114, 115, 116, 125	65, 66, 68, 74, 107		影 藏 函		
14 5																		
6			76		32										69, 70, 71		古 文 書	
6																		
2						111									110		繪 畫	
1 1																		
4													87, 88, 89, 90				工 藝	
4																		
16						27, 28, 45	117						78, 79, 80, 83, 119, 127	72, 73, 85, 118, 126, 129			金 銅 佛 像	
7 9																		
1							42											木 佛 像
1																		
3						29				30	120							銅 鐘
1 2																		
1							121											民 俗 資 料
1																		
2						75									95			香 爐
1 1																		
2							126								123			靛 瓦 遺 物
1 1																		
56		1	2	1	6	1	2			1	1		27	24				計
29 27																		

<page 110 표>

道別種類別集計表

(1969. 3. 3 現在)

		資 物										合 計												
시 令		京 畿		江 原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牙 山		計						
國 有	私 有	國	私	國	私	國	私	國	私	國	私	國	私	國	私	國	私	國	私					
240.259.	237.238.														268					21	40			
340.342.	239.241.																			12	9	26	14	
343.344.	286.287.																							
345.346.	348.349.																							
347.452.	416																							
453																								
	130.283.			140		269.	278.	90.134.	271.	160.261										34	40			
	352.398.					270.	437.	204.205		262.314														
	417.418.					390	438	206.207		315.484										1	33	1	39	
	419.477							260.311		494.501														
								482.483																
	391.392							421	481	485										7	9			
										487														
										502											7	1	8	
338.339.																								
454.455.									175	208	495	440								10	14			
456									176											5	5	9	5	
195.196.	284.285.					337	279													14	30			
328.330.	401					409	280													6	8	13	17	
331.333							422																	
																							1	
																							1	
2		11	393	479	478	277	88													8	11			
			397																	2	6	3	8	
																							1	
																							1	
	288.321							420					334							4	6			
																					4	1	5	
325.366																								
										451											5	7		
										460											2	3	3	4
25	24	1	2	2	6	6	14	2	14	2	2	2								103	159			
																					28	75	57	102

國有·私有不動產文化財

計		國										種別	資																							
		慶南		慶北		全南		全北		忠南			忠北		江原		京畿		서울																	
		國	私	國	私	國	私	國	私	國	私		國	私	國	私	國	私	國	私																
14		52		15.18.19.14	13.50.56.67	62		49	55	51				1	木造建築物	1.141.142.177.383.384.385	402.403.178.179.180	213.164.165.183.214																		
2	12																																			
28		34	16.37.38.39.40.77.112	20.21.30	35.57	11.10	4	6		122.48			2.86.99.100.101.102.104.105.130.		石塔	166.190.357.358.362.	5.7.12.226.13.91.92.435	225.226.227.228.229.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40.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251.252.253.254.255.256.257.258.25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271.272.273.274.275.276.277.278.279.280.281.282.283.284.285.286.287.288.289.290.291.292.293.294.295.296.297.298.299.300.301.302.303.304.305.306.307.308.309.310.311.312.313.314.315.316.317.318.319.320.321.322.323.324.325.326.327.328.329.330.331.332.333.334.335.336.337.338.339.340.341.342.343.344.345.346.347.348.349.350.351.352.353.354.355.356.357.358.359.360.361.362.363.364.365.366.367.368.36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80.381.382.383.384.385.386.387.388.38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400.401.402.403.404.405.406.407.408.409.410.411.412.413.414.415.416.417.418.419.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30.431.432.433.434.435.436.437.438.439.440.441.442.443.444.445.446.447.448.449.450.451.452.453.454.455.456.457.458.459.460.461.462.463.464.465.466.467.468.469.470.471.472.473.474.475.476.477.478.479.480.481.482.483.484.485.486.487.488.489.490.491.492.493.494.495.496.497.498.499.500.501.502.503.504.505.506.507.508.509.510.511.512.513.514.515.516.517.518.51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30.531.532.533.534.535.536.537.538.539.540.541.542.543.544.545.546.547.548.549.550.551.552.553.554.555.556.557.558.559.560.561.562.563.564.565.566.567.568.569.570.571.572.573.574.575.576.577.578.579.580.581.582.583.584.585.586.587.588.589.590.591.592.593.594.595.596.597.598.599.600.601.602.603.604.605.606.607.608.609.610.611.612.613.614.615.616.617.618.619.620.621.622.623.624.625.626.627.628.629.630.631.632.633.634.635.636.637.638.639.640.641.642.643.644.645.646.647.648.649.650.651.652.653.654.655.656.657.658.659.660.661.662.663.664.665.666.667.668.669.670.671.672.673.674.675.676.677.678.679.680.681.682.683.684.685.686.687.688.689.690.691.692.693.694.695.696.697.698.699.700.70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1.712.713.714.715.716.717.718.719.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730.731.732.733.734.735.736.737.738.739.740.741.742.743.744.745.746.747.748.749.750.751.752.753.754.755.756.757.758.759.760.761.762.763.764.765.766.767.768.769.770.771.772.773.774.775.776.777.778.779.780.781.782.783.784.785.786.787.788.789.790.791.792.793.794.795.796.797.798.799.800.801.802.803.804.805.806.807.808.809.810.811.812.813.814.815.816.817.818.819.820.821.822.823.824.825.826.827.828.829.830.831.832.833.834.835.836.837.838.839.840.841.842.843.844.845.846.847.848.849.850.851.852.853.854.855.856.857.858.859.860.861.862.863.864.865.866.867.868.869.870.871.872.873.874.875.876.877.878.879.880.881.882.883.884.885.886.887.888.889.890.891.892.893.894.895.896.897.898.899.900.901.902.903.904.905.906.907.908.909.910.911.912.913.914.915.916.917.918.919.920.921.922.923.924.925.926.927.928.929.930.931.932.933.934.935.936.937.938.939.940.941.942.943.944.945.946.947.948.949.950.951.952.953.954.955.956.957.958.959.960.961.962.963.964.965.966.967.968.969.970.971.972.973.974.975.976.977.978.979.980.981.982.983.984.985.986.987.988.989.990.991.992.993.994.995.996.997.998.999.1000.																		
21	7																																			
9				26			84.108	58		63		81.82.106.124			石佛像	215.329.367.368	8.9.93	81.84	139.96.216.406.433																	
6	3																																			
7		33.47.25					7.8		59		3				石碑	3.359.360.361.363	6.9.10.14.230.387.488.	78.446	192.16.17.404																	
6	1																																			
5			17	12.44				4			103				石燈	282.364	231.389	445.496																		
1	4																																			
3				53.54							4				浮屠	351	388	85.439.447																		
1	2																																			
2			22.23												石橋	385																				
															石鍾																					
2		31						64							石造物	365	228	463																		
1	1														鐵佛像	332			98																	
															鐘亭	235	4	76.80.82.83.85																		
1								41																												
1			109.24												石窟																					
1	1			46											壁畫																					
74		2.2.10.13		10.1.2.5.2.2.3.3.2.1							16				計	27	1.16.14.23	10.10.4																		
40	43																																			

道別種類別集計表

(1969. 3. 3. 現在)

物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釜 山		計		合 計		
國	私	國	私	國	私	國	有	有	私	國	私	國	私	國	私	國	私	國	私
	143. 162. 181. 209. 356. 399. 408	289. 308	23. 272. 281. 290. 291. 292. 476.	324	163. 263. 299. 303. 394. 396		305.	323	55. 145. 182. 210. 211. 242. 306. 350. 411. 412. 413. 414. 442. 447. 448. 449. 450. 475. 486.	147. 293. 310	144. 146. 212. 394. 500	322			434			73	87
	18. 19. 20. 47. 191. 104. 195. 184. 224. 354.	185 30	44. 27. 109. 151. 157. 57. 65. 67. 113. 171. 247. 248. 129. 294. 466. 312. 373. 473. 37. 298. 320. 395. 188. 327. 426. 469. 498	50. 132. 133. 51. 52. 53. 56. 61. 137. 169. 72. 73. 266. 129. 294. 466. 312. 373. 473. 379. 382. 467. 468. 480. 471. 474											250			114	142
	100. 108. 197. 355. 407. 432	174. 217. 218. 43. 219. 45. 46	31. 42. 43. 45. 46	423	461. 462	48. 89	58. 60. 62. 63. 115. 116. 118. 119. 120. 121. 122. 136. 187. 199. 200. 201. 203. 220. 221. 245. 335. 427. 431. 490. 492	243. 296. 307. 244. 246. 317. 319. 425. 424	71. 75. 264. 159. 222. 265. 370. 371. 295. 375. 376. 436. 377. 378. 493. 491									85	94
	21. 106. 107		24. 34. 39	313	152. 153. 158. 170. 275	68. 251	138. 172. 252. 316. 423	128. 227										40	47
	232. 233	234. 267	35. 40	111			193	353. 381	253									18	23
		257	36	154. 155. 156	135	258. 430	173. 441. 472	369. 372. 380										19	22
			304	400														7	12
																		3	5
			26															2	1
																		1	1
	102. 148. 149. 194		22			64. 66. 70. 125. 202.	318	74. 489.										16	18
			41	131. 136			415											13	3
																		6	6
																		2	4
	99. 103. 150	256 236	32. 28	49		54. 59. 69. 123. 127	254. 255											22	23
																		18	4
																			19
																			4
																			2
																			1
																			1
	26	16	15	25	12	30	60	52	33	20	1			2				397	471
																		223	174
																		263	208

5. 도굴(盜掘) 도난(盜難)과 해외(海外) 유출(流出) 방지(防止)

도굴(盜掘) 도난(盜難)은 신문(新聞) 지상(紙上)을 때때로 메우고 해외유출(海外流出)의 사건(事件)이 적발된다. 정부(政府)가 조사(調查) 기록(記錄)하고 있는 사건(事件)의 계보(系譜)는 다음표(表)와 같다.

이 도굴(盜掘) 도난(盜難)을 방지(防止)하기 위하여서는 전국(全國)에 67명(名)의 문화재(文化財) 감시원(監視員)을 채용(採用)하고 있으나 완벽(完璧)한 효과(效果)는 얻지 못했으며, 도굴(盜掘) 도난(盜難)의 방지(防止)의 제일책(第一策)은 소유자(所有者)나 관리자(管理者)가 철저히 보호(保護)하는 일이고 문화재(文化財)의 집중(集中) 지역(地域)에는 경찰(警察)이 문화재(文化財) 전담반(專擔班)을 구성(構成)해서 이러한 범죄(犯罪) 계보(系譜)를 파악(把握)하고 예방(豫防)을 하여야 한다. 현재(現在) 사법경찰권을 전국(全國)의 문화재관리직(文化財管理職)에 줄 계획(計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협조(協調)가 있어야 하겠다. 해외(海外) 유출방지(流出防止)를 위해서 김포(金浦)와 부산(釜山)의 세관(稅官)에 문화재 감정(鑑定) 감시원(監視員)을 파견(派遣)하지만 이것은 세관원(稅關員)을 교육(教育)시켜 문화재(文化財)의 해외유출(海外流出)을 방지(防止)하는 직원(職員)을 가지게 해야한다. 이는 약간(若干)의 상식(常識)과 안목(眼目)만 있으면 능(能)히 할 수 있는 일이며 문화재(文化財)의 감정(鑑定) 훈련(訓練)을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이 맡아 시행(施行)하면 좋은 효과(效果)가 있을 것이다.

대장문화재 도굴현황

도 굴 년월일	도 굴 장 소	도굴품명	도굴자주소	성 명	년령	처리사항	비 고
1967. 7.21 " "	전북 정읍군 고분면 관청리 " "	고려청자기 1점 " "	전북 정읍군 고분면 고부리 " 서울 종로구 관훈동 골동품상 대성단	김○수 은○표 정○태	32 40 미상	김○수는 기소증지 은○표는 징역6월 집유3월 정○태는 징역 8월 전원구속 수사중임	재수사중
1967. 11.17 " " "	경기도 양평군 지체면 월산리 167,167 " " "	청동제 범종 1점외 1점 " "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3리 " " 서울 성동구 성수동(고물상인)	김○식 라○식 안○희 황○호	미상 " " "	각 벌금 10,000원 현직공무원으로 해면	현품 인수 계획중임
1968. 1.11 "	경기도강화군강화면남 산리 산35 "	대형주발외12 1점	경기도강화군 강화면국화리	라○준 유○준 김○하	27	수사중	

도 구 년월일	도 구 장 소	도구품명	도구자주소	성 명	년령	처리사항	비 고
1968. 7.1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향로 2점외 121점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조○남	43	수사중	
1968. 9.13	경북 영일군 신평면 상읍동 비약산	석가불사리탑 내유물	미 상	미 상	미상	수사중	
191968. 9.16	경북 안동군 일직면 조탑동317	토기호 1점	미 상	미 상	미상	수사중	
1968. 11.6 "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9-1 " " "	석함4점 외24점 " "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 " "	김○철	미상	수사중	현품일부인수
1968. 11.26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동박리429-1	이조백자외12 점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청덕리	박○근	36	수사중	노량진경찰서에 서일당체포 이조백자외4점 압수7점행방불 명서울지방법원 서송치
1968. 11.6	" " "	" " "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서울 용산구 보광동	주○룡 이○출 홍○천	44 45 47		
1969. 1.3 " "	경기도양평군 육천면아신리 " " "	유리판외21 " " "	경기도양평군 육천면아신리 " " "	정○찬 김○택 정○모	미상 " "	입건수사중	
1966. 5	전북부안군보안면유천 리 산10-1 산11	고려자기1점 외3점	전북부안군보안면유천 리	이○한	미상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문화재 보호법 위반자 명단

성 명	년령 (사건 당시)	주 소	사 건 내 용
박○남	만25	전주시 평화동 용안리	1966.9.15. 04:30 금산사 경내에 침입하여 보물제27호 금산사 육각다층석탑의 참신상부 층을 절취했음. 범인 체포, 현품 금산사에 인계함. 전과3범 66.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1년간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았음.
김○철	39	경북 경주시 배반리	1966. 9. 3-5 국보 제21호 불국사 삼층석탑을 도굴
윤○만	27	"	
유○웅	34	" 칠성군 내남면 노곡리	
주○수	33	" 대구시 내당동	
임○구		"	
주○봉		경북 경주시 인왕리	
정○화		경북 월성군 내남면 배리	
문○선	29	부산시 영주동	66. 1. 11 경남 밀양군 표충사소유 금강저 1점, 가사고 리 1조 늦쇠수저 1조, 동제잔대 및 잔 6조를 절취함. 66. 1. 17 체포, 회수 66. 1. 20 소유자에게 반환
김○용	29	" 초장동 3가	
조○래	35	" 보수동 1가	

성명	년령 (사건 당시)	주소	사건내용
김○식	37	서울 성동구 동성동 4가	징역 1년 65. 10. 23 송광사경내 박물관에서 비지정문화재 32점을 절취하여 일부매각함.
유○신	37	" 신당동	22점 회수하고 10점은 망실됨.
송○식	30	무직 서울영등포구 고척동	65. 1. 19 국보 제 75호 표충사 청동함은항단 1점을 절취하여 이승모에게 매각함.
박○호	32	" 경남 진주시 이하불상	65. 3. 28 문화재 회수. 주범 체포
최○년		" 경기도 인천교도소 수감중	65. 2. 10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소재 넘불암에서 산신도 1매를 절취함
이○모 (매수자)	43	한국은행축탁. 서라벌예대강사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5. 2. 1 강원도 상원사에서 석불상 2개를 절취함
강○용 배○천 강○봉			도굴범 대구지방법원에 계류중으로 당부에서 출장하여 문화재 감정함.
유○필	32	공주여자 고등학교 미술교사	63. 5. 3-4경 보물제321호 지정4년재명 고려청동누은항로를 절취함. 63. 5. 18 범인체포 현품회수함
박○문	50	농업,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	1962.3 퇴촌면 원당리 소재 태봉에서 태항 2개와 지석 1개를 도굴하여 매각함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 도굴품은 미회수

지정문화재 현황표

69. 1. 31 현재

시도별	국보	보물	사적	사적및명승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계
서울	56	77	17	-	8	10	2	170
부산	-	2	1	-	3	1	-	7
경기	2	33	15	-	7	1	1	59
충북	5	14	-	1	8	-	-	28
충남	8	49	20	-	8	2	-	87
전북	3	49	11	-	10	-	-	73
전남	13	56	12	-	27	1	3	112
경북	31	126	50	3	24	1	-	235
경남	6	56	37	1	19	6	4	129
강원	6	35	2	-	12	2	2	59
제주	-	1	1	-	13	-	-	15
기타	-	-	-	-	14	-	-	14
계	130	498	166	5	153	24	12	988

1. 기타난은 전국 공통임

2. 지정기관별 : 723점...문화재관리국 발족이전, 265점...문화재관리국

6. 과학적(科學的) 보존(保存)의 강구(講究)

문화재(文化財)의 과학적(科學的) 보존(保存) 방법(方法)에 대한 연구(研究)는 68년에 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가 맡아서 유익(有益)한 보고서(報告書)를 출간(出刊)한 일이 있다. 과학적(科學的) 보존(保存)의 제(諸) 문제(問題)는 국력(國力)에 비례(比例)하는 것이다. 많은 비용(費用)이 드는 시설(施設)과 기술진(技術陣)이 필요(必要)하다. 그러나 선진국(先進國) 수준(水準)에 이르는 완벽(完璧)의 강구(講究)는 멀다 할지라도 시급(時急)한 문제(問題)의 처리(處理)는 해야 한다. 날로 부패(腐敗)하고 있는 목조건물(木造建物)과 풍화(風化)하고 석造物(石造物), 퇴색(退色)하고 있는 회화(繪畫)의 처리(處理) 등은 시급(時急)한 방책(方策)이 강구(講究)되어야 한다. 현재(現在) 보존(保存) 과학(科學)의 전문가(專門家)로 국내(國內)에 몇 사람없고 문화재(文化財) 관리기관(管理機關)에는 한 사람도 없는 실정(實情)이다.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는 이러한 부문(部門)의 개척(開拓)을 위하여 과학자(科學者)를 위원(委員)으로 위촉(委囑)하고 요업기술자(窯業技術者)를 전문위원(專門委員)으로 위촉(委囑)했지만 물리적(物理的), 화학적(化學的), 금속(金屬) 공업(工業) 기타(其他) 광학적(光學的) 요업기술(窯業技術)의 연구(研究)에 이르는 광범(廣範)한 연구(研究)가 전국(全國)의 문화재(文化財) 하나하나를 대상(對象)으로 하여 보고서(報告書)가 작성(作成)되어야 하고 주기검사(週忌檢査)가 실시(實施)되어 보수(補修) 시에는 이러한 제시(提示)가 같이 강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화재연구실(文化財研究室)에 보존과학반(保存科學班)의 연구(研究)를 할 수 있도록 직제(職制)가 개편(改編) 증원(增員)되고 실험실(實驗室), 실험(實驗) 기구(器具)가 완비(完備) 되어야 한다.

7.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직원(職員)의 지식(知識)과 교육(教育)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기관(機關)은 경험(經驗)과 역사(歷史)가 깊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행정(行政) 기관(機關)은 역사(歷史)가 너무 짧고 그것마저 비전문인(非專門人)의 견해(見解)에 따라 변동(變動)하여 왔기 때문에 언제나 생소한 사람들이 이 일을 맡을 때가 너무 많았다.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가 도(道) 공보실장(公報室長)에게 68년에 교육(教育)을 1次했고 69년 3월에 第2次 실무자(實務者) 교육(教育)을 실시(實施)했다. 참으로 시급(時急)하고 효과(效果)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행정인(行政人)을 양성(養成)한다는 견지(見地)에서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 기간이 짧거나 내용(內容)이 한정(限定)된 교육(教育)이다. 현재(現在)의 시급(時急)한 여건(與件)으로는 부득이한 일이지만 쓸 수 있는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행정인(行政人)을 양성(養成)하려면은 국가(國家)는 특수(特殊) 교육(教育) 기관(機關)을 만들어 필요(必要)한 교육(教育) 과정(過程)을 설정(設定)하고 교육(教育)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다음에 열거(列舉)하는 과목(科目)은 전문적(專門的)으로 깊게 알지는 않아도 상식적(常識的)인 이론(理論)의 파악(把握)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개괄적(概括的)으로 교육(教育)하더라도 6주(週)의 교

육(教育) 기간(期間)이 필요(必要)하다고 본다.

①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문화재(文化財)를 관리(管理)함에 있어 기본법(基本法)인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은 이 법(法)의 조문(條文)의 암기(暗記)는 물론(勿論)이고 민법(民法)과의 관계(關係), 국유(國有), 재산법(財產法), 국립공원법(國立公園法), 관광(觀光) 진흥법(振興法), 진도견보호법(珍島犬保護法),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과의 관계(關係)등 각법 시행령(施行令)과 시행규칙(施行規則)에 이르기까지 명철(明哲)하게 알아야 한다. 교육(教育) 과정(過程)의 시간(時間) 배당(配當)도 가장 많이 소요(所要)되어야 하는 것이다.

② 국 사(國 史)

우리가 국사(國史)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나를 알기 전에 우리를 먼저 아는 척하고 우리를 알기 전에 세계(世界)를 아는 것처럼 된 풍조(風潮)에서 많은 지식(知識)인 속에는 우리의 역사(歷史)에 어두운 사람이 많다. 서양(西洋)의 인상파(印象派)니, 추상파(抽象派)니, 하는 회화사의 내력(來歷)을 잘 아는 화가(畫家)가 한국(韓國) 회화사(繪畫史)는 물론(勿論) 백제화상전(百濟畫像展)의 그림한 폭을 기억 못하는 주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는 역사(歷史)의 증거물(證據物) 들이다. 그러기에 가장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사(國史)이고 연대(年代)의 암기(暗記)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동양(東洋) 역사(歷史)의 연관(聯關)을 알고 비교(比較), 구분(區分)할 수 있는 상식(常識)을 가져야 사업명(事業名) 하나라도 붙이고 목표(目標) 하나라도 설정(設定)할 수 있는 것이다.

③ 고건축(古建築) 용어암기(用語暗記)

문화재(文化財)를 관리(管理)하는 직원(職員)이 목조(木造)이든 석조(石造)이든 단청(丹靑)이나 조각(彫刻)을 보고는 명칭(名稱)하나를 모른대서야 어떻게 서류 검토(檢討)라도 할 것인가? 하늘을 나르는 아름다운 한국(韓國)지붕의 추녀(醜女)를 보고 적어도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를 한다면 외형(外形)에 나타나고 있는 부연(付椽)이나 토수(吐首), 잡상(雜像), 망와의 설명(說明)쯤은 해야 한다.

어느 사찰(寺刹)에 조사(調查)를 가더라도 금단청(金丹靑)이나 머루단청을 해야 할 곳에 굿기를 한 문양이 있으면 이를 지적(指摘)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방(地方)의 건축(建築) 기사(技士)가 포작의 설명(說明) 하나를 못하고 주빋주빋하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說明)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본다. 광화문(光化門)을 복원(復原)하고 홍예문(虹霓門) 우진각 지붕이라고 큰 활자(活字)로 설명(說明)하고 있지만 이를 잘 아는 사람은 적다. 건축(建築) 용어(用語)는 3,300어 쯤된다. 탑 하나 설명 하나를 읽더라도 이 용어(用語)를 알고 있어야 한다.

④ 한서(漢書)의 독해(讀解)

한글 전용(專用)의 국가 정책(政策)이 시행(施行)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행정(行政)에 있어서는 한서(漢書)의 독해력(讀解力)이 없으면 비석(碑石)하나 못 읽는 맹인이 되어 전적이나 문서는 다루지도 못한다. 진실로 한글 전용(專用)의 방안(方案)은 한문(漢文)을 썩 잘 알고 그것을 한글로 풀이해야 하는 지식(智識)이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행정(行政)에 적용된다.

전문적(專門的) 한문학(漢文學)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역사(歷史) 사료(史料)

를 다룰 수 있을 만큼은 한서(漢書)의 독해력(讀解力)이 필요(必要)하다.

⑤ 간단한 도면(圖面)과 촬영(撮影) 실측(實測)

도면(圖面)을 그리고 실측(實測)을 하는 것은 건축기사(建築技士)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관리직(文化財管理職)이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간단한 도면(圖面)을 뜨고 사진(寫眞)을 촬영(撮影)하고 실측을 하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면 안된다. 카메라만 있으면 촬영(撮影)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적어도 기록(記錄)에 남기는 정리(整理)의 촬영(撮影)은 상부한 훈련(訓練)이 있어야 한다. 조사출장(調查出場)을 가서 찍은 부재를 보고도 평면도(平面圖)를 그려 복명(腹鳴) 하나 할 수 없으면 조사원(調查員)이 될 수 없는 것이다.

⑥ 목조건축물(木造建築物)의 건축사(建築史)와 구조(構造)

문화재(文化財) 보수(補修) 계획(計劃)을 세우거나 사업(事業)을 수행(修行)하는 일에서 우선 그 영조물의 역사적(歷史的) 영역(領域)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 부재나 구조(構造)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지정(指定)된 문화재(文化財)는 건축상(建築上) 어떤 위치(位置)에 있으며 어떤 구조(構造)나 기능(機能)이 특징(特徵)이고 시대적 특색(特色)인가 등의 건축적 가치관(價値觀)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봉정사 극락전(極樂殿)과 쌍계사 대웅전이 같은 상태(狀態)에 있다면 어느 것이 더 긴급(緊急)한 사업인(事業人)가의 중요(重要)도의 결정(決定), 사업순위(事業順位)의 선정(選定)에 이러한 조건(條件)이 척도가 되는 것이다. 지정(指定)된 건물(建物)마다의 시대적(時代的), 학술적(學術的)인 실태(實態)를 아는 일은 그 건물(建物)을 알고 문화사적(文化史的) 가치(價値)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⑦ 석조(石造) 건축물(建築物)의 건축사(建築史)와 구조(構造)

석조물(石造物)도 목조물(木造物)과 같이 시대적(時代的) 구분(區分)이나 가치(價値)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사(建築史)와 구조(構造)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능(機能)을 알게되면 이해가 빠르고 보존(保存)의 방법론(方法論)을 찾을 수도 있다. 탑이나 부도, 석불(石佛) 등이 어떠한 시대적(時代的) 특징(特徵), 가치관(價値觀)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지 않고는 무엇이 중요(重要)한가를 모른다. 중요(重要)한 의의를 모르면 관리의 태도(態度)도 소홀해진다.

⑧ 한국(韓國)의 회화사(繪畫史)

우리나라 회화(繪畫)의 관리(管理)를 위해서 한국회화사(韓國繪畫史)를 알아야 한다. 저 낙랑 고분의 칠하고 그린 그림에서부터 이조(李朝)에 이르기 까지 북종화나 남종화의 특색(特色)이나 민족(民族) 회화사(繪畫史)에 길이 그 독자적(獨立的) 창조성(創造性)을 부여(附與)한 단원이나 혜원의 그림 등의 줄기를 찾고 부석사 조사당의 고려 벽화나 무위사 극락전의 벽화, 수덕사 대웅전의 벽화들, 그것이 어째서 중요(重要)하고 불화조사 사업(事業) 하나가 어떤 과제(課題)를 걸고 책정(策定)되고 조사(調查)되어야 하는가를 개론(概論)의 파악(把握)없이는 모른다. 우리는 불행(不幸)히도 저 고구려(高句麗) 고분 벽화가 전부(全部) 북한(北韓)에 있어 가 보지 못한 안타까움에 있으며, 지정(指定)된 문화재(文化財)의 부문(部門) 속에서 회화(繪畫)와 서화(書畫)는 적다. 전들 하

나 기와장 하나에 새겨진 연하문, 당초문 등이 어떻게 소중한 것들인가의 가치를 더듬어 문화재(文化財) 건조물(建造物) 보수사업(保守事業)에도 이는 적용(適用)되고 있는 것이다. 단청(丹青) 문양조사(調查)하나 기원(基源)을 밝히고 그 역사(歷史)의 고증을 더듬어 보아도 회화사(繪畫史)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⑨ 서예(書藝)

한국(韓國)의 서예(書藝)의 종류(種類)로 석각(石刻), 비(碑), 종명(鐘銘), 조, 봉니(封泥), 인조도문, 집첩(集帖), 경문(經文), 필적(筆跡)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서예(書藝)는 글의 조형미도 있지만 고증을 밝히는 문자(文字)의 기록(記錄)이기 때문에 중요(重要)한 사료가 된다.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인 진흥왕 첩경비 하나를 예시(例示)하더라도 서예(書藝)와 깊은 관계(關係)가 있는 것이다. 건물(建物)마다 붙어 있는 현판의 글체며 석가탑(釋迦塔) 속의 유물(遺物)인 다라니경은 세계(世界) 최고(最高)의 지물(紙物)에 기록(記錄)한 서예(書藝)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예(書藝)에 대한 사적(史的) 지식(知識)이 필요(必要)한 것이다.

⑩ 조경학(造景學)

우리 선인(先人)은 궁궐(宮闕) 하나 짓고 묘소(墓所) 한자리 쓰는데도 좌청룡, 우백호의 지세를 보고 터를 잡았다. 이것은 오늘에 보면 조경학적 의미(意味)가 된다. 경복궁(景福宮)이 도도한 북악의 산세를 디디고 청룡의 낙산과 백호의 인왕(仁王)을 거느리며 안산이 관악을 바라보고 노송 우거진 숲으로 청계천(淸溪川)이 맑게 흘러가는 분지(盆地)에 터를 잡았을 그 옛날 태고연(太古然)한 관경(觀境)을 생각(生角)하면 서울의 아름다움을 동양화적(東洋花的) 화폭(畫幅)으로 상상(想像)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산(牙山) 현충사(顯忠祠)를 세우면서 조경의 지식(知識)이 필요했고 더구나 서울의 5대궁(大宮) 관리(管理)가 그렇고 천연(天然) 보호(保護) 구역(區域) 또는 명승(名勝)의 지정(指定)과 관광(觀光) 자원(資源)의 개발(開發)에 이 조경학적 지식(知識)이 필요(必要)한 것이다. 문화재(文化財)의 보호물(保護物), 보호구역(保護區域) 책정(策定)에도 이러한 안목(眼目)없이는 안 된다.

⑪ 불경(佛經)과 불상(佛像)

미술사적(美術史的) 의미(意味)로 파악(把握)될 수 있으나 불상(佛像)의 시대(時代) 분류(分類), 특징 그리고 종류(種類), 불경(佛經)의 경문(經文) 지식(知識)은 필요(必要)하다. 익산 왕궁탑에서 나온 유물(遺物)의 금책에 양각(陽刻)된 금강경(金剛經)이 무엇인지 그 의미(意味)를 모른다면 국보(國寶)를 관리한다는 직분(職分)에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불상(佛像)을 보고 여래(如來)인지 보살(菩薩)인지 모르며 비로자나불인지, 악사여래인지, 반가상인지, 미륵불(彌勒佛)인지 구분(區分)할 수 없다면 문화재(文化財)를 관리(管理)하는 전문직으로서 자못 부족(不足)된 일이다. 우리는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국보(國寶)로 지정(指定)하고 있다. 신앙(信仰)의 경전(經典)으로만이 아니라 학문적(學問的) 대상(對象)으로 파악(把握)하는 상식(常識)은 있어야 한다.

⑫ 고고학(考古學)

조사(調查) 사업(事業)으로 선사시대(先史時代) 연구(研究)를 69년에 문공부(文公部)

가 책정(策定)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계획(計劃)을 수행(遂行)하는 행정과정의 식원(識員)은 무토기, 줄문토기, 무문토기, 김해(金海) 문화(文化) 시대(時代)의 분류(分類)와 패총고분의 조사(調査) 지점(地點)을 선정(選定) 검토(檢討)하고 필요(必要)한 계획(計劃)을 세우기에는 개론(概論)의 상식(常識)이 있어야 한다. 선사(先史)이든 역사(歷史)이든 조사연구사업에 그것의 학적(學的) 지식(知識)없이 어찌 이를 수행(遂行)하는 행정(行政)을 담당(擔當)할 것인가.

⑬ 국 문 학(國 文 學)

단군신화(檀君神話) 등 구비(口碑)와 설화(說話)로 시작(始作)된 한국(韓國) 고전문학(古典文學)이 갑오경장(甲午更張)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살아 있는 생활소(生活素)를 간직한 문학사(文學史)를 이루어 왔다.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와의 국문학(國文學)은 관계(關係)가 깊다. 어학적(語學的) 연구(研究)의 해독(解讀)이나 작품(作品) 내용(內容)의 형색(形色) 분류(分類) 같은 것을 두고라도 사료(史料)의 근거를 밝히는 자료로 작가의 생존(生存)시에 사회상(社會相)을 규명(糾明)하는 역할(役割)을 하며 당시의 사상(思想)의 흐름을 알고 민족학적(民族學的) 의미로서 생활의 추이(推移)를 이해(利害)함에 이에 더할 것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정화(淨化)하면서 성학 10도의 사상(思想)이나 도산(陶山) 십이곡(十二谷)을 조사(調査)하지 않으면 겨우 퇴계가 남기고 간 문화재(文化財)의 깊은 의의(意義)를 찾을 길이 없을 것이다.

⑭ 민 속 학(民 俗 學)

이는 민속(民俗) 문화학(文化學)의 좁은 개념(概念)이고 또한 그 기저(基底)에 터 잡은 학문(學文)이다. 그러기에 민족학(民族學)이라 할 수 있다. 현재(現在) 정부(政府)가 향토(鄉土) 문화(文化)의 민속(民俗) 종합(綜合) 조사(調査)를 연차(年次) 계획(計劃)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眞正)한 민족(民族)의 고유 모습은 이 민속학(民俗學)인 향토(鄉土) 문화학(文化學)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외래적(外來的) 요소(要素)를 제거(除去)한 순수한 그 민족(民族)의 참모습은 하류(下流) 계급(階級)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요, 상류(上流) 계급(階級)은 외래적(外來的) 문화(文化)에 복합(複合)되고 외화주의에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현재(現在) 민속(民俗) 자료(資料)의 지정 조사사업(調查事業) 설정(設定)이나 민속관 운영(運營)을 위하여는 이 민속학의 지식(知識)이 있어야 그러한 행정(行政)을 담당(擔當)한다.

⑮ 민족사상사(民族思想史)

사상(思想)이란 정치(政治), 종교(宗教), 철학(哲學), 과학(科學), 사회(社會)의 종합적(綜合的) 개념(概念)이기에 하나로 간추려 말하기 어렵다. 이번에 문화재(文化財) 위원회(委員會)를 개편(改編)하면서 第2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에 민속사상(民俗思想)도 다루도록 하였다. 그러기에 민족사상에 대한 지식(知識)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의 정치(政治)는 단군신화(檀君神話)에서 비롯했듯이 하늘의 뜻을 받드는 사상(思想)이고 신라(新羅) 화백제도(和百制度)의 민주적(民主的) 민권주의(民權主義)의 근본(根本)을 가졌으며 철학(哲學)의 입장(立場)에 예를 들면 퇴계의 이기이면론(利己二面論)이나 울곡(栗谷)의 기발리승론(氣發理乘論) 같은 주자학(朱子學)의 발달개념(發達概念)과 세종(世宗)에서 실학(失學)에 이르는 과학적(科學的) 개혁(改革) 운동(運動)이나 사변적(思辨的)

불교(佛敎)에서 철학적(哲學的) 종교(宗敎)로 개척(開拓)한 원효의 사상(思想)과 형성(形成)에 구애(拘碍)된 유교(儒敎)나 인류(人類)를 적멸(寂滅)하는 불교(佛敎)나 치평(治平)의술을 모르고 자연(自然)에 유적(流賊)하는 도교(道敎)의 단점(短點)을 버리고 이 유불선(儒佛仙)의 장점(長點)을 모아 민족(民族) 자각(自覺)의 현세주의(現世主義)위에 인내천(人乃天)의 사상(思想)을 세워 인간(人間)을 신(神)의 영성(靈城)에 세운 동학(東學)에 이르기까지의 구찬의 태도(態度)를 가지고 유형(有形)의 문화(文化) 유산(遺産)에 사상(思想)의 생명체(生命體)를 결합(結合) 소생(蘇生)시키는 안목(眼目)의 교육(敎育)이 필요(必要)하다.

⑩ 공예(工藝)

한국(韓國)에 있어서 가장 한국적(韓國的) 특색(特色)이 있었던 것은 공예(工藝)이다. 선사시대(先史時代)의 토기(土器)와 무문토기(無文土器)에서 김해토기(金海土器), 신라토기(新羅土器)의 연관성(聯關性)이나 장신구(裝身具)와 와당(瓦當)의 제작(製作)과 금관범종 등의 주조세공 등은 일본(日本)에 대(對)해서도 선진적(先進的) 문화권(文化圈)을 형성(形成)했었다. 그리고 특히 송(宋)의 청자(靑瓷) 문화(文化)를 받아들여 고려(高麗)의 독자적(獨自的) 발달(發達)을 한 순청자(純靑磁), 청자상감(靑瓷象嵌), 화청자(畵靑磁), 퇴색문청자(堆色文靑磁), 진사청자(辰砂靑瓷), 서금청자(書金靑磁), 철채청자(鐵彩靑磁), 백자(白磁)등은 세계적(世界的)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인정된 문화재(文化財)도 많다. 이조(李朝)의 공예(工藝)들은 아직도 예명(藝名)하고 있어 예용해 선생(先生)의 인간(人間) 문화재(文化財)에 수록된 이 부문(部門)의 조사(調査) 기록(記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韓國) 공예(工藝)에 대(對)한 역사적(歷史的) 지식(知識)과 현황(現況)의 파악(把握)이 없이는 안 된다.

⑪ 조각

우리나라 조각(彫刻)은 확실(確實)한 조각(彫刻)의 대상(對象)으로 정리(整理) 분류(分類)할 수 있는 것은 불교전래(佛敎傳來) 이후(以後)의 불교조각(佛敎彫刻)이다.

우리나라 지정문화재중(指定文化財中) 신라(新羅) 통일기(統一基)의 석조(石造) 조각물이 가장 많다. 한국의 창의성(創意性)을 가장 주체(主體)있게 형성(形成)한 부문(部門)이 공예(工藝)와 더불어 조각(彫刻)이다. 우리는 불상(佛像)하나 탑(塔)하나에 이르기까지 조각사적(彫刻史的) 의의(意義)와 흐름을 파악(把握)하고 저 꿈과 힘이 넘치던 시대(時代)에 거장(巨匠)의 숨씨를 더듬어, 투박한 내실에 도착(倒着)한 이조(李朝)의 석조(石造)에 이르기까지 깊은 명상(冥想)과 가치관(價値觀)을 새겨 터득해야,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를 바로 할 수 있다.

⑫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지리학(地理學), 동물학(動物學), 식물학(植物學))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을 관리(管理)함에 있어서 지질학적(地質學的) 지식(知識)이 필요(必要)하다.

동굴(洞窟)하나 개발(開發)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화석(化石)하나 보존(保存) 관리(管理)함에 있어서도 그렇다.

동물(動物)의 생태(生態)나 식물(植物)의 생태(生態)를 알지 못하고는 보호(保護) 관리(管理)가 안된다.

순종(純種)의 사육이 그렇고, 식물(植物)의 시비단충(施肥段虫)이나 보토하나도 이러한 지식(知識)이 없이 행하면 자칫 잘못하여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을 죽이는 결과(結果)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다.

⑩ 연 예 (演 藝)

우리는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 보드래도 가무(歌舞)를 좋아한 민족(民族)이며 제천(祭天)의 대회(大會)때나 종교 예식(禮式), 국가행사(國家行事)에는 필(必)히 이 가무(歌舞)가 함께 하였다. 신라(新羅)의 검무(劍舞)나 처용무, 오기(五技) 무애무(無尋舞)가 다 그러했다.

고려(高麗)의 산대 잡희(雜戲) 인형극(人形劇), 이조(李朝)의 분파된 꼭두각시놀음 만석중놀음 각시놀음 그림자놀음 장난감 인형(人形)놀이나 가면극의 산대가면극(山臺假面劇) 해서가면극(海西假面劇) 야운오광대(野運五廣大)등의 연예(演藝)가 있었고 언어(言語)가 있는 민족(民族)은 노래가 있는 것이기에 국악(國樂)이나 민속학(民俗學)의 개론적(概論的) 상식(常識)을 가지고 오늘의 새로운 신음악이 도입(導入)되는데 까지의 살아 움직이는 무형(無形)의 문화재(文化財)에 대(對)하여 그 역사(歷史)와 내력(來歷)을 알아야 한다. 이상으로 여기에 빠지고 미숙된 과목(科目)은 물론(物論) 많지만 그런데로 이상의 第1과목(科目)쯤은 개론적(概論的)으로 라도 알고 있어야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를 위한 모든 사업(事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교육(教育)을 위해서 시청각(視聽覺) 교육재료(教育材料)로 슬라이드나 영화(映畫), 녹음(錄音), 묘사품(描寫品)이 교재(教材)와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8.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의 재원(財源)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第58條2에 의하여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文化財管理特別會計法)이 설치(設置)되어 있다.

이는 문화재(文化財)의 보호(保護)를 위하여 재원(財源)의 뒷받침을 독자적(獨自的)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며 국가전체(國家全體)의 소득수준(所得水準)에 비교(比較)하면 높은 액수(額數)의 예산(豫算)을 책정(策定)하고 국가사업(國家事業) 전체의 순위(順位) 결정(決定)에 있어서 일반부문과 경쟁(競爭)을 배제하게 하여 순위(順位)를 높여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에 기여(寄與)한바 크다.

그러나 이 회계(會計) 운영(運營)의 여러가지 묘(妙)가 부족(不足)하여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특별회계(特別會計)의 재원(財源)에 대한 연구(研究)가 검토(檢討)되게 되었다.

69年 현재(現在) 재산매각대(財産賣却代) 577,511,100원, 입장료수입(入場料收入) 167,675,000원, 이자수입(利子收入) 132,253,200 관유물 대여료와 잡수입 89,310,400원으로 총세입(總歲入) 966,749,700원이며 세출(歲出)을 열거(列舉)하면 사무비(事務費) 72,122,200원 사업비(事業費) 760,607,100 구황족세비(舊皇族勢費) 13,470,000 적립금 110,000,000 예비비 10,560,400로서 세입(歲入)과 동액(同額)인 966,749,700원 세출(歲出)을 책정(策定)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비(事業費) 760,607,100원중 실화재관리비(失火災管理費)가 204,831,000으로서 기타는 문화재(文化財)의 관리(冠履)를 위한 시설물(施設物)의 신축사업(新築事業)과 오대궁 전각 보수사업이다. 우리는 개국이래(開國以來) 박물관(博物館) 하나를 재대로 지어 본 일이 없었던 부끄러운 민족(民族)이었기에 일반

회계(一般會計)가 담당(擔當)해야 할 종합박물관(綜合博物館) 8억의 공사(工事)를 수행(遂行)하고 있다.

현재(現在) 여러 가지 연구(研究) 검토(檢討)가 진행되고 제도적(制度的) 개선(改善)의 방향(方向)이 나타나고 있어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특별회계(特別會計)의 적립금(積立金)의 이자(利子)가 20%로 인상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날로 증가하는 문화재관리비(文化財管理費)의 비율과는 차이(差異)가 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는 방안(方案)은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특별회계(特別會計)를 존속시키면서 일반회계(一般會計)의 전입(轉入)을 받거나 현재(現在)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특별회계사업중(特別會計事業中) 일반회계(一般會計)가 담당(擔當)할 수 있는 성질(性質)의 사업(事業)을 일반회계(一般會計)로 이관(移管)하는 방안(方案)이 최선(最善)의 방안(方案)이며 1970年 이후(以後)에는 시설물의 신축비(新築費)가 대폭 줄어들어 사업비(事業費) 7억중 5억만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에 전부 투자(投資)될 수 있게만 된다면 전국(全國)에 801점(點)의 유형 문화재중(有形文化財中) 523건(件)의 보수계획된 69년부터 73年 까지 부문은 1973年까지가 아니라 1971年까지 앞당겨 보수(補修)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 기술자(技術者), 기능자(技能者)의 증원(增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9, 문화재관리기구(文化財管理機構)의 일원화(一元化)

문화재관리기구(文化財管理機構)는 다원화(多元化) 되어 있다. 이를 일원화(一元化)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자명한 정론이다.

아무도 이 일원화(一元化)의 문제(問題)에는 의의(意義)가 없을 것이지만 아직도 이 일원화(一元化)는 되지 않고 있다. 현재(現在),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 문화국(文化局)과의 사업분담(事業分擔)은 세심(細心)하고 정확(正確)

한 현황(現況)의 파악(把握)을 바로하여 민족문화유산(民族文化遺産)을 담당(擔當)하고 일관성(一貫性) 있는 기구(機構)의 정비(整備)는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機構)의 연구(研究) 검토(檢討)가 현재(現在) 추진(推進)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세(細細)한 의견(意見)을 접어 둔다.

四.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와 민족문화창조(民族文化創造)

민족문화(民族文化)란 개념(概念)은 방대(龐大)하고 모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一般) 사상(思想)과 제도(制度)와 문물(文物)이 한 토풍(土風)의 생리(生理)와 생활(生活)에 의하여 구분(區分) 지워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류(人類) 일반(一般)의 문화(文化)가 민족적(民族的) 개성(個性)으로 생성(生成)되는 것을 민족문화(民族文化)라 말하며 잘못이 없을 것이다.

이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조(創造)라는 명제(命題)를 걸고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라는 범주안에서 이 문제(問題)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조(創造)란 문화(文化)의 이전과 복합(複合)에서 생성(生成)하는 것이다. 이 문화(文化)의 이전(移轉)이란 외래(外來)의 선진문화(先進文化)이고 복합(複合)의 바탕은 전통(傳統)이 계승(繼承)된 고유(固有) 민족문화(民族文化)이며 그것이 혼합(混合)되어 본래의 두 문화(文化)와는 변화(變化)된 문화(文化)의 생성(生成)이

창조(創造)이다. 그리기에 새로운 문화(文化)의 창조(創造)란 바른 전통(傳統)의 파악(把握)이 선결문제(先決問題)이며 이 전통(傳統)은 창조(創造)의 진정한 재료(材料)이고 창조(創造)를 구체화(具體化)시키는 근본(根本)이다.

이에 민족문화(民族文化) 창조(創造)란 전통(傳統)에의 환원(還元)의 노력없이 불가능(不可能)하고, 창조(創造)를 위한 의욕(意慾)은 창조(創造)의 재료(材料)를 구득(求得)하는 출발점(出發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문화재(文化財)는 바로 이 창조(創造)의 재료(材料)요 전통(傳統)의 바탕이며 민족문물(民族文物)의 사실적(事實的) 존재(存在)이다.

우리는 고구려(高句麗) 광개토태왕의 장군 총 하나를 보고도 굳건하고 장엄한 힘을 느끼고 석굴암 석굴의 신라(新羅) 조각(彫刻)에서 생동(生動)하는 정신(情神), 이상하는 육체(肉體)와 고요한 명상의 꿈을 느낄 수 있으며, 깊고 단아(端雅)한 고려(高麗)의 청자(靑磁)나 고려(高麗) 가무속에서 맑고 은은한 슬픔을 얻으며, 소박(素朴)한 이조(李朝)의 백자(白磁)나 건실(健實)한 이조(李朝)의 건조물(建造物) 속에서 멋과 민중적(民衆的) 실질(實質)을 느낀다.

이것이 문화재(文化財)의 가치성(價値性)이다.

이러한 우리의 문화적(文化的) 하나 하나를 파악(把握) 분석(分析)하여 살아 움직이는 민족(民族) 문화소(文化素)가 무엇인가를 찾아 내는 작업(作業)이 필요하다.

문화재(文化財) 속에는 살아 움직이는 문화(文化)의 생명소(生命素)가 있다. 이것을 파악(把握)하지 못한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란 새로운 민족문화(民族文化) 창조(創造)에 계승(繼承) 창달(暢達)할 수 없는 무의미(無意味)한 일이 될 것이다. 이 고유문화(固有文化)의 생명소(生命素)를 파악하여야 새 문화(文化) 창조(創造)의 방향이 제시(提示)된다.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이 어떻게 창조(創造)할 것인가의 방향(方向)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맹목적(盲目的)인 전통(傳統)의 환원(還元)이니 하여 잘못하면 복고취미(復古趣味)의 보수관(保守觀)에 도달(到達)하여 옛것의 모방(模倣)에 치우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창조가 아니라 문화(文化)의 후퇴(後退)다.

그러기에 인습(因習)과 전통(傳統)은 구별(區別)되고, 지나간 역사(歷史)속에 깃들여 있는 새로운 생명(生命)의 정수(精髓)를 찾아 내는 것이 바로 전통(傳統)이며, 또한 전통은 모방(模倣)과도 구별(區別)되는 옛것과 피가 통하고 있는 전대적(前代的) 혈통(血統)의 창조(創造)이며, 옛날의 자랑을 위하여 존재(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未來)를 위한 가치(價値)속에 구현(俱現)하는 것이며, 개인적(個人的) 개념(概念)이 아니라 한 집단(集團)의 주체적(主體的) 개념(概念)이기에 한 집단(集團)이 공동(共同)으로 형성(形成)하고 공존(共存)하는 것이면서도 객관(客觀)의 것이 아닌, 행위자 각자의 피나는 투쟁(鬪爭)과 노력(勞力)의 창조적(創造的) 자각체(自覺體)이다.

이러한 제(諸) 문제점(問題點)은 새로운 창조(創造)의 방법(方法)에서 엄밀히 선택(選擇)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의 최종적(最終的)인 것이며, 진정(眞正)한 민족문화(民族文化)의 핵심체(核心體)를 새로운 문화(文化) 창조(創造)에 계승(繼承)하는 길이다.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행정가(行政家)는 이러한 고유문화소(固有文化素)를 분석(分析) 규명(糾明)하는 자(者)는 아니다. 그러나 이를 분만하게 하는 산파의 역할을 담당해

야 한다.

고유(固有) 문화재(文化財)를 찾아내는 사람은 학자(學者)이거나 전문가(專門家)이며 이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자가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행정가(行政家)가 되어야 한다.

五. 결 론(結 論)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란 행정법상(行政法上)의 보존공물(保存公物)을 관리(管理)하는 관리행정(管理行政)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文化財) 자체(自體)가 소장하고 있는 물건(物件)의 개념(概念)보다는 무형(無形)의 개념인 가치성(價値性)을 찾아내고 이를 손상시키지 않는 원형(原型)의 보존(保存)을 위한 제수단을 강구하고 새로운 창조(創造)의 재료로 복합 생성(生成)하는 문화창조(文化創造)의 모태(母胎)가 되어 내일에 전통(傳統)을 계승시키는 특수 행정목적(行政目的)을 달성하는 행정(行政)이다. 그러기 위하여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의 조사(調査) 정리(整理) 연구(研究)의 단계(段階)에서 살아 움직이는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생명소(生命素)를 찾아 내어 창조(創造)의 과정(過程)에 제시하는 것이 그 자료요 이를 자연(自然)과 인위(人爲)의 피해로부터 원형(原形)을 보존(保存)하기 위하여 법규적 처리와 제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전통의 창조적 터전인 고유한 풍토를 가꾸는 일이다.

민족(民族)이 멸망해도 그 문화(文化)는 남아 불멸하고, 말살을 기도해도 대하(大河)의 물주기 처럼 문화는 쉬임없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문화(文化)의 꽃이 피어 저녁에 그 열매를 따는 일은 없다. 문화(文化)는 생명(生命)있는 나무여서 봄에 기름진 전통의 밭갈이에 씨를 뿌리고 수년을 가꾸면 오늘의 시대적(時代的) 햇빛에 영글어 우리의 풍토와 개성에 맞들은 과실이 익어올 것이다. 문화(文化)의 행정을 담당할 모든 사람은 이 정원사(庭園師)이다.

여기서 문화재(文化財)는 밭이고 민족(民族) 문화소(文化素)는 씨앗이다. 우리는 이 문화재(文化財) 앞에 실패는 모두 겸허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화재(文化財)를 관리하는 행정가는 적어도 올바른 민족사(民族史)의 체득과 관리 기술을 터득하여 문화재(文化財)를 보는 관(觀)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행정인(行政人)은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고 민족문화(民族文化)의 계승창달에 대한 불안(不安)의 고독한 번민(煩悶)없는 이룩되지 않아야 한다. 화려한 갈채(喝采)를 받기 전에 자책(自責)을 가지는 행정(行政)이요 외화(外貨)의 혼돈한 풍조속에서 자부(自負)를 가지고 주체(主體)를 확립(確立)하는 행정(行政)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정을 할 인적(人的) 양성(養成)이 시급(時急)하다.

그리하여 제문제점을 개선(改善)하고 문화재관리관(文化財管理觀)의 정립(定立)이 있어야 한다.